

했고 『정운통고(正韻通考)』를 저술했다. 세종 25년에 통빙사(通聘使) 변효문(卞孝文)을 수행하여 일본에 건너가(신숙주는 서장관이었다), 『해동제국기』를 저술했다. 성종 6년에 사망했다.

성삼문(成三問) :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당(梅竹堂)으로, 태종 9년에 태어났다. 세종 때에 집현전 학사가 되었고, 왕명을 받아 신숙주 등과 『훈민정음』, 『예기대문언독』 등을 편찬했다. 단종이 폐위되면서 박팽년, 하위지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훗날 숙종 때에 이르러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영조 34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서거정(徐居正) :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으로 권근의 외손이다. 세종 2년에 태어나 대제학·우찬성에 올랐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등은 모두 그가 편찬에 참여한 것이다. 성종 19년에 사망했다.

노사신(盧思慎) : 자는 자반(子胖), 호는 보진재(葆眞齋)로, 세종 9년에 태어났다. 영의정에 올랐다. 박식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 성종 때에 왕명을 받아 서거정·이파 등과 『삼국사절요』를 편찬했다. 연산군 4년에 사망했다.

성현(成俛) :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로, 세종 21년에 태어났다. 공조판서·대제학에 올랐다. 뛰어난 문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 문단 한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허백당시문집』, 『악학궤범』, 『풍아록』, 『용재총화』 등은 모두 그가 저술한 것으로, 특히 『용재총화』는 조선의 수필 중에서 걸작으로 꼽힌다. 연산군 때에 사화로 인해 사망했다.

김숙자의 아들 김종직은 그의 문하에서 수많은 명사들을 배출하면서 그 계통의 학파가 크게 일어났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그 사적(事蹟)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직의 자는 계온(季嵒), 호는 점필재(佔畢齋)로, 세종 13년에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시에 능했고, 약관의 나이에 문인으로서의 이름을 널리 떨쳤다. 성종이 문학의 인재를 뽑아 경연을 열자 김종직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어세겸(魚世謙)이 일찍이 그의 시를 보고 감탄하면서 “나에게 채찍을 가하여 노예로 삼아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성종은 김종직을 중용하여 관직을 주고 형조판서에 명하기도 했다. 훗날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성종 23년에 62세로 사망하면서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사망한지 7년 뒤인 연산군 4년에 김종직이 초안한 『조의제문(弔義帝文)』 한 편이 우연히 반대파의 눈에 띄게 되면서 이른바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키게 되었다(제3장 제1절 참고).

퇴계 이황(李滉)은 김종직을 평하여 “김종직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의 사업(事業)은 오직 사화(詞華)에 있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

나 김종직의 부친 김숙자는 길재에게서 배웠고, 김종직은 부친의 업을 이어받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계을리하지 않았다. 김굉필·정여창·김일손·유호인·남효온 등의 명사들이 모두 그의 문하생으로, 그 일파의 유학은 김종직에 이르러 크게 일어났다.『점필재집』,『이존록』,『동문수』 등을 저술했다(『점필재집(佔畢齋集)』,『해동명신록』).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김굉필과 정여창을 들 수 있다. 김굉필(金宏弼)의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寒暄)이다. 단종 2년에 태어나 김종직 문하에서 공부했다. 김종직이 그에게 소학(小學)을 가르치면서 “무릇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굉필은 독지역행(篤志力行)하여 늘 소학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관직으로는 형조좌랑을 했다. 연산군 4년에 사화가 일어나면서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희천(熙川, 평안북도)에 유배되었다가 연산군 10년 9월에 죄를 지었다며 죽임을 당했다. 나이 51세였다.

정여창(鄭汝昌)의 자는 백육(伯勗), 호는 일두(一蠹)이다. 세종 32년에 태어났다. 김종직에게서 공부하면서 깊이 성리학을 깨우치게 된다. 성종 25년 한림(翰林)에서 안음현감(安陰縣監)이 되었지만, 연산군 4년에 사화에 연루되어 종성(鐘城, 함경북도)에 유배되었다가 연산군 10년 4월에 사망했다.

연산군 이후 중종·명종에서 선조 초기에 걸친 시기의 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조광조와 이황, 이이를 들 수 있다. 조광조의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으로, 성종 13년에 태어났다. 부친 원강(元綱)이 어천(魚川, 평안북도)의 칠방(察訪)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조광조도 부친을 따라 그곳으로 갔는데, 때마침 김굉필이 유배되어 희천에 도착했다. 조광조는 그를 따르면서 학문에 힘을 쏟았다. 중종 11년 11월에 정언(正言)에 봉해진 이후 부제학(副提學)에서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당시 중종은 바른 정치를 폐기를 원했고, 조광조를 신임했다. 그리고 조광조는 건의하여 기신재(忌辰齋)를 없애고 현량과를 설치, 소격서를 폐지하는 등 언로를 열고자 했지만 결국 반대파의 견제로 인해 14년 10월 능주(綾州, 전라남도)로 유배된 이후 사사되었다(제3장 제1절 참고). 나이 38세, 유저로 『정암집(15권)』이 있다(『정암집』,『해동명신록』).

이황(李滉)의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이다. 연산군 7년 경상도 예안(禮安)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는 숙부인 이우(李遇)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훗날 태학에 들어갔다. 중종 29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 호조좌랑 등을 거쳐 사인(舍人)으로 강등되었다가, 명종이 즉위한 그해에 사화에 연루되어 관직을 빼앗긴 이후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이후 다시 나와 단양군수가 되었지만 명종 4년에 병을 얻어 관직을 버리고 예안에 돌아가 거처를 퇴계라 하고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만들었다. 명종 21년 부름을 받고 홍문관 및 예문관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

게 되었지만 선조 3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문순(文純)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특별히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이황은 근엄하게 자신을 다스렸고, 주자학의 정연(精研)을 평생의 사업(事業)으로 삼았는데, 유학에 큰 공헌을 하여 후세에서는 그를 받들어 반도의 유종(儒宗)이라 했다. 『계몽전의』,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종계문명리학통록』, 『심경석의』, 『퇴계집』 등의 저서가 있다(『해동명신록』, 『퇴계집』).

이이(李珥)의 자는 숙현(叔獻), 호는 율곡(栗谷) · 석담(石潭)으로, 중종 21년에 강원도 강릉부에서 태어났다. 16세에 모친을 여의고 무덤 옆 묘막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읽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금강산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당시 나이 19세였다. 거기서 1년을 생활하면서 불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산에서 내려와 다시 유학을 공부한 뒤 명종 19년에 생진파(생원 · 진사과) 및 문과에 합격했는데, 양쪽에서 모두 으뜸이었다. 호조좌랑에서 승차하여 홍문관교리에 봉해졌지만, 선조 5년 관직을 버리고 해주에 돌아가 방을 석담(石潭)으로 쌓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이후 다시 부름을 받아 조정에 돌아와서 선조 14년에 특별히 승차하여 대사헌에 봉해졌다. 그리고 호조판서 · 이조판서에 올랐다. 당시 붕당 싸움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사류(士類)는 모두 동 · 서당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툼을 벌였다. 이이는 이를 걱정하며 조화를 꾀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나이 49세였다. 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었다. 이이는 일찍이 예안의 도산에 이황을 방문해 이기론(理氣論)을 논하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고, 이황 역시 그의 설에 감탄했다고 한다. 또한 일찍이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의 네 가지 항목(덕업상권 · 과실상구 · 예속상교 · 환난상휼)을 바탕으로 하여 수십 가지의 규약을 만들어 향려(鄉閭)에서 가르침으로써 널리 향속(鄉俗)을 다스렸다. 저서로는 『성학집요』, 『격몽요결』, 『율곡집』 등이 있다(『율곡전서(栗谷全書)』, 『율곡전서』 연보, 『해동명신록』).

2. 불교 및 도교

〈불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말기에는 많은 폐해가 생기는 동시에 점차 주자학이 발흥함에 따라 식자충이 배척하게 되었다. 이씨조선시대에 들어서 역대 왕들 및 조야의 선비들은 모두 유학을 교화의 원천으로 삼고 유학의 진흥에 힘을 쏟았다. 따라서 불교는 큰 암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초기에는 전대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받드는 자들이 매우 많았으며, 태조 이성계도 한편으로는 유학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불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왕은 승려 무학(無學)을 왕의 스승으로 삼고 그를 신임했으며, 또한 절을 세우기도 했다. 태조 5년 현비 강씨가 사망하자 그녀를 도

성 내의 황화방(皇華坊) 북원(北原, 즉 현 경성 정동 영국 영사관 자리)에 묻었다. 능역(陵域) 동쪽에 흥천사(興天寺)를 지어 전(田) 1천 결(結)을 하사했으며, 또한 7년에 그의 아들 방석과 방번이 비명에 쓰러졌을 때에도 태조는 크게 애통해하면서 종종 승사(僧舍)에 가서 명복을 빌었다. 당시 태조 외에 조신들 중에 불교에 귀의하는 자로는 이지란(李之蘭)이 있었다. 이지란은 태조의 남정북벌(南征北伐)에 참여하면서 많은 공을 세워 개국 초기 청해백(青海伯)에 봉해졌는데, 나중에 상소하여 “신이 성주(聖主)를 만나 장수가 되어 남정북벌 당시 매우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철권의 총애가 비록 극진하다고는 하지만, 지옥의 화가 두려우니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보복을 면하기만을 엎드려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그날로 절에 들어간 이후 완전히 집안일을 사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승려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태조 입장에서도 큰 고민거리였는데, 즉위 3년에 도당에 명하여 “불씨(佛氏)의 도는 청정과욕(清淨寡慾)을 본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도, 지금의 사원에 있는 자들은 산업에 힘을 쏟고, 이른바 색계(色戒)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몸이 죽은 뒤에는 그 제자 등이 사사(寺社) 및 노비를 법손(法孫)의 상전(相傳)이라며 끝내 서로 다투게 된다. 나는 예전부터 이를 바로잡을 뜻을 갖고 있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하여 이를 고하게 하라”고 했다.

태종은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유학을 크게 장려하는 한편으로 불교를 늘 억압하는 방침을 취했다. 즉위 2년 서운관(書雲觀)의 상언에 따라 나라 안팎의 절 70사(寺) 외에 각 사원의 전조(田租)를 영구히 군비에 쓰이도록 했고, 노비는 각 사(司)에 분속(分屬)시키도록 했다. 또한 태종 6년 의정부의 청으로 당시의 각 종파를 다음과 같이 7종(宗)으로 합치는 동시에 존치시킬 사찰 242곳을 선정했다.

조계종(曹溪宗) · 총지종(摠持宗) – 조계종(70사)

천태소자종(天台疏字宗) · 법사종(法事宗) – 천태종(43사)

화엄종(華嚴宗) · 도문종(道門宗) – 화엄종(43사)

자은종(慈恩宗) – 36사

중도종(中道宗) · 신인종(神印宗) – 중신종(中神宗)(30사)

남산종(南山宗) · 시흥종(始興宗) – 각 10사

합계 7종 242사

세종 역시 불교를 믿지 않고 유학을 장려했다. 즉위 3년에 명을 내려 ‘연종환원’(年終還願, 고려 때부터 연초에 사람을 보내 복을 불우산천(佛宇山川)에 기원하도록 했다. 이를 연종환원이라 한다)을 폐지했고, 또 이듬해 ‘경행’(經行, 고려 때부터 매년 봄과 가을, 중월(仲月)에 승려들에게 반야심경을 외며 거리를 순행함으로써 재액을 막는 것을 가리

킨다)을 폐지했다. 세종 6년 예조의 건의로 조계(曹溪) · 천태(天台) · 총남(摠南) 3종을 합쳐 선종(禪宗)으로 하고, 또 화엄 · 자은 · 중신 · 시흥 4종을 합쳐 교종(敎宗)으로 했으며, 명찰(名刹) 36사를 골라 이 두 종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전지(田地)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거주하는 승려 인원수를 제한해 승록사(僧錄司, 승려 일반의 행정을 관장)를 폐지하고 소속 노비 384명을 두 종파에 나누어 주었다. 그렇지만 만년에는 세종도 불전을 좋아했다. 당시 준화상(俊和尚)이 가장 경률(經律)에 뛰어났는데, 수양대군 유와 안평대군 용 두 왕자에게 명하여 그에게 가서 경률을 익히고 돌아와 이를 고하도록 했으며, 내불전(內佛殿)을 건립했다.

세조는 불교를 좋아했고, 경률을 준화상으로부터 익히면서 불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즉위한 이후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해 종종 경론을 간행하도록 했는데, 세조 9년 왕의 백부 효령대군 보(補, 태종의 둘째 아들)가 양주 회엄사(檜嚴寺)에 법회를 열어 『원각경(圓覺經)』을 강론하자 갑자기 여래현상(如來現相), 사리분신(舍利分身) 등의 기적이 일어났다. 왕은 그 기이함에 감탄하여 흥복사(興福寺)의 옛터에 절 하나를 건립해 원각사(圓覺寺)라 명명하고 큰 불상을 만들어 절 안에 안치했다. 또 큰 종을 주조했고, 13층탑을 세웠다(현 경성 탑동공원. 통칭 파고다공원은 그 유적지이다). 다음 왕인 예종 원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도승제(度僧制) 및 사사조례(寺社條例)를 반포했다. 도승제는 문무과를 본떠 승과(僧科)를 두고 3년에 한 번 시험을 치렀으며, 선 · 교 양 종파에서 각 30명을 뽑기로 했다. 사사조례에는 사사는 새로 창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절을 중수(重修)하려 할 경우에는 양 종파에 알리고 예조에 보고할 것을 정했다. 이러한 것들이 반포된 것은 비록 예종 원년이었지만, 그것이 제정된 것은 분명 세조 치세하였다. 성종은 유학을 좋아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승려를 매우 싫어했고, 즉위 2년에 명을 내려 도성 안의 염불소를 금지하고 무속 인을 성 밖으로 쫓아냈다. 성종 6년 성 안팎의 이사(尼寺) 23곳을 철거했고, 또 도승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주 · 군의 도첩(度牒)이 없는 자들을 추쇄(推刷)하여 머리를 기르도록 한 뒤 환속시켰다. 폐왕 연산군은 유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유생들을 내쫓고 태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성균관을 연악(宴樂) 장소로 삼는 등 매우 폭압적으로 대했다. 불교 또한 그의 박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왕은 원각사를 기방으로 삼고, 또 도성 안의 사찰을 모두 폐지하고 공부(公府)에 넘겼다. 중종 때에는 유학이 크게 부흥하여 즉위 7년 원각사를 철거하고 그 재료를 부근 민가에 나누어주었다. 승과 또한 자연히 폐지된 상태였다. 중종이 사망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왕이 아직 어려 모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왕후는 불법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강원도감사 정만종(鄭萬鐘)은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의 승려 보우(普雨)를 추천해 크게 불법의 확장을 피했다.

명종 6년 선·교·양 종의 승과 및 도승제를 다시 설치해 이듬해 처음으로 승과의 초시를 실시했는데, 회시(會試)·강경(講經)·제술(制述)·사첩(賜牒)·필(筆) 모두 문무과를 본떠 이를 시행했다. 당시 대간·유생들은 불법의 확장에 대해 크게 분노하면서 상소하여 요승(妖僧) 보우를 주살할 것을 청했는데, 중종 20년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보우는 제주에 유배된 뒤 목사 변협(邊協)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듬해 승과도 결국 폐지되었다.

〈도교〉

도교는 아주 옛날부터 조선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영류왕 7년(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당나라가 도사(道士)에게 명하여 천존상 및 도법을 전하고 노자를 강술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듬해 8년 왕은 또 사람을 보내 당나라에 가서 불로(佛老)의 교법을 익히도록 했다는 것을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도교의 교의 및 제반 의궤 등이 널리 퍼져 불교 다음으로 여러 지방에서 이루어졌다(『고려도경』에는 “대관경인중(大觀庚寅中), 대관은 휘종(徽宗)의 연호이고, 경인은 고려 예종 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814년 전이다) 천자(天子)는 저 멀리 묘도(妙道)를 듣고자 원하는 것을 살피어, 신사(信使)를 파견해 우류(羽流) 둘을 따르게 함으로써 교법을 통달한 자를 골라 이를 훈도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고려에는 이미 도교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고려의 유제(遺制)를 본떠 도교의 한 직책인 소격서(昭格署)를 설치하고, 삼청전(三清殿)을 둠으로써 성진(星辰)의 초제(醮祭)를 관장하도록 했다. 용재 성현은 소격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격서는 모두 중국의 도가(道家)에 의거한다. 태일전(太一殿)은 북두칠성을 제사 지내는데, 그 모습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모습이다. 삼청(三清)은 옥황상제·태상노군(太上老君)·보화천존(普化天尊)·재동제군(梓潼諸君) 등 10여위(位)를 제사 지내는데, 모두 남자 형상이다. 그 밖에 안팎의 여러 단에 사해용왕신(四海龍王神)·명부십왕(冥府十王)·수부(水府)의 여러 신들의 제명위판(題名位版)을 둔 것이 무려 수백이다. 현관·서원들은 모두 흰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제를 올리고, 관홀(冠笏) 예복을 입고 제사 지낸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유학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도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종종 박해를 당했고, 소격서도 중종 11년에 부제학 조광조의 상소로 혁파되었다. 중종 20년에 조금씩 부흥되었지만 임진 역(役)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그 뒤에는 설치되지 않았다(현 조선총독부 학무국 분실, 즉 옛 규장각은 소격서의 옛터라고 한다).

(『이조실록』,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제4절 법전 · 활자 · 언문 · 천문 · 역상(曆象) · 공예 · 미술

1. 법전 · 활자 · 언문

이 시기 조선의 문화사에 있어서 특필한 만한 것은 법전의 편찬 및 활자 · 언문의 제작이다. 그 개요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전의 편찬

조선에는 초기부터 약간의 법전이 있었지만, 『경국대전』이 나오면서 후세의 전거가 되었고, 불후불변의 법전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경국대전』 이전의 법전으로는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등록(六典謄錄)』이 있다. 태조 때에 판삼사사(判三司使)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이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을 편찬했다. 주례(周禮)의 육관을 본떠 첫째를 법전(法典), 둘째를 부전(賦典), 셋째를 예전(禮典), 넷째를 정전(政典), 다섯째를 헌전(憲典), 여섯째를 공전(工典)이라 했다. 태조는 크게 감탄하였으나, 나중에 하륜에게 명하여 이를 더욱 상세히 만들도록 했는데, 이때에 원육전(元六典) · 속육전(續六典)이 나왔다. 『경제육전』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종 때에 원 · 속육전을 본떠 『육전등록』을 편찬하여 정치를 관장하는 이들은 모두 이 전례에 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조(科條)에 전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세조는 이러한 교지 전례들을 모아 드과 실을 잘 가늠한 뒤 만세불후의 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영성부원군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법전의 편찬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를 『경국대전』이라 한다.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6전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이 · 호의 2전은 세조의 치세 중에 완성되었지만 나머지 4전은 다음 왕인 예종 원년이 이르러 점차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성종 5년인데, 왕은 대전 이후 새로이 제정된 과조(科條)가 적지 않고 또 시세의 추이는 대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광천군 이극증(李克增) 등에게 명하여 대전 이후의 교령(教令) 가운데 항법(恒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골라 이를 집성하도록 했다. 『대전속록』이 바로 그것이다. 속록이 완성된 것은 성종 23년인데, 그 이후 중종 28년에 이르러 또다시 속록 이후에 나온 교지 및 육조의 제령조절(制令條節)을 모아 참작 가감하여 하나의 법전을 편찬했다. 이를 앞의 『대전속록』과 대비해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이라 한다.

그 이후에도 법전의 편찬은 종종 이루어져서 『수교집록(受敎輯錄)』(제19대 숙종 24년), 『전록통고(典錄通考)』(동 32년), 『속대전(續大典)』(제21대 영종 20년), 『대전통편(大典通編)』(제22대 정조 9년), 『대전회통(大典會通)』(이태왕 2년) 등의 여러 법전들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경국대전』의 정신은 각 법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으며 별로 다른 것

이 없다(『이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대전속록』,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삼봉집(三峰集)』).

(2) 활자의 제작

활자의 기원은 중국에 있다. 조선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 고종(1214~1259년) 때에 주조된 활자로 서적을 인쇄한 사실은 문헌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므로 당시 이미 활자가 존재한 것은 명백하다(『동국이상국후집』 제11의 신서상정예문발미(新序詳定禮文跋尾)의 기사 중에 ‘마침내 주자(鑄字)를 사용해서 28본을 찍어냈다(遂用鑄字印成二十八本)’라고 나와 있다. 이미 주조된 활자가 있는 이상, 그것이 금속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활자가 현존하지 않아 어떠한 종류의 금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는 공민왕 4년에 서적원을 두고 활자의 제작, 서적의 인쇄 등을 관장한 것과 『고려사』를 보면 당시 활판의 사용이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3년 비로소 주자소가 설치되었고, 왕은 일찍부터 뜻을 학문에 두었는데, 일찍이 좌우에 말하길, “우리 조선은 멀리 동쪽에 있어서 널리 중국의 서적에 접하지 못했다. 지금 동을 주조해 활자를 만들 수 있으니 이를 인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예문관 대제학 이직 등을 주자소 제조에 임명하고 내부(內附)의 동을 내어 고주(古註) · 시(詩) · 서(書) · 좌씨전(左氏傳) 등의 서적을 자본(字本)으로 하여 활자 수십만을 주조하고 이를 이용해 많은 서적을 인쇄했다. 세종 역시 유학을 좋아하고 학문의 장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 활자를 개조하였고, 또 새로운 연(鉛)활자도 주조하여 『자치통감강목』 및 그 밖의 여러 서적을 인쇄했다. 그리고 문종 때에 세종이 개조한 활자를 다시 개조하였고, 세조 때에 또다시 개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자도 주조했다. 성종은 특히 학문을 좋아하여 그의 치세 중에 학문이 크게 융성하였는데, 활자의 주조도 두 번 이루어졌다. 중종 때에도 활동활자를 주조했다. 선조 때에 임진의 역(役)으로 폭민(暴民)들이 궁궐에 난입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전래의 활자가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급히 목자(木字)를 제작했다고 한다. 활자 주조 사업은 나중에 숙종 때에 이르러 점차 부활되어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 다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조선활자의 종류를 들자면, 태종 3년에 주조된 동활자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주조된 것은 대개 동을 사용한 것이다. 세종 18년에는 연활자, 중종 14년에는 활동활자를 주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외에 도활자(陶活字), 목활자(木活字)가 있는데, 도활자는 종류가 매우 적다. 목활자는 임진의 역 당시 불로 인해 금속활자가 소실됨에 따라 급히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민간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다(『고려사』, 『이조실록』, 「조선활판의 연혁」『조선』 수록).

(3) 언문의 제작

언문이 발표된 것은 세종 28년이다. 그 이전에는 관부와 민간 모두 이두(吏讀, 이도(吏道)라고도 한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자를 빌려 그 음운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충분히 뜻하는 대로 밝히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은 모든 나라는 각자의 문자가 있고 국어를 쓰는데, 오직 조선만 특유의 문자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5년 친히 자모 28자를 만들었는데, 이를하여 언문(諺文)이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궁궐 안에 기관을 설치해 정인지 · 신숙주 · 성삼문 · 최항 등에게 명하여 이를 만들도록 한 뒤 예의(例義, 즉 해설)를 붙여 이를 온 나라에 반포했다.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한다. 마침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黃贊)이 유배되어 요동에 머물고 있었는데, 성삼문 등은 음운상의 의문을 묻기 위해 황찬의 거처에 13번을 왕복했다고 한다. 언문이란 한자에 대한 통속문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왕이 직접 “국가의 어음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민(愚民)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를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것은 그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언문은 자모 28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훈민정음』을 보면 명백한 사실인데, 그 가운데 3글자는 빠져버려서 지금은 25자만 사용되고 있다.

언문의 제작은 분명 문화사에 있어서 일대 사업이었다. 조선 국민은 이로써 엄청난 편익을 얻은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집현전 유생 중에는 그 불가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언문은 신기한 하나의 예(藝)에 지나지 않고, 학문에 있어서 손실이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득이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세종실록』, 『동국문헌비고』, 『훈민정음(訓民正音)』, 『연려실기술』).

2. 천문 · 역상 · 공예 · 미술

(1) 천문 · 역상(天文曆象)

세종은 천문역수(天文曆數)에 밝았는데, 이에 관한 시설은 대부분 세종 때에 설치되었다. 세종 14년 왕은 예문관 제학 정인지에게 명하여 “우리 동방이 멀리 해외에 있으나, 대부분의 제도를 중국의 것을 따랐다. 그러나 다만 천문을 관측하는 기기가 없으니, 경은 대제학 정초(鄭招)와 고전을 강구하여 의표(儀表)를 만들어 관측에 쓰이도록 하라. 하지만 그 요점은 북극이 땅 위에 솟은 높낮이를 정하는 데 있으니, 먼저 간의(簡儀)를 제작해 들이게 하라”라고 했다. 정인지는 정초와 함께 고전을 연구하고 중추원사 이천

(李歲)은 호군 장영실(蔣英實, 장영실은 아산 사람으로 기기 제작에 매우 뛰어나다)과 함께 공역을 독촉하여 먼저 목간의(木簡儀)를 제작하여 한양에서 북극의 고도 38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을 주조하여 의상(義象) · 표루(表漏)의 여러 기기를 제작하고, 7년 뒤에 대부분 완성했다. 대소간의(大小簡儀) · 혼의흔상(渾儀渾象) · 앙부일구(仰釜日晷) ·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 자격루(自擊漏)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제작법은 모두 매우 정교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것은 경복궁 내의 천추전(千秋殿) 서쪽 정원에 설치된 흠흥각(欽敬閣)이라고 한다. 흠흥각은 그 중앙에 높이 7척 가량의 산을 만들고 그 안에 옥루기(물시계) 하나를 갖추어 수력으로 윤전한다. 또 금으로 태양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탄환 정도로 오운(五雲)이 이를 둘러싸 산허리 위를 간다. 하루에 일주를 하는데, 낮에는 산 위에 뜨고 밤에는 산중에 진다. 산의 주위에는 각종 인형이 있어서 모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시각을 알린다. 즉 옥여(玉女, 4명)는 때에 따라 방울을 흔든다. 사진(司辰, 1명)은 갑주(甲胄)의 무사(3명)와 서로 되돌아보고, 4신(神)과 12신은 구르고 일어나면서 각자 그 직무를 다한다. 그 구조의 묘미는 실로 눈을 의심케 할 만하다고 한다.

15년 세종은 고금의 천문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이를 돌에 새겼는데, 24년 또 다시 명을 내려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했다. 기기는 동을 주조하여 만들었고 길이 1척 5촌, 둘레 7촌(주척(周尺)을 사용), 대(臺)를 서운관(천문 · 지리 · 역수 · 측량 등을 관장)에 만들어 그 위에 장치했다. 비가 올 때마다 서운관의 관원이 주척을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고 아뢴다. 또 각 도에 하나씩 보냈고, 각 읍은 이를 본떠 자기 또는 와기(瓦器) 등으로 측우기를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객사의 정원에 두어 비가 온 뒤 수령이 직접 수심을 측정해 아뢰도록 했다.

왕은 또한 역상(曆象)에 뜻을 두고 15년에 예문관 제학 정인지 · 정초 · 정흠지 등에게 명하여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 및 명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참고하여 『칠정산내편(七政山內篇)』을 편찬하도록 했다. 또 이로써 역법을 얻어 이순지(李純之) · 김담(金淡, 두 사람 모두 천문역산에 정통했다)에게 명하여 이를 참고하여 『칠정산외편(七政山外篇)』을 편찬하도록 했다. 왕은 또 역관을 마니산(강화도) · 백두산(갑산부) · 한라산(제주도) 등에 파견해 그 지방의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도록 했지만, 측정값 등은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동국문헌비고』, 『동문선』, 『세종실록』)

(2) 공예미술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예술이 쇠퇴한 시기로 보인다. 조선시대를 통해 전후 500여 년, 선조 이후 약 300년 동안内外의 환란이 이어져서 많은 공예미술품이 파괴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국운의 쇠퇴, 백성의 피폐는 예술의 진흥을 촉진할 힘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약 200년은 국가의 기초가 점차 튼튼해지고 문물이 용창한 결과로서 뛰어난 공예미술품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건축은 웅대하고 호화로우며 또 회화 같은 것도 오히려 신라·고려시대보다 뛰어나며, 우수한 화가를 많이 배출했다. 용재 성현은 당시의 화가를 평하여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화가가 매우 적다. 근대부터 이를 보면 공민왕의 화격(畫格)이 가장 높고 (……) 본조(本朝)에 이르러 고인(顧仁)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인물을 잘 그렸다. 그 이후 안견(安堅)·최경(崔涇)이 유명하다. 안견의 산수화, 최경의 인물화는 모두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요새 사람들은 안견의 그림을 금옥처럼 사랑하고 간직한다. 내가 승지가 되었을 때 궁중에 있는 청산백운도(青山白雲圖)를 보았는데, 참으로 절보(絕寶)였다. (……) 안견은 항상 평생의 정력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최경은 만년에 산수와 고목을 그렸으나 안견에게 양보해야 한다. (……) 강인재(姜仁齋)는 타고난 재주가 고묘(高妙)하여 옛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얻었는데, 산수화와 인물화 모두 뛰어났다”라고 한다. 안견(호 현동자(玄洞子))·최경(호 근재(謹齋))은 모두 세조 때의 인물로, 강인재는 이름을 희안(希顏)이라 하고(인재는 호이다) 역시 세조 때의 명신이다. 그 외에 화가들 중에서 유명한 이로는 이용재(李容齋, 호는 석경(石敬))가 있다. 성종 때의 인물로, 묵죽 및 용을 잘 그렸고, 이상좌(李上佐, 호는 인재(仁齋)·학포(學圃))는 산수화와 인문화를 잘 그렸으며, 그 역시 성종 때의 인물로, 강희안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다음으로 도자기를 보자면, 고려자기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고, 조선시대에도 초기부터 중기의 초반에 걸쳐서는 매우 우수한 것을 만들었다. 종래 고라이야키(高麗燒)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여겨진 도자기 중에는 조선시대에 속하는 것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인들로부터 미시마데(三島手)라 불리며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찬미되고 있는 도자기도 실은 고려 말기에서 이조 초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최전성기는 오히려 이조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도자기는 이조에 들어서 진정한 고유의 색채를 표현했고, 일품인 것을 보자면 아름다움이 결코 타국의 우등품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용재총화』, 「이조도자기의 역사(李朝陶磁器の歴史)」 잡지 『조선(朝鮮)』 수록).

그 밖에 조각, 칠기 등도 매우 뛰어난 것이 많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예술도 선조 이전에는 상당히 진보했음을 알 수 있다.

〈출전 : 『朝鮮半島史』 5편, 연도미상, 진주 경상대 文泉閣 소장〉

5) 『사료』(『조선반도사』 6편 조선최근세 초고 중 일부로 추정)

제3장 일본과 조선의 수교(修交)

제1절 왕비(王妃)의 책립(冊立)과 민씨(閔氏)

1. 왕비의 책립

사가(史家)는 말한다. 대원군(大院君) 이하옹(李暉應)이 정권을 전천(專擅)하자, 스스로 차질(蹉跌)을 가져오는 두 가지 기초를 만들었다. 하나는 조선 반도에 예전부터 있던 인습(因襲)만을 편중하여 배외쇄양(排外鎖攘) 방법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 또 하나는 전 왕(前王) 누대에 걸친 외척 전권(外戚專權)의 폐해에 혼이나 나라의 왕비(王妃)를 민씨(閔氏) 집안에서 맞이한 점이다.

첫 번째 것은 전개되는 상황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두 번째 것은 대원군 스스로의 착견(錯見)으로 인해 후반의 생을 함정 속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척의 화(禍)

생각해 보면, 이씨조선 말기에 국세(國勢)는 점점 기울어가고, 유약한 국왕이 잇달아 즉위하여, 정권은 대개 외척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국가의 쇠퇴를 더욱 촉진하였다. 정조(正祖, 제22대)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둘째 아들 순조(純祖, 제23대)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영조(英祖)의 왕비 김씨(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그리고 순조 말년에는 세자(世子) 호(昊, 익종(翼宗), 문조(文祖)로 추존(追尊)되었다가 대신 정치를 돌보았으며, 이어서 호의 아들 현종(憲宗, 제24대)이 8살에 즉위하여 왕위에 올라 순조의 왕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자 영조의 증손(曾孫)인 전계군(全溪君) 광(廣)의 아들 변(昇)이 강화(江華)의 오지에서 살다가 궁중으로 와서 왕위에 올라 철종(哲宗, 제25대)으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정권은 전례(前例)에 따라 순조의 왕비 김씨와 그의 일족 수중에 들어갔다.

외척이 되려는 집망(執望)

사실 외척으로서 천하의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김씨 일족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며, 일족의 영고(榮枯)는 오직 외척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를 위해 일족은 모든 힘을 기울였으며, 국왕 및 왕비의 옹립에 광분하여 비밀리에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한편, 표면적으로는 정의(正義)를 부르짖고 사소한 예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수많은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였다.

철종 말년에 왕위 계승의 물망에 올랐던 경평군(景平君) 호(皓)와 도정(都正) 이하전(李夏銓)이 무고(無辜)하게 참화(慘禍)를 당하였다. 이태왕(李太王)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전변(轉變)이었다.

대원군의 착안(着眼)

순조 20년, 가난한 왕족의 가문에서 탄생한 대원군은 자주 외척의 영화와 음모를 목격해온 터였다. 이윽고 대원군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어린 왕을 위해 외척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또한 지금까지 외적이 농단(壘斷)해 오던 정권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여, 그 권세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한 깊은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새로 등극한 왕의 왕비로 간택될 인물은 외척으로 나설 사람이 가장 적은 집안이어야 하였다. 이리하여 그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여홍 민씨(驪興閔氏) 가문의 일족인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간택해 왕비로 책립하였다.

민치록 일가(一家)

민치록은 장락원(掌樂院) 첨정(僉正)이었다. 그 부인 오씨(吳氏)는 일찍 세상을 떠나 (여홍민씨파보(驪興閔氏派譜)) 후실로 한산 이씨(韓山李氏, 훗날 한창부부인(韓昌府夫人)) 집안의 딸을 맞이하였다. 부인 이씨는 철종 2년(1851년) 9월에 여주(驪州) 근동면(近東面) 섬락리(蟾樂里)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왕비 민씨이며, 아버지 민치록은 철종 9년(1858년)에 나이 60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왕비는 9살이었다. 가계(家系)는 같은 집안의 민치구(閔致久)의 둘째 아들 승호(升鎬,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가 일찍부터 승계하였는데, 이로써 민승호는 왕비의 양형(養兄)이 된다(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명성왕후탄강구리비(明成王后誕降舊里碑), 여홍민씨족보).

대원군 일가와 민씨

생각해 보면,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 구(球)의 부인은 민경혁(閔景赫)의 넷째 딸이고, 대원군 이하옹은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었다. 대원군 역시 민치구의 장녀와 결혼하여 이태왕을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민치구의 장남은 민태호(閔泰鎬)라고 하며, 민태호의 동생으로 민승호, 민겸호(閔謙鎬)가 있었다. 민승호(이태왕 11년에 침실에서 폭사(爆死)하였다)는 출계(出系)하여 민치록의 계보를 이었으며, 민겸호는 나중에 선혜당상(宣惠堂上)으로서 조선 반도의 화도(貨道)를 앙장(鞅掌)하여, 임오의 난(壬午의亂, 1882년) 때 군병(軍兵)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살해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민씨와 대원군 일가의 얹히고 설킨 심원(深遠)한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원군이 이러한 민씨 중에서 일가 친척이 적은 민치록의 외동딸을

골라 왕비로 책립한 깊은 속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왕비의 간택(揀擇)

이태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국왕의 연령 15세에 달해 왕비 책립과 관련된 논의가 왕궁 안에서 시작되어 조선 반도 정부는 거국적으로 전례(典禮)에 따랐다. 그리고 3월 1일, 국내에 12세 이상 17세 이하 처자(處子, 미혼여성)의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국왕과 동성(同姓) 및 대왕대비 조씨(趙氏) · 왕대비 흥씨(현종의 계비(繼妃)) · 대비 김씨(철종의 비)의 근친(近親)은 예외였다(『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2월 25일 간택(왕자 · 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실시하여 첨정 민치록의 딸 · 유학(幼學) 김우근(金遇根)의 딸 · 현령(縣令) 조면호(趙冕鎬)의 딸 등 5명을 골랐으며, 이어 3월 6일에 삼간택(三揀擇)을 실시하여 예정대로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책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원로 정원용(鄭元容) · 김좌근(金左根) · 조두순(趙斗淳) 등 모두가 이를 축하하였다.

왕비의 책립(冊立)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책립하기로 결정하자, 관례에 따라 민치록은 영의정(領議政)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그 부인 오씨는 해령부부인(海寧府夫人)에, 계부인(繼夫人) 이씨는 한창부부인에 봉해졌다.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당시 천주교도 수색과 체포, 경복궁(景福宮)의 중건 등 중대한 국사(國事)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 왕비 책봉 하례(賀禮)를 대원군의 사저(私邸)인 운현궁(雲峴宮)에서 거행하였으며, 다음 날 별궁(別宮, 안국동에서 친영례(親迎禮)를 거행하였다. 이리하여 왕비는 16세의 나이에 왕궁으로 들어갔다(『승정원 일기』『일성록(日省錄)』『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국조보감』『조선사(朝鮮史) 23 · 24』『대조선근사(大朝鮮近史)』『여흥민씨 파보』『동화성보(東華姓譜)』『Hist of Korea』『여흥민씨 족보』).

2. 왕비의 성장 과정과 민족(閔族)의 응기(隆起)⁷²⁾

왕비의 교양

왕비 민씨의 책립을 계기로 마침내 응기하기 시작한 민씨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 왕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씨의 흥용(興隆)은 왕비의 인격(人格), 재간(才幹)이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첨정 민치록의 외동딸로 태어난 왕비 민씨는 가학(家學)을 아버지인 민치록에게 익혔으며, 왕비가 가장 즐겨 읽던 것은 역사 서적으로, 왕비는 이를 통해 역대(歷代) 치란(治亂) · 흥폐(興廢) · 득실(得失)의 행적을 배우면서 매

72) 원문에는 이 부분 앞에 '제2절 왕비의 책립과 민씨'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러나 앞의 제1절이 '왕비의 책립과 민씨'였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우 흥미진진해하였다고 한다. 왕비로 책봉되어 입궁한 후에도 『소학(小學)』·『효경(孝經)』을 읽으면서 그 옆에는 항상 『좌전(左傳)』을 두고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총명하고도 침통한 성격은 동유희유(童幼嬉遊)하던 시절의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민씨 집안 출신의 왕후(王后)

민치록이 살던 경성(京城)의 사저는 안국동(安國洞)에 있었으며, 마당에 숙종(肅宗, 제19대) 왕비였던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사저가 있어서 이를 감고당(感古堂)이라고 불렸으며, 이곳에는 이조의 영주(英主)였던 영조가 잠시 머물면서 남긴 어필(御筆)로 된 편액(篇額)까지 걸려있었다. 인현왕후는 민유중(閔維重)의 딸로, 경종(景宗, 제20대)의 실모(實母)였다. 또한 영조(제21대)의 의모(義母)이기도 하였다. 이태왕의 왕비인 민씨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행왕후행록(大行王后行錄)』『선원계보기략』)

왕비와 왕실의 존속(尊屬)

이태왕 3년 3월 입궁 후, 왕비는 마음을 다해 왕실의 존귀한 대왕대비 조씨를 섬기며, 침식(寢食) 등 모든 일을 왕비 민씨가 직접 처리하여, 두 사람 사이가 매우 밀접해졌다. 왕비 민씨의 활발한 재기(才氣)는 자주 대원군의 전천(專擅)에 의해 매우 실의경애(失意境涯)하여, 대왕대비의 심정을 우울하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세속의 쓴맛을 맛본 대원군은 왕비의 예지(叡智)를 비난하여, 대원군과 왕비 민씨의 사이는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대행왕후행록(大行王后行錄)』『조선정감(朝鮮政鑑)』).

민씨 집안의 관직 진출

생각해 보면, 숙종 무렵 민유중·민진후(閔鎮厚) 등은 여흥 민씨 집안 출신으로 요직에 올랐으며,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도 민씨 가문 출신이었으나, 이후 민씨 출신 가운데 요직의 중추를 점한 자가 적고, 이태왕 왕비 책립 때에 여흥 민씨 가문 출신으로 관직에 나아간 자는 민치구·민승호·민영상(閔泳商)·민창식(閔昌植) 등이었다. 민치구는 대원군 부인과 민승호의 생부(生父)로, 전에 광주유수(廣州留守)를 지낸 일이 있다. 민영상은 공조좌랑(工曹佐郎)이었다. 훗날 임오(壬午)의 난이 발발하자, 지나친 탐욕으로 민서(民庶)의 원망을 사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민창식은 광흥창령(廣興倉令)으로서 이미 재화(財貨)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왕비의 의형(義兄)인 민승호는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이라는 연고와 왕비 책립이 내정된 결과 때문인지 예조참의(禮曹參議) 부호군(副護軍) 등의 무시할 수 없는 관직을 역임하였고, 역시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인 민겸호는 일찍이 이태왕의 동몽교관(童蒙敎官)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민정호(閔定鎬)·민종수(閔鍾洙)·민태현(閔泰顯) 등도 모두 관직에 나아갔다.

대원군의 정권 장악과 쇠락

이태왕 즉위 이래, 대원군은 국왕의 생부로서 정치에 관여하였는데, 권세가 날로 커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대원군과 손을 잡고 김씨 가문의 전권(專權)을 타파한 대왕대비 조씨도 점차 그 세력을 잃어, 이태왕 3년 2월, 대왕대비 조씨는 수렴청정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하게 정치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갔다. 이에 반해 대원군은 김씨 가문을 축출함과 동시에 사색 평등(四色平等)을 선언하고, 특히 종래 가장 심하게 탄압받았던 남인(南人)·북인(北人)을 기용하여 노론(老論)·소론(少論)의 당파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권세 유지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한편으로 관규(官規)의 진숙(振肅)을 천명하고, 경복궁 중건을 기획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권세를 표명하여 사민(士民)을 압박하였다. 실제로 대원군의 위협적인 권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대원군의 위세는 절정에 있을 때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전권적(專權的)인 행동은 수많은 불평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일상의 궤도를 이탈한 정치로 인해 민중(民衆)의 원성을 끊이지 않았다. 한편, 입궁 당시 오직 대왕대비 조씨를 섭기고 역사 서적을 탐독 하던 왕비 민씨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세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있었으며 왕비가 정권을 잡을 기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비정(秕政)의 통격(痛擊)

경복궁과 제(諸) 궁아(宮衙)·문루(門樓) 등의 큰 공사를 시작한 이래, 재정은 더욱 궁핍해졌는데, 이태왕 3년에 프랑스 함대가 침입해 오자 연해(沿海)의 경비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인재(人財)의 주구(誅求)는 더욱 심해졌으며, 마침내 수차례에 걸쳐 전화(錢貨)를 개주(改鑄)하였고, 도시성문세(都市城門稅)까지 부과하여, 민심의 분노는 대원군의 권세로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태왕 3년 9월, 프랑스 함대의 침입이 있음을 무렵, 경기도(京畿道) 가평(加平)의 처사(處士) 이항로(李恒老)라는 인물이 김병학(金炳學)의 추천으로, 부승지(副承旨)에서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진급하였는데, 이항로는 소(疏)를 올려 양적(洋賊)과의 화전(和戰)의 이해(利害)를 논의하고 또한 토목 공사와 염민(斂民)의 정치를 중단할 것을 통론하였다. 이는 대원군 집정(執政)의 요강(要綱)을 비난하는 것으로, 왕비 등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열렸던 것이다.

최익현(崔益鉉)의 통론(痛論)

그럼에도 대원군은 국내의 원성을 돌아보지 않고 토목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연해의 방비를 강화하였는데, 마침 흥년이 들어 벼가 익지 않고 영글지 않아 민심의 불안은 극에 달하였다. 이에 이태왕 5년 10월, 이항로의 문도(門徒)인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최익현이 상소(上疏)를 하여, 토목 공사·원납전(願納錢)·당백전(當百錢) 및 문세(門稅)의 정지를 절절히 주장하였는데, 최익현은 오히려 이 일로 돈녕부 도정(敦寧府 都正)으로

승관(陞官)하였다. 이는 대원군의 집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이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대조선근사(大朝鮮近史)』, 『일성록(日省錄)』).

대원군 반대파 출현

먼저, 대원군 집정 초기에 민씨 일족은 모두 대원군의 아래에서 몸을 낫추고 그의 이사(頤使)를 감수하였다. 이제 대원군 집정이 오래되면서 실정(失政)이 속출하였고 민심은 위태롭게 변하였으며, 당시 국왕도 성장하였고 왕비 민씨의 권세도 늘면서, 대원군 세력에 반대하는 기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왕비의 의형(義兄)으로 민씨의 중견이었던 민승호는 이 무렵에 형조판서(刑曹判書) · 수원유수(水原留守) 등 요직을 역임하였고, 또한 민태호(閔台鎬) · 민규호(閔奎鎬) · 민겸호 등도 황해감사(黃海監司) 등 그 밖의 요직을 점하고 있었으며, 대원군의 친형인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또한 어떤 일로 인해 대원군과 소원해져 민씨와 행보를 함께하였으며 대왕대비 조씨의 일족인 조성하(趙成夏) · 조영하(趙寧夏) 등도 민씨와 뜻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이유원(李裕元) · 박규수(朴珪壽)와 같이 세력과 재간이 있는 중신(重臣)은 모두 성인이 된 국왕을 위해 진력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결집하여 단단한 근지를 구축하게 되자, 대원군도 더 이상 그 권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원군의 노퇴(老退)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이태왕 10년 윤(閏) 6월, 관학유생(館學儒生) 이세우(李世愚)가 상소하여, 대원군의 노퇴(老退)를 발의(發議)하였으며, 10월에 최익현이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통렬히 비판하였는데 이 일로 최익현은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영진(榮進)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최익현은 이로 인해 세상에서 말들이 많자 견디지 못하고 제주목(濟州牧)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는 그저 명분상의 일이었을 뿐이다. 그 사이에 대원군은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였고 민씨 일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민씨에 대한 반동과 혜성(彗星)과 같은 대원군의 음모는 역사상 이광(異光)을 발하였다(『일성록』, 『승정원 일기』,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명성황후빈전흔전도감의궤(明成皇后賓殿魂殿都監儀軌)』, 『대조선근사』, 『대원군전(大院君傳)』).

3. 대원군의 은퇴와 정국(政局)

극단적인 반동(反動) 정치의 시작

정계를 은퇴한 대원군은 도성 북문(北門) 밖 삼계동(三溪洞) 산장(山莊)에 돌아와 지냈는데, 그의 야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불만이 가득하여 정계의 동정을 관망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은퇴를 결정적 사실로 만든 최익현의 상소문에 반격을 가한

형조참의(刑曹參議) 안기영(安驥泳) · 전(前) 정언(正言) 허원식(許元拭)은 오히려 체포되어 원찬형(遠竄刑)에 처해져, 대원군파 세력에 대한 제재(制裁)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원군에게 중용된 남인(南人) · 북인(北人) 좌의정(左議政) 강로(姜老), 우의정(右議政) 한계원(韓啓源) 등이 모두 내쳐졌으며 새로이 이유원, 박규수가 상신(相臣)으로서 정국을 장악하였다. 구정치에 대한 반동은 신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원납전 및 결렴(結斂)의 혁파

대원군이 정계에서 떠나자 장령(掌令) 홍시형(洪時衡)은 상소를 올려 죄의현의 소론(所論)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대원군 집정시대의 민고(民苦)를 열거하였다. 이에 새로이 들어선 당국은 먼저 원납전 및 전토(田土)에 부과된 결두전(結頭錢)을 혁파하고(계유(癸酉) 10월 29일), 대원군의 위암으로 봉쇄되었던 유생들은 빠르게 대두하여 관사(官司)와 연계해 만동묘(萬東廟) 복구를 청원하였고(계유 11월 29일), 이듬해 7월 마침내 만동묘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청전(淸錢)의 폐지

대원군은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하여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태왕 4년 6월 아래, 청국(淸國)의 전화(錢貨)를 수입하여 국내 통화(通貨)를 윤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의 병폐를 고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에 대한 반감이 일자, 배청(排淸) 사상과 더불어 청전의 폐지 주장이 나왔으며, 청전(호전(胡錢)) 사용에 대해 황묘(皇廟, 만동묘(萬東廟)) 복구와 함께 명분상의 논란이 속출하였다. 이에 새로이 들어선 당국은 반동의 추세를 경제 면에서도 이용하였다. 이태왕 11년 정월, 청전 통용 정지 명령을 국내에 포고하였는데, 몇 년에 걸쳐 뿌리를 사회에 깊게 내린, 또한 비교적 편리한 점이 많았던 통화를 단숨에 철저하게 철폐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납세 및 상업상의 혼란이 매우 컸다. 더구나 이익을 찾는 교활한 무리들이 이 사이에 날뛰어 재정을 어지럽히며 조롱을 하였는데,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당백전 폐지 당시 못지 않았다.

일본 당국, 일한국교를 갑자기 중단하다

대원군 집정에 대한 반동은 내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남선(南鮮)의 일각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던 일한 통교(日韓通交)에까지 미쳤다.

일본에서는 1873년 10월(이태왕 10년 9월), 대한(對韓) 방침에 관한 조정회의의 결정으로 참의(參議)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이 사직하였는데, 정부 당국은 일한 관계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 사정에 정통한 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오랫동안 조선에 있으면서 그 사정에 정통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

미치(大久保利通), 외무경(外務卿)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 글을 제출해 일한 국교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다시 등용해 외무대승(外務大丞)에 임명하여 외무대승국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1873년 말부터 1874년 신춘(新春)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외교 담당자 개변(改變)

반동적 색채가 농후한 조선에서는 대원군의 뜻을 받아들여 일한 국교를 조종하는 동래부사(東萊府使) 정형덕(鄭顯德) 및 부산훈도(釜山訓導) 안동준(安東晙)을 파직하였다. 이태왕 11년 정월, 박제관(朴齊寬)을 동래부사로 임명하고, 전임자의 죄과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의 극단적인 쇄국 방침을 철회하고 일한 국교를 위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인물이 부산훈도 안동준(東俊卿)이었다. 안동준은 오랫동안 일한 교섭에 직면하여 그 통교를 거부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복을 채웠으며, 그의 방자함은 이미 사민(士民)의 주목을 끌어『일성록(日省錄)』 갑술(甲戌) 정월 10일, 3월 20일), 경성 정부는 안렴사(按廉使)를 동래, 부산에 파견하여 그 죄상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태왕 11년 6월, 영의정 이유원이 상계(上啓)하여 안동준을 탄핵하며 그 글에 이르기를,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니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가옥을 넓게 차지하고 읍내에서 편안히 살며 삼남의 온갖 물건을 도매로 사들이고 있으면서 왜관에 발길조차 돌리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법에 어긋납니다. 또 공목(公木)에 대한 농간질과 끝없는 돈놀이를 하여 온 도가 원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⁷³⁾

이라고 하였다. 안동준이 공화(公貨)를 숨기고 이를 빌려 사복을 채우고, 또한 왜관(倭館)에 공급해야 할 물자를 횡령하여 일선 국교(日鮮國交)를 막은 죄, 그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였으나, 조선 반도의 관계(官界)에서는 안동준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만을 문책할 수 있는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안동준은 구정치에 대한 규탄의 구실로서 참화를 비껴가지 못하였을 뿐이다.

안동준 사건 관계자의 처분

이리하여 안동준은 이듬해 3월 동래에서 참수되었으며, 또한 안동준 사건에 연루된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는 파직되었으며, 동래부사 정현덕은 문천군(文川郡, 함경도)으로 유배되었다. 나중에 정현덕은 임오병란(壬午兵亂, 1882년의 병란)이 발발하

73) (……) 渠自得意 恣橫放肆 廣占家舍 儂處邑底 囊括三南 都賈百貨 足跡之不到倭館已至幾年 此固法外 (……) 且其公木之幻弄 債殖之厭 一道嗷嗷 萬口難掩 云云.

고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을 때 등용되어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대원군의 실각과 동시에 처형되었다.

조선 신(新)당국의 국교(國交) 방침 경변(更變)

조선 신당국이 쇄국주의를 혁파한 것은 오직 반동의 추세에만 따른 것이 아니다. 한 편으로 중국에 왕래하는 많은 조선 반도의 사민들은 상국(上國)인 중국에서 일본 및 서양인 사이의 조약 수교 상황과 더불어 중국의 도시에 외국인이 모여 거주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반도 또한 일본에서 일어난 사가의 난(佐賀의 亂, 이태왕 11년 1월) · 타이완의 분쟁(臺灣의 役, 이태왕 11년 3월)의 형세를 볼 때,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렵잖게나마 알고 일선 통교를 피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안렴관(按廉官)의 보고(報告)와 국교(國交) 방침

이보다 앞서, 안렴대관(按廉帶官)으로서 동래, 부산을 감찰한 태범곡(太凡谷)은 이료(吏瞭)의 횡사(橫肆)를 간파함과 동시에 일한 교섭의 진행 경과까지도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경성 정부는 도해관(渡海官)을 일본에 보내 국교상(國交上)의 음휘(陰暉)를 일소하려는 논의까지 일었다.

일한(日韓) 당국 간에 3개 항(三項)을 약속하다

조선이 일한 친교(日韓親交)를 갈망하고 있음을 간파한 부산의 일본 주류관(駐留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부산훈도(釜山訓導) 현석운(玄昔運) 등과 재삼 교섭을 거듭하여 1874년 9월(이태왕 11년 7, 8월), 대체적으로 다음 3개 항에 대해 조선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 ① 1871년 7월(이태왕 9년 6월) 우리 외무성이 보낸 문서를 승인할 것.
- ② 만약 전 문서에 승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문서를 다시 고쳐 논의하여 정할 것.
- ③ 일선(日鮮)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조선에서 사자(使者)를 일본에 보내 협의하여 정할 것.

(『정한론실상(征韓論實相)』, 『일성록』 갑술(甲戌) 8월 9일)

조영하의 서한(書翰)

이에 따라 일한 통교 교섭 진행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마련하였으나, 이 무렵 좌포장(左捕將) 조영하는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편지를 보내, 일한 국교로 친밀해져야 함을 간시(懇示)하였다. 역관(譯官) 및 도해관(渡海官)을 일본에 보내는 일은 이후 형세를 지켜보면서 실행될 것이다.

변경된 일본 국서(國書) 접수하려고 하다

이리하여 경성(京城) 정부는 일본에 통교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 앞에서 기술한 일선 간에 협의하여 정할 제2항에 근거하여 먼저 일본이 보낸 문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쳐 다시 보내도록 부산훈도 현석운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먼저 일본 측에서 요구하였다. 동래부(東萊府)에서 일한 양측 사자의 회견협의에 대해서 현석운은 확답할 수 없었다.

일한(日韓) 양측 사자(使者), 회견을 주저

동래에서 열린 이 일한 양측 사자의 회견은 사소한 듯하나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성 정부는 예(例)에 따라 그 의의를 양해하지 않고 지령조차 내리지 않았으므로 동래부사, 부산훈도 등은 그에 대한 회답에 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래부사 박제관(朴齊寬)은 이태왕 11년 8월 날짜로 지난 약속에 근거하여 제2항에 따라 5개월 이내에 새로운 문서를 통해 협정할 것을 통지해왔다.

모리야마 시게루의 귀조(歸朝)

이로써 메이지(明治) 초기 아래로 지체되어 온 일한 국교 교섭은 점차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해, 모리야마 시게루는 환호를 올리며 1874년 9월 귀국하여 자세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5개월 이내 다시 도한(渡韓)하여 일한 수교를 진척시키고자 그 준비에 분주하였다.

조선 방침 또다시 변경되다

모시야마 시게루가 귀조해 있는 동안에 이태왕 11년 11월(1874년 12월), 동래부사 박제관은 사직을 하고, 황정연(黃正淵)이 그를 대신하였다. 경성 정부에서 주로 일한 교섭을 담당하는 영의정 이유원은 대원군 일파의 반향으로, 한 때 집정(執政)을 주저하여 좌의정 이최옹이 대신해 맡으면서, 일한 교섭에 관한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대원군, 호서(湖西)에 표유(漂遊)하다

민씨 일파는 정권을 잡자 대원군 세력 제거에 더욱 부심하였는데, 유석집정(流石執政) 10년간에 걸쳐 구축한 권세의 성벽도 마침내 붕괴하여, 대원군은 물러나 북문 밖 산장을 출발해 자신의 부친 남연군(南延君) 구(球)의 묘소(墓所)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충청도 덕산(德山)으로 내려갔다. 대원군은 멀리 호서(湖西) 지방의 산야를 표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는 귀환을 요청하는 소식이 오지 않았다. 그저 승지(承旨), 의관(醫官)만이 오가면서 그의 동정을 살필 뿐이었다.

이운림(李暉林)의 무언(誣言)

당시 이태왕 11년 10월, 부사과(副司果) 이운림(경상도 예안(禮安) 사람)이라는 자가 대원군이 오랫동안 벽지에 머물며 귀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상소를 올려 환궁을 간청하였다. 또한 국왕의 효심이 부족함을 풍자하여 상소문에 말하길,

근래 삼가 듣건대, 대원군 합하(閣下)께서 궁궐 밖으로 거처를 옮기시고는 도성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기에 온 나라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이 먼 시골에 있으므로 무슨 이유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대원군 합하가 번잡한 곳을 버리고 한적한 곳을 취하여 즉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대원군의 지극한 마음으로는 오래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고, 지극한 효성을 지닌 전하로서는 오래도록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변경에서는 말썽이 그치지 않고 외적이 틈을 노리고 있으니,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더욱 어떻게 해야겠습니까?⁷⁴⁾

이라고, 당시 빈번하게 오는 외국 선박의 정탐을 거론하며 대원군의 신변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하여, 우선 대원군을 위해 두둔하는 말을 남겼다. 이운림은 이로 인해 오지로 원찬형(遠竄刑)에 처해져 위원군(渭原郡, 압록강 상류)으로 보내지려던 순간, 다시 논의가 열려 절도위치(絕島圍置)의 명이 내려져, 고금도(古今島,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로 유배되었다.

손영로(孫永老)의 소언(疏言)

이운림 상소의 효과가 적어 대원군 일파에 대한 팝박은 조금도 줄지 않았으나, 11월 전 장령(掌令) 손영로(孫永老)가 이운림의 뒤를 이어 상소하여, 대원군의 환경(還京)을 청원하고, 재상(宰相) 이유원의 비위(非違)를 헐책하며 말하기를,

이휘림(李彙林)의 상소문에 대원군을 전하께서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이미 중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원군이 교외의 집으로 가서 머문 것은 전적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가서 몸조리를 하기 위함이니 머지않아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우 추운 겨울철이니 궁벽한 산간마을의 누추한 집에서는 적당한 곳을 찾아 몸조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빠른 시일 안에 동가(動駕)하여 돌아오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지금 영의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품성은 사납고 괴팍하며 행동은

74) 近伏聞 大老(대원군을 가리킨다)閣下移宮駕外 不向城闕 舉國人情 疑懼不安 臣遠伏避土縱未知何由至此 而大老閣下其或捨劇取適 未卽請還否 以院位止慈之情 不宜久於遠離也 以殿下之孝不宜久於曠省也 況今邊釁不息 外寇伺隙 其爲戒慎尤當何如哉 云云.

간교합니다. 독기어린 뱠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해치고 파리나 개처럼 구차하게 행동하면서 추세만 따릅니다. 지난해에 다시 정승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전하의 마음을 떠보려는 심사에서 나왔는데 조상의 교훈에 가특하여 해마다 물러갈 것을 청하던 끝에 이때를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염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운운한 조상의 교훈은 세상을 속이고 명예나 낚자는 계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⁷⁵⁾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상소문 중에 이유원의 개인 비리를 열거하면서, 대원군 10년 동안의 집정을 유린한 민씨 일파를 완벽하게 공격하지 못하여, 손영로는 즉각 체포되어 금갑도(金甲島, 전라도)로 유찬위리(流竄圍籬)되었다.

민승호(閔升鎬) 일가의 폭사(爆死)

대원군과 민씨의 항쟁은 더욱 격렬해졌는데, 손영로의 상소가 있기 전날인 11월 27일, 민씨 일가의 중견인 병조판서 민승호의 저택에 복자(卜者) 안씨(安氏)의 사자(使者)라고 칭하며 궤봉 하나를 보낸 자가 있었다. 민씨는 예전부터 무복(巫卜)의 잡술을 깊이 믿었기 때문에 복자 안씨는 민씨 일가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어서, 민승호는 도착한 궤봉(櫃封)을 진기한 것이라고 여겨 늦은 밤이 돼서야 자신의 계모(繼母) 한창부부인 이씨(왕비의 계모)와 어린 아이와 함께 열어 보았는데 갑자기 폭발하였다. 민승호는 어린 아이와 함께 즉사하였으며 당시 민승호의 나이는 45세였다. 이어서 한창부부인도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이 대원군 일파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였다(『일성록』『대조선근사회여록(大朝鮮近史會餘錄)』).

민승호의 유족을 극진히 대우하다

국왕은 한창부부인 이씨와 민승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다. 특히 소홀함이 없는 장례식이 되도록 많은 물자를 보냈으며, 민태호의 장자 민영익(閔泳翊)에게 민승호의 뒤를 잊게 하였다(『여홍민씨족보』, 『일성록』 이후, 민태호, 민영익은 민씨 일파의 중추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태왕 12년 겨울, 영의정 이최옹(당시 이유원은 세자 책례(冊禮) 주청(奏請) 때문에 청나라에)이 감당할 수 없다며, 국왕의 간절한 위유(慰諭)까지 듣지 않고 직무(職務)를 포기하였다. 이태왕 11년 11월 말일부터 성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

75) (……) 言涉不審已被重罪 而其時傳教答大院君郊舍行次 專爲取適瀕養 而行將非久還次矣 于今數朔未聞還次之報 顧今涒鄰 窮山陋室 恐有妨於取適瀕養 伏願不日動駕以爲還次焉 見今任元輔責者 果何如人也 賦性猥復 行已奸狡 蛇虺之毒 逢人輒齧 蟻狗之營惟勢是趨 昨年之重入中書 實出於試可之聖心 而憑托先訓 課年乞退之餘 謂此時可乘 冒沒承當 然則其云先訓 不過是欺世釣名之計 不遵父訓 而能忠於君 臣未之聞也 云云(『일성록(日省錄)』 갑술(甲戌) 11월 29일).

유생(儒生), 대거 대원군의 환성(還城)을 요청하다

정계가 분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태왕 11년 12월, 경상도 유생 이중진(李仲振) 등이 대거 상경하여 대원군에게 글을 올려 그의 환경(還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유생들에게 답장을 통해 말하기를,

지금 또한 경상도 유생들이 추위와 고생을 꺼려하지 않고 마치 큰 의리를 잡은 것처럼 이제 내게 서한을 보냈다. 추노의 고향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의리를 잘못 보며 나라 사람들의 미혹을 부추기는 것이다. 여러 군자들은 한 번 생각해보라. 해가 12월이니 멀리 있는 유생이 머무르며 일을 벌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빨리 이런 행동을 멈추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생업에 안주하는 것이 바로 공사(公私)의 다행이다.⁷⁶⁾

이라고 하였다. 대원군은 유생들의 외침 속에 서서 이를 위유(慰諭)하고 제지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선양(煽揚)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 안에도 유생들과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관료들이 깔려 있어 내분은 극에 달하였다. 민씨 일파는 분규가 심한데도 이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이최웅·김병국(金炳國)은 좌의정, 우의정에 올랐고, 조영하·민규호 등 역시 잇달아 요직을 점하였다.

서석보(徐奭輔) 등의 상소(上疏)

이태왕 12년 2월(1875년 3월), 부호군(副護軍) 서석보 등은 대원군을 위해 진소(陳疏)를 올렸다. 이 역시 즉각 체포되어 원악도(遠惡島)로 유배되었는데, 진소에 대해 잘못 조치하여 승지(承旨) 이순익(李淳翼) 또한 엄책(嚴責)을 면할 수 없었다. 이 당시 대원군은 여전히 산야를 떠돌며 귀경하지 않고 있었다.

대원군, 유생들에게 비의(庇翼)하다

6월 유생 최화식(崔華植)·조충식(趙忠植) 등이 소두(疏頭)가 되어 여러 유생을 이끌고 대원군의 환성(還城)을 강청하였는데, 그 언사(言辭)가 국왕을 강하게 팝박하는 것이어서 국왕은 크게 노하여 이들을 서대문 밖에서 참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원군 일파의 저지와 제(諸) 대신들의 간언이 있어 가까스로 참수를 중지하였다. 최화식은 지도(智島, 전라도)로, 조충식은 임자도(荏子島, 전라도)로 유배되었고 그 밖의 유생들도 대부분 원악도(遠惡島)로 보내졌다(『회여록(會餘錄)』『대동기년(大東紀年)』『일성록』).

76) (……) 今又大嶺縫腋(경상도 유생) 不嫌凍臘 若執大義理樣 而今乃書我 不料鄒魯之鄉(조선에서 는 경상도를 가리킨다)有此義理之誤看 鼓煽國人之惑也 奉試思之 歲律云暮(갑술(甲戌) 12월의 서한(書翰)이다)此非遠儒留連撓屑之時也 惟望僉君子 亟停此舉 而即圖還家 各安其業 是爲公私之幸 云云(『대원군전(大院君傳)』에 따른다).

궁인(宮人) 이씨(李氏), 왕자를 낳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태왕 3년 3월, 민씨가 왕비로 책립된 지 얼마 뒤에 국왕은 궁인 이씨(숙원(淑媛))를 사랑하여 이태왕 5년 윤(閏) 4월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를 완화군(完和君) 선(璫)이라고 불렀다. 당시 대원군은 왕비 민씨의 혜교(慧巧)를 싫어하여 국왕과 왕비의 사이를 잠시 떼어놓으려고 하던 참에 아이가 태어나자,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총애하였다. 그러나 궁인 이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완화군도 곧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의혹의 눈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왕비 민씨, 왕자를 낳다

이태왕 8년 10월(1871년), 왕비 민씨가 비로소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얼마 뒤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태왕 11년 2월(1874년)에 왕자가 탄생하는데, 훗날의 이왕(李王) 척(塲)이다. 이리하여 이태왕 12년 정월, 왕자 나이 2세가 되자 정명의례(定名儀禮)를 거행하였고, 관례에 따라 청나라에 세자(世子) 책립 승인을 요청해야 하였다.

이유원, 입연(入燕)의 사명(使命)

이 당시, 이태왕 12년 정월, 청조(清朝) 동치제(同治帝)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다. 조선은 부용국(附庸國)으로서 조위(弔慰)의 뜻을 전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주청(奏請)과 진향(進香)의 2대 사명을 떠고 청조에 갈 사자(使者)로 이유원이 임명되었다. 대원군 일파 배격의 수령(首領)인 이유원의 북경행(北京行) 이면에는 민씨 일파가 권세를 확고히 하여 청국(清國)에 기대어 제(諸) 외국을 상대하고자 하는 밀의(密議)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청조의 영상(領相) 이홍장(李鴻章)과의 연줄을 통해 이후 조선은 청조의 제어를 받는 발단을 열었다.

이유원 부재 중의 국사(國事)

이유원은 이태왕 12년 8월, 김시연(金始淵)을 부사(副使)로 임명해 청나라로 출발하였다. 그의 부재 중, 좌의정 이최옹, 우의정 김병국이 주로 국사를 담당하였으며, 좌상 이최옹은 이태왕 11월 영상(領相)의 자리에 올랐다. 이유원이 청나라로 떠나고 얼마 뒤 8월 21일(양력 9월 20일), 일본의 군함 운양호(雲揚號)가 강화도(江華島) 부근에서 조선 수병(戍兵)과 충돌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 부산에 체류 중인 이사관(理事官) 모리야마 시게루는 조선 관헌이 일본의 요구에 대해 성의 없게 대처하자 긴카마루(金花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돌아갔다. 당시 9월 28일(음력으로 8월 29일), 기양만(崎陽灣) 부근에서 이미 강화도에서 귀환하는 운양호의 펄럭이는 국기가 보였다.

대원군 세력의 역전(逆轉)

이유원이 청국으로 떠난 뒤, 대원군은 국왕의 요청과 도당(徒黨)의 유인을 이기지 못해 경성으로 돌아왔으며 쇠락하던 그의 세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그의 영향력은 돌연内外 정책에 미쳤다. 먼저 대원군 은퇴로 급전되었던 일선 국교(日鮮國交) 문제도 다시 역전(逆戰)되려고 하였다.

이유원과 국외 상황

이태왕 12년 11월, 이유원은 사명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는 31년 만에 다녀온 북경 이어서, 국외의 새로운 정세를 보고 이홍장 등과의 접촉을 통해 쇄국(鎮國)이 더욱 필요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은 이듬해 이태왕 13년 신춘(新春), 일본과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였고, 대세는 크게 변하였다.『일성록』, 『승정원 일기』, 『대원군전』, 『대조선근사』, 『여홍민씨족보』, 『대동기년(大東紀年)』, 『조선』, 『정한론 실상』, 『대원군실전(大院君實傳)』, 『회여록(會餘錄)』, 『조선사(朝鮮史)』 24,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1).

〈출전 : 『史料』, 국민대 소장 『朝鮮半島史』 6편—최근세편 초고본 중 일부로 추정됨〉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

II. 조선사 편찬사업 관계

1. 조선사편찬위원회

1) 조선사편찬회 조직, 위원장은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기사)

완비한 조선역사를 편찬하고자 함은 총독부 당국에서 이미 일찍부터 현안이던 바, 이제 드디어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朝鮮歷史編纂委員會規程)의 발포를 보게 되어 본년 내, 혹은 내년 속속 사업을 개시함에 이를 터인바, 동 규정은 아래와 같다더라.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歷史編纂委員會)를 설치함.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사료를 수집함.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함.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이를 충당함.

위원은 학식 있는 자에게 조선총독이 이를 촉탁함.

전 항 외의 위원은 조선총독부 내의 관리 중에서 조선총독이 차를 명하거나 또는 촉탁함.

제3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함.

위원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함.

제4조 위원회에 편찬주임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명함.

제5조 위원회의 고문(顧問)을 둘 수 있음.

고문은 조선총독이 이를 촉탁함.

제6조 위원회에 간사(幹事) 약간 명을 두되 조선총독부 부내 고등관 또는 위원 중에게 조선총독이 이를 명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관리함.

제7조 위원회에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조선총독부 부내의 판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명하거나 또는 촉탁함.

서기는 상사(上司)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함.

〈출전 : 朝鮮史編纂會 組織 委員長은 有吉 政務總監, 『毎日申報』, 1922년 12월 6일〉

2) 절대로 공평히 편찬(기사)

절대로 공평히 편찬– 조선과 일본의 사가(史家)를 위원에 임명, 5개년의 예정으로 착수, 중추원 서기관장(中樞院書記官長)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씨 담(談)

조선역사 편찬에 대하여 오다(小田) 중추원 서기관장은 말하기, “완전한 조선역사를 편찬하여 조선의 진전에 공헌하고자 함은 이것이 사이토(齋藤) 총독의 발안으로 1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바, 그 편찬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거듭하며, 또 사무를 관찰할 인재 등에 대하여 숙의(熟議)한 결과에 따라 금회에 편찬규정(編纂規程)의 발포를 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편찬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정치의 의미를 떠나 절대로 공평정확하며 상세면밀한 사책(史冊)을 편찬하여 조선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은 물론이라. 그리하여 경비와 같은 것은 이미 본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 고로 동준비는 이미 개시하였으며, 따라서 이번에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정한 바와 같이 정무총감이 위원장이 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전문학자를 선택하여 위원을 촉탁하게 되며 목하 위원은 인선 중에 있는바 불원간 정식의 임명을 하게 될 터이오, 이 위원의 임명과 함께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찬에 대한 대방침 및 각 위원의 분담을 정하게 될 터이라. 그리고 본 위원은 규정에 정수(定數)가 없으나, 필요한 인수를 임명하게 될 터이오, 위원 중에서 전임 한 명을 선택하여 편찬주임(編纂主任)으로 두며 기타 상근위원(常勤委員) 2, 3인 및 자택에서 근무하는 위원을 두게 될 터이요, 점차 사무의 진행과 함께 위원수도 증가하게 될 터이라. 그리고 본 역사는 수만 항(頁) 이상의 면밀 또 정확한 사책을 편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이 용이치 아니함은 물론이고, 신중한 연구고려(研究考慮)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인데, 이의 완성은 본년으로부터 시작하여 5년 만에 완료하고자 하는 바라.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년부터 다수의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이오, 또 그 필요도 적지만 금후 위원을 증가시킨다 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며, 또 이 위원에 대하여는 전연 정치의 의미를 떠나 학자로 조예가 심오하면, 물론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임명하여 절대 공정한 역사를 편성할 계획이라. 이로 인하여 조선 문화 증진상 이익이 다대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바요. 또 종래에 있는 조선인에게 조선 역사를 잘 알도록 하지 아니한다는 오해도 물론 풀릴 줄로 생각되는 바이며, 실로 조선학계에 대하여 경하하는 바이라.

〈출전 : 絶對로 公平히 編纂, 『毎日申報』, 1922년 12월 6일〉

3) 조선사편찬위원회 상황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에 의해 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고문 및 위원은 조선인과 일본인 가운데 학자를 간선(簡選)하였다. 아울러 편찬주임을 임명하여 동월 제1회 위원회에서 편찬 방법 및 사료 수집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동년 6월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924년 4월에 이르러 제3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채방(採訪) 사료의 전람을 공개하였다. 잇따라 8월에 이르러 제4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찬 사무에 대해 심의하였다.

과거의 실험에 비추어 보아 관제의 공포를 청할 필요가 발생하여, 별지의 관제안(官制案) 및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관제안은 본부 참사관에서 목하 심의 중이며, 예산안은 본부에서 결의하여 대장성에 회부하였다.

위원회 규정 의사록 등은 별지와 같다.

〈출전 : 朝鮮史編纂委員會 狀況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4)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

조선총독부 훈령 제64호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

1922년 12월 4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 사료의 수집을 관장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는다.

위원은 학식이 있는 자로 조선총독이 촉탁한다.

전항 이외의 위원은 조선총독부 부내(部內)의 관리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하거나 또는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4조 위원회에 편찬주임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조선총독이 촉탁한다.

제6조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되, 조선총독부 부내의 고등관 또는 위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7조 위원회에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조선총독부 부내의 판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또는 촉탁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출전 : 朝鮮史編纂委員會規定, 1922년 12월 4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5) 조선사편찬위원회 의사 내규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2. 의안은 개회 3일 전에 배부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3. 위원의 좌석의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4.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의해 결정한다.
5.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을 두어 심사를 맡긴다.
6.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 더하지 않는다.

〈출전 : 朝鮮史編纂委員會議事內規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6)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3년 1월 8~10일)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 순서

1923년 1월 8일

1. 총독 인사
2. 위원장 인사
3. 개의(開議)
4. 산회(散會)

1923년 1월 8일

1. 편찬 형식은 편년사로 한다.
필요에 따라 분류사(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 등)를 편찬한다.
2. 편찬 구분
 - (1) 삼국 이전
 - (2) 삼국 시대
 - (3) 신라 시대
 - (4) 고려 시대
 - (5) 조선 시대 전기(태조부터 선조까지)
 - (6) 조선 시대 중기(광해군부터 영조까지)
 - (7) 조선 시대 후기(정조부터 갑오개혁까지)
3. 편찬 체제
 - (1) 연월일이 분명한 것은 차례대로 강문(綱文)을 게재하고 그 뒤에 사료를 수록한다.
 - (2) 연월일이 분명하더라도 사적(史的) 사항에 따라서는 이를 분류·수록한다.
 - (3) 연월일이 불분명한 것은 관계 사항 다음에 유수하고 강문을 별도로 게재한다.
 - (4) 사료는 정확한 것부터 순서대로 수록한다.
 - (5) 사적 사항에 관한 후세 사람의 기술 또는 사론 등을 비고(備考)로서 수록한다.
 - (6) 사료 및 비고 중에 중요한 호칭 및 사항에 대해서는 난외(欄外)에 두주(頭註)한다.
 - (7) 기록, 문서, 그 밖의 모사(模寫) 및 사진 등을 삽입한다.
4. 편찬 문체
 - (1) 강문은 일본문(日本文)으로 한다.
 - (2) 인용 사료는 모두 원문대로 한다.

(3) 일본문 특유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사료 수집의 범위

- (1) 편찬 시대 이후에 관계된 것이라도 필요에 따라 현대에까지 미친다.
- (2) 조선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일본 및 중국, 그 밖의 것에까지 미친다.
- (3) 문서, 기록, 금석문 등을 주로 하고, 일반 사적에까지 미친다.

6. 출판

- (1) 고본
- (2) 사료 중에 중요한 것
- (3) 주요한 사료나 사적의 해제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제1일(1923년 1월 8일)

오후 1시 30분 본부 제1 회의실에서 개회. 위원장 아리요시 추이치(有吉忠一), 고문 이완용(李完用), 박영효(朴泳孝), 위원 나가노 간(長野幹),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 어윤적(魚允迪), 이능화(李能和), 정만조(鄭萬朝),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가시하라 소조(柏原昌三), 이병소(李秉韶), 윤영구(尹寧求), 현채(玄采), 홍희(洪熹),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김동준(金東準), 서기 가네코 마사케쓰(金子正潔), 가쓰라기 스에지(葛城末治), 김용적(金容迪) 출석. 본 위원회의 조직에 참여한 동경제국대학 교수 문학박사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열석(列席).

사이토 총독 입장.

위원장

이번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여러분께 고문, 위원, 간사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총독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독 인사

이번에 조선사 편찬 사업을 개시하는 데 즈음하여 인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매우 깊고 정치, 문예, 산업 등에서 각각 특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해온 역사서 편수 사업 중에 볼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토(全土)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하고 학술적 견지에서 극히 공평하게 편

찬된 것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많은 자료가 점차 인멸되어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귀중한 자료가 흩어져 없어져 문화의 자취를 잊게 될 상태입니다.

우리 총독부는 지금까지도 힘을 기울여 문화 방면의 시설에 마음을 쓰고 구관(舊慣) 조사를 시작했으며 고적 조사 등 제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역사에 관한 편찬 등에도 힘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또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이 계획을 세워 역사서 편수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 제군을 비롯하여 사정에 정통한 분들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 일본의 역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현대에 적합한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하여 양 방면에서 고문, 위원들을 촉탁한 바입니다. 아무쪼록 일치 협동하여 이 사업이 예정한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이번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자리를 맡아 제1회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편찬하고자 하는 조선사는 총독 각하의 인사 말씀에도 나왔으나 피 조선 전토의 자료를 집대성하고, 각 방면에 걸쳐 매우 공평한 학술적 견지에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므로 본 위원회는 이 태도를 주지(主旨)하여 편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사료 수집 및 편찬 방침 등에 대해 신중히 심의하기 바라며 점차 세세한 항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햇수를 정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총독 각하께서 맨 처음 생각하시기는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대가이신 구로이타, 나이토(内藤) 두 박사님과 상의한 결과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5개년으로는 도저히 완성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본 사업은 10개년을 기하여 반드시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최초 3년을 사료 수집에, 다음 5년을 사료 수집과 편찬 원고를 쓰기 시작하고 마지막 2년을 고본(稿本) 정리에 충당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조선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학술적으로 가장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사료 수집은 첫째 이 사업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내외의 양해와 동정에 의해 비로소 원만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제군은 물론 고문 제군도 이 방면에 먼저 진력해주셔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진척되기를 희망하는 바랍니다.

또한 본회가 조직된 것에 대해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구로이타, 나이토 두 박사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각종 진력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제부터 여러 분께서는 서로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있으므로 소개를 겸하여 출석자의 성명을 부를 테니 기립해 주십시오.

(각 위원은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순서대로 기립하였다)

위원장이 구로이타 박사를 소개하였다.

위원장

이제부터 기회를 보아 때때로 회합을 부탁드릴 텐데, 오늘은 조선사 편찬에 대한 대강을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의사 방법에 대해 일단 협의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내규인데 간단하므로 낭독을 생략하고 편의상 오다(小田) 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사편찬위원회 내규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
2. 의안은 개회 3일 전에 배부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위원의 좌석 순서는 추첨에 따른다.
4.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한다.
5.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을 두어 심사에 부친다.
6.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서면으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다 위원

제1항은 개회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무가 진행됨에 따라 수시로 열 필요가 있으므로 시기를 정해두고 개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개회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의안 배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은 미리 연구를 부탁드려 토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의안을 각 위원 앞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개회 3일 전까지는 배부하겠습니다만, 개회 일정의 사정상 급히 열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 도 있으므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제3항은 위원의 석차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이 관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관등 순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는 각 방면의 여러 분들이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매회 추첨에 의해 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의결에 관한 것입니다. 출석한 위원 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정하고자 합

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특별위원을 지정하여 신중하게 심의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4항과 5항입니다.

다음은 결석한 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의견은 회의장에서 공표하여 각 위원에게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토의할 수 없고, 제출자 자신이 출석한 경우에도 의견을 변경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결 수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는 데에 그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6항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의사 내규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신 듯하므로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의안에 대해 상의하겠습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제1회) 의안

1. 편찬 형식은 편년사로 한다.

필요에 따라 분류사(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 등)를 편찬한다.

2. 편찬 구분

- (1) 삼국 이전
- (2) 삼국 시대
- (3) 신라 시대
- (4) 고려 시대
- (5) 조선 시대 전기(태조부터 선조까지)
- (6) 조선 시대 중기(광해군부터 영조까지)
- (7) 조선 시대 후기(정조부터 갑오개혁까지)

3. 편찬 체제

- (1) 연월일이 분명한 것은 차례대로 강문을 게재하고 그 뒤에 사료를 수록한다.
- (2) 연월일이 분명하더라도 사적 사항에 따라서는 이를 분류 · 수록한다.
- (3) 연월일이 불분명한 것은 관계 사항 다음에 유수하고 강문을 별도로 게재한다.
- (4) 사료는 정확한 것부터 순서대로 수록한다.
- (5) 사적 사항에 관한 후세 사람의 기술 또는 사론 등을 비고로서 수록한다.
- (6) 사료 및 비고 중에 중요한 호칭 및 사항에 대해서는 난외(欄外)에 두주(頭註)한다.
- (7) 기록, 문서, 그 밖의 모사 및 사진 등을 삽입한다.

4. 편찬 문체

- (1) 강문은 일본문으로 한다.
- (2) 인용 사료는 모두 원문대로 한다. 단, 한글 및 외국어로 된 문장에는 번역문을 붙인다.
- (3)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사료 수집의 범위

- (1) 편찬 시대 이후에 관계된 것이라도 필요에 따라 현대에까지 미친다.
- (2) 조선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일본 및 중국, 그 밖의 것을 수집한다.
- (3) 문서, 기록, 금석문 등을 주로 하고, 이미 간행된 사적에까지 미친다.

6. 출판

- (1) 고본(稿本)
 - (2) 사료 중에 중요한 것
 - (3) 주요한 사료·사적 해제
- (김 간사가 의안을 낭독하였다)

어(魚) 위원

의안 첫머리에 있는 조선사라는 것은 이번에 편찬하는 책의 명칭입니까?

위원장

책의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의 역사라는 의미이며 완성된 책을 무엇이라 이름 지을지는 그 때가서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 의안에 대해서는 구로이타 박사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이타 박사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경제국대학에서 20여 년간 대일본사료 및 대일본고문서의 편찬에 종사한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사 편찬 사업은 정부 사업이므로 학술적으로 철저하며 권위 있는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한 분들과 함께 연구하여 본안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1항 편찬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를 수집하는 것은 역사 편찬의 출발점이며 사료를 공개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연월순에 따라 편찬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월에 따를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월

이 분명하지 않다 하여 그 자료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예를 들어 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와 같이 분류하여 편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역사의 주요 부분으로 여겼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문화 방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2항 편찬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지를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국가 사업, 정부 사업인 이상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어제 일어났던 일까지를 수록하고 싶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통상 50년 전후를 종기(終期)로 하고 있는데, 대학의 대일본사료도 미국의 폐리 도래(渡來)까지를 종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찬하는 조선사는 갑오개혁까지로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갑오개혁까지라 하더라도 사료 수집의 범위는 현대에까지 미치게 하고자 합니다. 사료는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인멸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갑오 이후의 재료도 물론 수집하여 후세에 남겨주려 합니다. 따라서 편찬 구분은 상의한 결과 7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를 전중후의 3기로 나눈 것은 재료도 매우 많기도 하거니와 각각 담당하신 분들에게 분담하기 위해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제3항 편찬 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편년사로서 사료에 따라 강문을 만드는 것인데, 편찬자의 의견에 따라 어떻게든 되는 것이므로 강문의 불비(不備)는 사료에 의해 보충하고 사료와 강문을 상응하게 하여 완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연월일이 분명하더라도 따로따로 쓰는 것이 불편하므로 사항에 따라서는 유수(類收)하고자 합니다.
- 3) 연월일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귀중한 사료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관계 사항 다음에 이를 분류·수록하고 강문을 따로 신기로 하였습니다.
- 4) 사료는 정확한 것부터 순서대로 수록하고자 합니다.
- 5) 후세 사람의 의견이나 사론(史論)과 같은 것이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비고로서 수록하고자 합니다.
- 6) 사료 및 비고 중에 어디를 주안으로 할 것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난외(欄外)에 두주(頭註)를 쓰려고 합니다.
- 7) 기록문서 그 밖의 모사 및 사진 등을 붙이는 것은 독자에게 친절한 방법입니다. 특히 문서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하는 것은 세상에 유익하며 또한 훗날의 학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4항 편찬 문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이번의 역사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하는 것이므로 일본문으로 쓰는 것이 온당합니다.
- 2) 사료는 모두 원문대로 수록하는데, 한글과 외국어 문장에는 번역문을 붙여 독자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합니다.
- 3) 경어를 사용하면 번잡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기 쉬우므로 생략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붕(崩), 흥(薨), 졸(卒) 등과 같이 신분에 따른 용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5항 사료 수집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편찬 범위는 갑오개혁까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의 수집은 그 이후 오늘날의 사료까지 미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사료는 주로 조선에 있는 사료를 수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 및 중국, 그 밖의 나라에 있는 것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료도 많이 있으므로 먼저 조선과 일본에 있는 것을 빠짐 없이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의 것을 모으고자 합니다.
- 3) 사료라는 것은 문서, 기록, 금석문 등의 수집은 물론이고 공개된 사적 중에도 사료로서 채취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6항 출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고본(稿本) 출판은 설령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고자 합니다.
- 2) 사료 중에서 정리된 것을 수시로 간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사료의 취급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의 가치에 대해 편찬자의 의견을 밝혀두고 싶은데, 그것은 사료, 사적의 해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편찬가(編纂家)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함께 게재하는 것이 매우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성립에 대해 충심으로 성의를 다하여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의안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정(補正)을 바라며 예정대로 이 사업이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鄭) 위원

이 의안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魚) 위원

며칠 정도이면 괜찮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대학에 계시는 분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연구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중추원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洪, 魚, 李, 鄭 위원이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위원장

편찬의 범위를 갑오까지로 할지 여부는 상당한 연구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추원에서 신중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 산회(散會))

제2일(1923년 1월 9일)

오전 10시 개회. 위원 오다 간지로,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마쓰이 히토시, 가시하라 소조, 이병소, 현채, 홍희,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김동준(金東準), 서기 가네코 마사케쓰, 가쓰라기 스에지, 김용적 출석. 구로이타 박사 열석(列席).

오다 위원장 대리

오늘은 위원장의 사정상 위원장의 지정에 따라 제가 대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의 취지에 따라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鄭) 위원

삼국 이전이라는 것은 단군조선까지 들어간다고 보아도 좋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이것은 구분의 명칭이며, 삼국 이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능화 위원

조선의 상대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이 있으므로 삼국 이전을 고대 조선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발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나바 간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당시의 조선은 현대의 조선과는 지역이 달라서 현대 조선의

입장에서 말하면 한 지방에 국한된 명칭이므로 오히려 삼국 이전이라는 막연한 명칭을 붙여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해는 신라에 대해 서술하는 곳에 발해 및 이와 관련 있는 철리(鐵利) 등의 기사도 수록할 예정입니다.

이(能化) 위원

건국 신화는 민족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록했으면 합니다.

이나바 간사

맞습니다. 단군 기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테지만, 그 부분의 담당을 부탁드린 이마니시(今西) 위원이 부재중이므로 이대로 보류해 두고자 합니다.

가시하라 위원

단군, 기자에 대해서는 건국의 주요 사항이므로 망라하고자 합니다.

어 위원

저는 삼국 이전을 삼국 전시대, 삼국 시대를 삼국 후시대, 신라 시대를 신라 통일 시대로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로이타 박사

전시대, 후시대로는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통일은 고려에서도, 이씨조선에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라에만 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위원장 대리

저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한 시간 정도 나갔다 오겠습니다. 마쓰이 위원께 위원장 대리를 부탁합니다.

마쓰이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오다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마니시 위원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구분 문제이며 명칭과 같은 것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구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이대로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能化) 위원

조선에는 단군과 기자의 두 성인이 있는데, 사가(史家)는 기자에게만 중점을 두고 단군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군도 마찬가지로 취급했으면 합니다.

이나바 간사

구분 명칭은 이마니시 위원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했으면 합니다.

구로이타 박사

잠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단군과 기자의 기사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료에 대해 의안 제6항의 3에 언급한 해제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쓰이 위원장 대리

의안 제3항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이(能화) 위원, 홍 위원이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위원장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 위원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왕의 사망은 봉(崩)이라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로이타 박사

봉(崩), 홍(薨), 졸(卒) 등 신분에 따른 호칭은 종래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가시하라 위원

번잡한 문장을 생략한다는 의미에서 ‘하시다’, ‘계시다’ 등을 쓰지 않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로이타 박사

그러면 제4항의 3을 “일본문 특유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고치겠습니다.

어 위원

강문을 일본문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문을 읽지 못하는 조선인을 위해 한글 또는 한문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출판비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으로서 강문을 출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나바 간사

어 위원의 질문은 지당하지만 책의 권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번역문을 붙이지 않

기로 하고, 단서(但書) 이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能화) 위원

저는 그 점에 찬성합니다. 그러는 편이 학술적입니다.

정 위원

찬성합니다. 경어를 생략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나바 간사

조선문(朝鮮文)에는 관계없으며 일본에 특유한 경어만을 생략하려는 취지입니다.

구로이타 박사

일본문 특유의 경어를 의미합니다.

어 위원

제5항의 3에 “기간(既刊)”의 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간(未刊)은 어떻게 됩니까?

구로이타 박사

일반 사적에 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나바 간사

기간을 일반(一般)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각 위원이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마쓰이 위원장 대리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散會)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부터 본부에서 개회하오니 출석해 주십시오.

(오후 1시 50분 산회)

제3일(1월 10일)

오전 10시 본부 제1 회의실에서 개회. 위원장 아리요시, 고문 박영효, 위원 나가노 간, 오다 간지로,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마쓰이 히토시, 가시하라 소조, 이병소, 현채, 홍희,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김동준, 서기 가네코 마사케쓰, 가쓰라기 스에지, 김용적(金容迪) 출석. 구로이타 박사 열석.

위원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나바 간사가 전날 중추원에서 한 심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위원장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2항의 1, 2, 3은 이마니시 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유보해도 괜찮겠습니까?

어 위원

그 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군과 기자는 어떻게 취급할 예정이십니까? 삼국 이전에 수록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단군과 기자의 기사는 빠짐없이 기재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제3항과 관계가 있어서 편년사의 방침에 의해 자연히 결정될 것입니다. 건국 사료 중 연대가 불분명한 것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는 향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능화) 위원

이번에 공평하고도 완전한 조선사가 편찬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크게 만족하는 바랍니다. 우리 조선에도 예로부터 역사책이 만들어져서 신라, 고구려, 백제에도 이미 편사한 적 있었습니다. 즉 신라는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하였으며, 고구려에는 이문진(李文眞), 백제에는 고흥(高興) 등의 사가(史家)도 있었습니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고 충렬왕 때에는 승려 일연(一然)이 삼국유사라는 야사를 편찬하였으며, 이씨조선에 이르러서는 동국사략(東國史略), 동사찬요(東史纂要), 동사강목(東史綱目),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의 책이 완성되었는데, 삼국유사 외에는 모두 관찬(官撰) 서적입니다. 그리고 단군의 기사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능화) 위원에게 주의를 주겠는데, 단군에 대해서는 다른 날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분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편찬 체제가 정해지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결정됩니다.

오다 위원

이마니시 위원의 부재 때문에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사무 진행상에 지장을 일으키므로 이번에 일단 원안대로 결정해두었으면 합니다.

어 위원

어제는 구분의 명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는데 오늘의 설명으로 풀렸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능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러분들께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제3항은 원안대로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제4항의 2는 단서를 삭제하고, 3은 “일본문 특유의 경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5항의 2는 “를 수집한다”를 “에 미친다”로 고치고, “기간”을 “일반”으로 하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리면 그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6항은 원안대로 하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로써 대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위원과 간사들은 잘 상의하여 먼저 사료 수집에 착수할 것을 부탁드리고 온힘을 다해 진력하여 예정대로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로써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산회)

1923년 1월 10일

조선사편찬위원회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인

조선사편찬위원회 간사 김동준 인

〈출전 : 第1會 朝鮮史編纂委員會 會議錄(1923년 1월 8~10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7)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3년 6월 12일)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 순서

1923년 12년 6월 12일

1. 위원장 회무 보고
2. 편찬주임 설명
3. 의사(議事)
4. 산회(散會)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협의안

조선 내 지방의 민간에 소장된 사료 수집에 관한 건

1. 조선사 편찬의 취지를 관민 일반에게 주지시켜 사료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방법은 어떠한지.
2. 민간이 소장한 사료의 차입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은 어떠한지.

보고의 건

조선총독부 및 지방 관청에 소관(所管) 중인 사료 보존에 관한 위원회의 요구 건

5월 19일 총독부에서 개최한 도지사 회의에서 지방 관청에서 보존하는 사료를 존중 보존하기를 의뢰한다(별지 협의안 본문 참조). 또한 총독부 및 지방 관청에 보존하는 구

기(舊記) 문서는 목록을 제작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중추원에서 의뢰서를 발송한다.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1923년 6월 12일 오후 2시 5분 중추원에서 개회. 위원 나가노 간, 오다 쇼고(小田省吾), 유맹(劉猛), 어윤적(魚允迪), 후카가와 덴지로(深川傳次郎), 이능화, 정만조(鄭萬朝), 가시하라 소조(柏原昌三), 윤영구(尹寧求), 이병소(李秉韶), 현채(玄采), 홍희(洪憲),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稻場岩吉), 김동준, 서기 가네코 마사케쓰(金子正潔), 가쓰라기 스에지(葛城末治), 김용적 등 출석.

개회에 앞서 위원회 의사 내규에 의거하여 추첨을 하였다. 위원의 좌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번 나가노 간
- 2번 오다 쇼고
- 3번 이나바 이와키치
- 4번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 5번 홍희
- 6번 윤영구
- 7번 후카가와 덴지로
- 8번 가시하라 소조
- 9번 유맹
- 10번 이마니시 류
- 11번 마쓰이 히토시
- 12번 이능화
- 13번 이병소
- 14번 현채
- 15번 정만조
- 16번 어윤적

아리요시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나가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였다.

위원장

지금부터 제2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들께 변동이 있었으므로 보

고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학무국 편집과장 오다 쇼고 군과 이왕직(李王職) 차관 시노다 지사쿠 군, 6월 11일자로 중추원 서기관 후카가와 텐지로 군이 새로 위원에 임명 되었고, 위원이었던 이상영(李商永)군이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또 전 서기관 장 오다 간지로 군이 퇴관(退官)한 결과 자연히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찬 사업이 점차 진척되어 감에 따라 고기록, 고문서 등이 필요하게 된 형편입니다만, 현재 각 도의 관공서에 보존되어 있는 이 사료들은 일정한 햇수가 지나면 폐기 또는 매각 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지난 5월 19일 본부에서 개최한 도지사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지방 관청에 보관된 사료의 보존을 강구하고 나아가서는 민간에 산재한 사료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의 방도를 강구하여 편찬 사업을 원조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중추원 서기관장께서 지방 관청에서 보존하는 구기 문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의뢰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편찬에 대해서는 편찬주임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바 편찬주임

사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찬 사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 고본(稿本)의 편찬

가시하라 위원은 태조실록 및 관계 사료의 정리와 고본의 편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나바 위원은 광해군일기 및 관계 사료의 정리와 고본의 편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쓰이 위원은 고려 시대의 고본 제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카드 작성

고본의 편찬에 따라 인명, 지명, 관직명, 그 밖에 역사 용어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제서(諸書) 요목의 편찬

규장각 소장 고도서(古圖書) 중 문집 요목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4) 화압휘찬(花押彙纂)의 편찬

구입 및 차입한 고문서에 대해 화압휘찬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료 수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료 채방(採訪)의 출장

이나바 위원은 동경, 경도(京都)에 출장하여 사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시하라 위원은 경상남도에 출장하여 사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사료 수집 및 부본(副本)의 작성

이(能化) 위원은 태조실록, 정종실록, 세종실록에 대해 불교 이외의 종교에 관한 사료의 수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은 광해군 시대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부분 작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 영사(影寫) 및 등사(謄寫)

서기는 차입한 고문서를 영사하고 또, 봉천(奉天)승모각로당(崇模閣老檔)내각기록과(內閣記錄課) 소장 도서,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사료편찬담당자 소장 도서에 대해 조선 사료를 등사하고 있습니다.

(4) 차입 및 구입

권계(券契), 문기(文記) 등의 고문서 및 일기류, 사적을 채방하여 차입하거나 또는 구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보고에 이어서 의사(議事)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협의하고자 하는 것은 편찬의 취지를 관민 일반에게 주지시켜 사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겠지요?

3번(이나바 편찬 주임)

조선사편찬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편찬이며, 다른 하나는 사료 수집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지탱하고 도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주된 것은 사료 수집의 방법을 완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은 본 위원이 편찬주임의 명을 받은 당초부터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요건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 회의에서 사료 보존에 대해 여러 가지 간담(懇談)을 부탁하였고, 서기관장도 의뢰서를 보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겠지요. 오늘의 협의안 제1항은 도지사 회의의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 회의에서 한 협의는 지방의 각 관공서에 있는 사료를 보존하는 의미이고, 오늘의 주제는 오로지 중앙 및 지방의 민간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의 수집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얇은 경험으로 보면, 조선의 사료는 중앙, 지방에 있는 명족(名族) 구가(舊家)에 보존된 것이 매우 많고 간행되지 않은 사서도 역시 다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것은 조선 민족이 지지하는 확고한 가족 제도에 의해 보존되는 것으로, 인접한 여러 민족 중에서 중국 민족을 제외하면 따라오기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꼭 이러한 민간의 사료를 채방하여 빌려보고 싶습니다. 협의안 제1항

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입안한 것입니다.

원래 민간에서 사료를 수집하는 것은 관아의 사료를 빌려보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꽤나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내용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위원회 스스로가 중앙, 지방 인민의 신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간의 동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료에 관한 지식이 저급한 것

사료라고 하면 편찬 간행된 것만을 생각하여 일반 사료에 대한 지식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이 지방에 출장 갔을 때 사료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료란 무엇인가라는 관념을 보급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역사서 편찬 사업의 인습적 습관

잘 알다시피 이조(李朝)가 되고 나서는 국내의 당쟁이 심해서 역사서 편찬 사업도 그 와중에 휩쓸리게 되어 정쟁의 일부로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자기 당파 이외의 사람에게는 기록이나 일기를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인습적 관념에 지배되어,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료를 수집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료를 채방하는 데에 필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관에게도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방에서 강습회 등을 개최할 때는 위원이 참석하여 그 목적을 설명하고 또 실제로 편찬의 실례에 따라 총독부에서 상여(賞與)나 상장을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조선과 일본 양 방면의 공동 사업으로서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쪽 위원이 서로 오해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이 있는 점은 격의 없이 토로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나바 위원께서 사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유익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도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5번(총 위원)

사료 편찬의 방침에 대해서는이나바 위원과 같은 의견이므로 달리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선과 일본의 각 위원이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기를 역사 편찬의 취지가 무엇인지, 또 일본인이 중심인물이 되어 있어서 편찬이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가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편찬의 취지를 일반에게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덕행이 있는 사람과 특종(特種)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부탁하고 지방의 장관을 통해 자세히 아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역사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에 넣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음을 일반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및 구기(舊記) 가운데 일본과 관계가 있는 것은 태워 없애거나, 조상의 저술이나 유고(遺稿), 혹은 국사와 관련이 있는 기록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관헌에게 대여하게 되거나 압수라도 당할까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사의 취지에는 정책을 포함시키지 않는 진정한 학술적 편찬이며 공평무사함을 일반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의 편사 사업은 순수한 학술적 견지에 서서 공평무사한 태도로 일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므로 한편으로 치우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아리요시 위원장도 특히 이 점에 유의하고 계십니다. 만일 민간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위원들께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어 위원)

우선 조선사 편찬의 취지를 관민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제 생각으로는, 취지서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제1회 위원회의 부의(附議) 사항을 인쇄에 부쳐 각 도부군면(道府郡面)에 배부하여 일반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도의 부윤(府尹), 군수 회의가 열릴 때 위원을 파견하며, 때로는 큰 군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철저하게 그 취지를 설명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2번(이 위원)

10년 이래 조선인의 역사열(歷史熱)이 왕성해졌는데, 역사를 저술하여 출판법에 따라 허가를 출원했을 때 그 속에 분로쿠 노에키(文祿役)¹⁾나 왜(倭) 등의 기사가 있으면 출판을 허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마저도 압수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조선인이 조선사 편찬의 취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조선인의 역사적 지

1) 임진왜란을 말함.

식이 종래의 관습에 의해 정치 기사만이 역사라 생각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역사 편찬의 취지를 밝혀, 순수하게 학술적 견지에서 조선의 문화를 발휘하는 데에 있음을 역설하고, 꺼려 피하는 서적이라도 상관이 없음을 장서가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은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이 각 지방에 출장 가서 상대의 조상도 이 역사에 실리게 됨을 알린다면 기꺼이 사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위원장

이번의 역사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편파적인 의견으로 편찬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충분히 주의하여 일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번(이 위원)

역사를 이해하는 지식 계급은 의심이 없는데, 역사 관념이 부족한 자들은 혹 의심을 품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사실을 사실이라 하는 데에 역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9번(유 위원)

저는 이 제1항에 대해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이태왕(李太王) 시대에 명을 받들고 러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정부의 공문과 왕의 친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밖에 당시의 고관이 쓴 편지를 지참하고 가서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지방에 출장 갈 경우에 고문이든 명사(名士)든 그들이 써준 편지를 지참하고 가서 강연회 등을 개최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달리 의견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2번(오다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의 규칙 및 관계자 등을 인쇄에 부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 면장, 학교장 등에게 배부하면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료 채집은 위원이 직접 출장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도 제가 출장 가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사료가 흩어져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고기록,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서원, 사찰, 지방의 명문인데, 서원이나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관헌이 가지고 가 버린 사례도 있어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차입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사료는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환한다는 점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서원이나 사찰이 소장한 고기록, 고문서는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편찬하는 데에 있어 민간에게 오해가 없도록 취지를 선전하여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지사 회의석상에서 그 취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선전지를 배부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선전적으로 흘러도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입한 사료를 분실하거나 반환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료의 소유자가 안심하고 빌려 줄 수 있도록 유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로써 제1의 협의 사항은 일단 끝내고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시하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8번(가시하라 위원)

민간에서 차입한 사료에 대해서는 절대 파손이나 분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음을 일반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사료편찬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참작하여 차입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위원의 지방 출장 때에는 복명서에 채방 사료 목록을 첨부할 것. 채방 사료 목록에는 소유자, 사료의 종류, 점수(點數) 및 적요를 세밀하게 게시할 것.
- (2) 소유자에게 차입할 때에는 차입목록을 보내고, 소유자에게서는 발송목록을 받아 이를 대조하여 차용증서를 발송할 것.
- (3) 위원이 직접 소유자에게 차입하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데, 꼭 가지고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차용증서를 주었다가 귀임(歸任) 후 다시 본 차용증서와 교환할 것.
- (4) 차입 시간이 길면 소유자로 하여금 불쾌한 생각을 품게 하기 때문에, 1개월을 한도록 하고, 조사 상 지연할 경우는 차입 연기의 수속을 취할 것.
- (5) 차입 및 조회에 필요한 우편 비용, 포장비, 기차나 기선의 운임은 위원회에서 부담할 것.

(6) 차입의 취급은 조심스럽게 하고, 방화(防火)나 방수(防水)에 염려 없음을 주지시킬 것.

(7) 반환 때에는 반송목록을 보내어 차용증서와 교환할 것.

이상 말씀드린 수속은 민간에서 소장한 사료의 차입 방법이며, 서원이나 사찰 등의 사료는 목록을 위원회에서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그 목록에 의해 필요한 것을 도부군청에 의뢰하여 도부군청에 모으게 하고 위원은 거기에 대해 열람한다면 조사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번(이나바 편찬 주임)

지금 차입 건에 대해서 가시하라 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차입 규정은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어서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번(오다 위원)

차입 규정이 기초 중에 있음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편찬 취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입 규정도 동시에 알린다면 민간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현이 필요 상 빌려본 사료(고기록, 고문서) 중에 특별히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임 혹은 사망으로 인해 소재 불명이 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貸借)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희망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대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라도 그 자손이 직업을 바꾸어 불필요하게 된 사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그것을 매입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차입과는 관련이 없지만 아울러 한 말씀드립니다.

12번(이 위원)

지금 차입에 대해 가시하라 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안변군(安邊郡) 석왕사(釋王寺)에 조선 세조 시대에 간행한 언역원각경(譚譯圓覺經) 8책이 있어서 그 서문을 출처 불교통사(佛教通史)에 실었는데 다시 원본을 볼 필요가 생겨 주지에게 빌려줄 것을 청하였더니, 그 승려의 개인 소유이어서 끝내 빌려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록을 작성하더라도 개인 소유는 누락되므로, 승려의 사유 목록도 아울러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첨서(添書)를 가지고 가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홍 위원)

조선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는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든 위원장이든 상당히 신용이 있는 사람이 차입한다면 차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번(어 위원)

민간에서 소장한 사료의 차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몇 년 전에 경성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유사한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책을 빌리려고 의뢰하였지만 마침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그 사람과 친하게 되어 겨우 1 책씩 빌릴 수 있었습니다. 경성에 사는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곤란하겠습니까? 총독이나 위원장의 힘으로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면장이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원본이 손에 들어오면 비싼 값이라도 매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보(系譜)는 성씨의 소출(所出)을 분명히 하고 본관을 밝혀 본말적서(本末嫡庶)의 관계를 나눈 것으로, 각 종가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꽤 참고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다.

-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 단군 시대의 기사
-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
- 청주한씨세보(淸州韓氏世譜)
- 선우씨세보(鮮于氏世譜)
- 금해금씨세보(金海金氏世譜) 가락(駕洛) 역대 기사
- 태원태씨세보(太原太氏世譜) 발해 역대 기사

이상 여섯 가보(家譜)는 각 집안에서 존중하는 것인데 사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신라의 박석금(朴昔金)의 세 가보와 고려 왕씨의 가보가 있는데 신라·고구려 양 대에는 정사, 편년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각 사람의 조상 중에 종교, 정치, 경제, 문예, 당쟁, 내외 전란 등에 관계된 사람으로, 국가의 사서에는 없으나 저서, 행장, 비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손에게 의뢰하여 사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그 자손들에게 등사를 의뢰한다면 인물고(人物考)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사료 차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차입에 관한 규칙은 현재 기초 중이므로 생각나신 점은 언제든지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때때로 모임을 부탁드려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써 폐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시 35분 산회)

1923년 6월 12일

조선사편찬위원회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인)

동 김동준(인)

〈출전 : 第2會 朝鮮史編纂委員會 會議錄(1923년 6월 12일), 『朝鮮史編修會 事務報告書』, 1925년〉

8) 제3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4년 4월 2일)

제3회 조선사편찬위원회 순서

1. 위원장 개회 인사
 2. 간사의 위원 이동 보고
 3. 편찬주임의 1923년도 편찬 사무 및 사료 채방에 관련한 보고
 4. 위원장의 구로이타(黑板) 박사 소개
 5. 채방 사료 전람(展覽)
 6. 산회
- 이상

제3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1924년 4월 2일

오후 1시 40분 중추원에서 개회. 아리요시 위원장, 이(李) · 권(權) 두 고문, 오다 · 유(劉) · 어(魚) · 후카가와 · 이(能化) · 시노다 · 윤(尹) · 이(병소) · 현(玄) · 홍(洪) 각 위원, 이나바 · 김(金)간사 · 가네코 · 가쓰라기 · 김(金)서기 등 열석.

위원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이 매우 많았던 해였습니다만 편찬 사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고문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원조해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년도에는 한층 더 원조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창립 시에 총독부는 본 사업의 완성 기한을 10년 내라고 정했고,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완성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計上)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진 피해로 인해 재정을 긴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최근 내지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 결과 지금은 전년도 예산을 담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보아 최초 계획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계상할 작정입니다.

연한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최초의 10년 계획, 즉 1922년부터 1931년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등의 관계로 다소 연장하지 않으면 실제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전체 계획 연한에 2개년을 연장한다는 것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2개년의 연장 기간에 반드시 완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종류의 사업은 느긋해지기 쉬우므로 그간의 사정을 명심하고 직접 편찬을 맡은 위원들은 오로지 전심하여 사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의 이동도 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편찬의 진행은 주임의 보고를 청취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이즈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료 채방에 관해 일본, 조선 내 각 지방의 관민 제군으로부터 받은 동정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중한 가보라 할만한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차입 중인 것은 현재 아래층의 전람회장에서 진열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천천히 관람하기로 합시다.

이로써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사가 위원의 이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간사

마쓰이(松井) 위원은 작년 8월에 사직하였고, 가시하라(柏原) 위원은 지난 달 28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작년 6월 위원회 이후의 이동은 이상과 같습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편찬주임께서 1923년 중의 편찬 사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바 위원

종래의 경험에 비춰보면, 도서를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료에는 미지의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도지사 회의 때에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사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료 목록을 작성하여 송부처를 부탁드렸더니 11월 말까지 각 지방 관청에서 점차 보고가 올라오고 다행히 유익한 사료도 있어서 크게 감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는 공사 도서관에서 각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경제국대학 도서관, 내각문고, 동서 양 제국대학 도서관, 와세다(早稻田), 게이오(慶應) 양 대학 도서관, 데라우치(寺內)문고, 닛코보물관(日光寶物館), 그리고 이 쪽에서는 이왕가(李王家) 도서관 등입니다.

이들 도서관에서 보내온 수증(受贈) 목록을 기초로 하여 카드에 일일이 기입하였는데, 이미 기입이 끝난 것이 28,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카드는 정리한 것, 아직 정리 안 된 것 모두 아래층에 있으므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료 목록 제작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방은 일본과 조선 내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경상북도를 주로 하여 가시하라, 홍두 위원께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시다시피 명문가, 구가가 많은 곳이어서 귀중한 사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동의 유성룡(柳成龍)의 문서가 귀중합니다.

다음으로는 평안남도 용강(龍岡) 김씨의 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김씨는 김경서(金景瑞)의 후손인데, 이것은 시노다 위원의 교시에 의해 작년 겨울에 채방하여 유력한 사료를 얻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진으로 찍어 아래층에 진열해 두었습니다.

내지에서 채방한 것은 쓰시마(對馬)의 종백작가(宗伯爵家)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기에 열석하신 구로이타 박사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동료인 가시하라 위원이 채방을 맡았습니다. 백작가의 장고(藏庫)에는 아직도 일선(日鮮) 관계의 귀중한 사료가 풍부하게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 일부의 차입을 신청하였더니 쾌히 승낙해 주어서 다행히 오늘 진열할 수 있었습니다.

채방하려 갔던 동료 가시하라 군이 이미 고인이 되어 오늘 회의를 볼 수 없게 되었음은 정말 애석합니다.

동경의 재해로 인해 우리 조선 사료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의 소실로 귀중한 조선 사료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궁내성 도서료(圖書寮), 내각문고 등이 재액을 면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겠지요. 채방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편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 조사는 부본의 제작인데 일의 진척이 몹시 늦기는 하나 다소의 성과를 거두어 아래총에 진열하였으므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구로이타 박사

저는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창립에 다소 관계가 있어서 제3회 위원회에 열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원래 역사 편찬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심이 많은 일이라서 저는 사료편찬계에 25, 6년 동안이나 관계한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상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연한 내에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지를 이해합니다. 실은 제가 본 위원회의 창립 때 연한을 정한 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자칫하면 시일이 연장되기 쉬운 일이어서, 편찬 임무를 담당하신 분들의 일치 협동과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층 원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바라는 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종류의 사업은 기초를 충분히 확립하고 차례차례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1923년 1월 이후 오늘까지 채택한 처치는 가장 도리에 맞는 방침이며, 창립자인 한 사람으로서 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 1년의 성과가 좋더라도 나중에 지장이 가로막고 있기 쉬우니 상당한 노력과 각오를 요합니다. 또 사료의 채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라는 것이 일반에게 잘 선전되어 신용을 두텁게 하는 일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 충분히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열석하게 된 영광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중에서 편찬 및 사료 수집에 대해 생각나신 점이나 향후의 일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유 위원

작년에 동경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결과 경비에도 영향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평소 생각으로는 단순히 실록과 같은 것을 편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은 물론 내외에서까지도 사료를 수집하여 사무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경비를 증가해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 위원의 희망은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경비로 완성할 심산이었는데, 구로이타 박사의 의견과 위원들로부터 나온 희망도 있어서 총액 600,000원으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연 20,000원이었던 것을 1924년도부터 60,000원으로 하고 10개년으로 완성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재해의 결과 총독부로서도 예산의 긴축 방침을 취하였지만, 조선사 편찬 사업은 금세 할 수 없으므로 1924년도부터 다시 20,000원을 증가하여 합계 40,000원을 추가 예산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원

사료의 수집이 내지와 해외에까지 미치게 된 점은 정말 좋습니다만, 사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의 현상을 내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사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위원장께서 감사장을 주거나 혹은 조선 내의 일문, 한글 각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게 한다면 기꺼이 제공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위원회의 취지를 주지, 선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어 위원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사료를 제공한 분들께는 서기관장이 예상을 보내고 있는데,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편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관청으로서는 그 후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선전도 필요하므로 내일은 일반인에게 사료를 관람하게 하기 위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람회나 공진회 등 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정하여 독지가를 초대하였습니다. 아주 적당한 처치라 생각합니다.

시노다 위원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의 문화 사업으로서 가장 시의 적절한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지방관으로서 재임하고 있을 때 사료 보존에 대해 상당히 유의하였습니다.

좌우간 유익한 사업이라 해도 첫째로는 경비가 문제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평안남도에 있었을 당시 사료의 산일(散逸)을 염려하여 각 군에 통첩을 발송하

였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답사해 보면 의외의 사료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방면에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 중에서 지방별 또는 연대별로 분담하고 일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 편찬을 보조한다면, 적지 않은 경비를 메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의 분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요하므로 생각해 봅시다.

이나바 위원

사료의 채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료의 소재를 지시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김경서의 문서 등은 지난번에 시노다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사료 채방이 매우 편리했으며 또한 귀중한 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향후에도 여러분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전시관람 사료의 개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사료전시관람목록과 같다)

위원장

이로써 폐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독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이니 곧바로 가십시오. (오후 3시)

총독은 오후 3시 10분 임석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의 경과를 보고 받았다. 잠깐 쉰 다음 총독, 위원장, 각 위원들이 사료를 관람하였다(오후 4시 10분 퇴산).

1924년 4월 10일
조선사편찬위원회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인)
동 김동준(인)

〈출전 : 第3會 朝鮮史編纂委員會 會議錄(1924년 4월 2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9)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4년 8월 5일)

제4회 조선사 편찬위원회 순서

1. 위원장 개회 인사
 2. 간사의 사무보고
 3. 채방사료 전람
 4. 산회
- 이상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1924년 8월 5일

오전 10시 20분 중추원에서 개회. 시모오카(下岡) 위원장, 이, 권두양 고문, 나가노, 오다, 유, 어, 후카가와, 정, 이(能化), 윤, 이(병소), 홍 각 위원, 이나바, 김 두 간사, 가네코, 가쓰라기, 김서기 등 출석. 동경제국 대학 교유 구로이타 문학박사 열석. 사이토 총독 출석

위원장

지금부터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예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매우 깊고 예부터 정치, 문학, 경제, 미술 등 각 방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헌 기록이 매우 풍부한데, 그러면서도 이 자료들을 망라한 훌륭한 역사가 편찬된 것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총독부에서는 1922년도부터 이미 이 사업에 착수하여 차차 사무를 진척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못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사업은 적절한 조직 아래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모처럼의 기획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이를 완성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나날이 인멸해가는 민간 사료의 채방과 같이 역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 재료의 수집은 매우 곤란한 일이어서 구로이타 박사를 비롯하여 각 위원께서도 그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 사업의 진행에 힘껏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혹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출석해 주시고, 또한 총독 각하께서 출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무의 경과에 대해서는 간사가 보고하겠습니다.

김 간사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올해 4월 제3회 위원회 이후에 있었던 사무의 일단을 보고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원장의 경질이 있었지만 위원에는 별다른 이동은 없습니다.

본년도 예산은 원래 조선사 편찬비 10개년 계속비(繼續費)로서 당초 85,576엔을 요구했는데, 총독부에서는 재정 긴축의 방침 실행으로 인해 요구액을 반감하고 사업 연한은 2개년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22,580엔 외에 20,000엔을 추가 예산으로서 요구했고, 이것이 통과된 결과 이 달부터 8개월분에 해당하는 13,351엔을 받게 되어서 본년도는 결국 35,931엔이라는 실행 예산액을 얻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사료 채방과 같은 예정 계획을 실행하기는 곤란하지만, 극력 경비의 절약을 꾀하여 고원(雇員)과 서기를 증원하여 사료의 등사를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사료 수집도 전년도 이상으로 채방하기 위해 착착 진행 중입니다.

편찬 사무의 보고는 이나바 간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의 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나바 편찬 주임

편찬 사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편찬은 전년도의 계속으로 현재 사료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만, 또 일본에서는 동경, 교토 두 대학을 비롯하여 각 학교 도서관 및 중국 방면에서도 역시 점차 목록의 기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작성은 본년도 안으로 완성시킬 방침으로 현재 극력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 수집인 도서의 구입, 고기록의 등사 및 부분의 작성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당분간 경비를 수반하는 문제이어서, 도서는 미리 필요한 것을 정해서 구입하며 차입한 고기록은 등사를 하고 특히 귀중한 문서는 부분의 작성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지만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은 부분 작성은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밖에 작년 이후 지방에서 차입한 고문서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등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채방은 작년 경상북도 안동 방면에 출장하여 중요한 사료를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전회의 위원회에서 진열하여 둘러보았으므로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급히 조사할 필요가 생겨서 흥 위원께서 안동, 의성 방면으로 출장하였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아래층에 진열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사료를 차입해왔습니다. 작년의 하회 및 이번의 안동·의성 방면의 사료 수집에 대해 경험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위원회의 취지가 보급되었다는 것인데, 일본과 조선 공동의 사업이며, 따라서 일본사람이 제 마음대로 기술하여 일당일파(一黨一派)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로쿠 노에키(文祿役) 관계 문서도, 위원회가 취지를 철저하게 한 아래, 기우였음이 밝혀져 자발적으로 사료를 제공하여 사무 진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민간의 사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석류 또는 땅속에서 발견된 묘지(墓誌)와 같은 것에 국한되어서 경주나 평양에서 나오는 고대의 것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이외에 명문 구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래층에 진열하고 있는 사료는 겨우 1주일 이내에 채방한 것으로,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뒤집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료가 흩어져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날로 변해 가기 때문에 어제의 명문 구가도 오늘은 영락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조선은 이런 현상이 심한 듯하므로 사료는 채방이 하루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지사 회의 때에도 특별히 유의해주기를 희망해 두었습니다.

지금 아래층에 진열된 김성일(金誠一) 문서와 같은 것도 꽤 없어져 당시 백 수십 책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겨우 열 몇 책만 남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각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목록을 기증받았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뭔가 의견이 없으십니까?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9번(유 위원)

한 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위원장의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대로이므

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조선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역사 편찬 사업은 종래 정부에서 대단히 힘을 기울여서, 대규모의 관계를 시행하고 또 그 사무를 맡은 사관 등에게는 특별히 관위를 높이는 등 갖가지 우대의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관계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권위도 없어서 사무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재정 긴축으로 인해 일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속히 관계를 발포하여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제 낮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지금 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총독 각하께서도 고려하고 계시지만, 원래 중앙 정부의 행정, 재정을 정리한 결과 조선에서도 경비는 가능한 한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유 위원과 동감이나 지금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 각하와도 상의한 다음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6번(어 위원)

저는 사료 수집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료 수집은 매우 곤란한 일인데, 오늘까지의 경과는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명문 구가가 수백 년 동안 비장하여 볼 수도 없었던 귀중한 도서, 기록 등을 대여해 준 덕택입니다. 이와 같은 사료를 제공해준 사람들에게는 감사장이나 상장 등도 좋지만 특별히 총독 각하의 자필로 쓴 것이라도 보낸다면 본인도 만족할 것이고, 또한 사료 수집도 용이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료를 제공한 사람의 성명 및 사료의 목록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는 것도 일종의 장려 방법이며 위원회의 취지를 주지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번(나가노 위원)

아까 이나바 편찬주임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점차 유익한 사료를 기꺼이 제공해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 위원의 의견은 사료 수집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총독 자필의 액자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중추원 서기관장의 이름으로 예상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제가 총독 각하께 부탁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취지를 일반에게 주시킬 기회를 줄 필요가 있

는데, 지금까지 수집한 사료를 일반의 관람에 내놓은 적도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편의상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로이타 박사

저는 최초 이 사업에 관여했으므로 이번에도 이 자리에 열석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아까 위원장의 인사말에도 나왔듯이, 본 사업은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이 더욱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진행을 보게 된 점은 정말 유쾌하며, 국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실은 이 역사 편찬 사업이, 예를 들어 내지에서의 동경제국대학의 사료편찬 및 문부성의 유신사료편찬 등에 비추어 보아도 많은 비용을 요하며 많은 인원을 쓰면서도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생각하면, 이 사업도 위원 제군의 상당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10개년 내에 완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노력과 각오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료 수집과 같은 일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곤란하며, 아까 이나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문 구가의 영락이 더욱 더 심하여 사료 채방도 예상을 뒤엎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는 사료의 수집에 대부분의 경비를 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조선에도 머지않아 대학이 설립되므로 대학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을 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는 학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학생을 지도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편찬 사업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 사무의 진행상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경대학에서도 대학 교수와 사료 편찬관의 직무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아까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가 발포되어 사무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면 사업의 수행이 용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연구의 “인스티튜트”, 즉 장소이므로 진행상 지식을 빌릴 일도 있겠지만 사무 상으로는 확연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일본과 조선 양 방면에서 위원이 조직된 주의 상으로 보아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려 인사로 대신하고, 아울러 빨리 사업이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오늘은 이것으로써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층에서 사료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30분 폐회)

1924년 8월 일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동 김동준

〈출전 : 第4會 朝鮮史編纂委員會 會議錄, 1924년 8월 5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10) 제5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1924년 12월 23일)

제5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

1924년 12월 23일

오후 1시 50분 중추원에서 개회. 시모오카 위원장, 박 고문, 오쓰카(大塚) · 이진호(李軫鎬) · 시노다 · 오다 · 유 · 어 · 정 · 이능화 · 윤 · 이병소 · 홍 각 위원, 이나바 · 김 간사, 가네코 · 가쓰라기 · 김 서기 등 출석.

사이토 총독 출석

위원장

지금부터 제5회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반 여러분의 심의에 부칠 것이 없습니다. 사무 및 그 밖의 보고가 있으므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간사

올해 8월 제4회 위원회 이후에 있었던 사무의 일단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직원의 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나가노 학무국장 겸 서기관장은 이 달 1일자로 아키타(秋田縣) 지사로 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카가와 중추원 서기관은 이 달 8일자로 퇴관(退官)한 결과 위원도 자연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

로 오쓰카(大塚) 서기관장, 야마자키(山崎) 서기관이 모두 이 달 12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즉 현재 직원은 여러분의 앞에 드린 명부와 같습니다.

둘째로 본 회에 귀중한 사료를 다수 제공해주신 민간 유지에 대해 본 회의 사례, 또는 당국에서 표창을 한다는 의미에서 총독의 글을 액면으로서 내려주는 건은 지난 회 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이번에 총독 각하께 신청하여 글을 받았으므로 유승우(柳承佑) 씨 외 7명에게 각각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본 위원회는 총독부 당국이 특히 이 역사서 편찬 사업에 중점을 둔 결과 이번의 양정(兩政) 정리에 관계없이 장래에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료 수집에 관한 사무는 이나바 간사가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무에 관한 보고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나바 간사

지금부터 사료 채방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올해 8월 이후부터 이 달 초에 이르는 약 4개월 동안에 저희 편찬위원은 평안북도 일부, 충청남도 일부 및 함경북도 전도에 걸쳐 채방하였습니다. 저는 맨 처음 평안북도에서 의주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주는 종래 중국, 만주와의 관문이어서 무역 관계 사료가 많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청일, 러일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볼만한 사료가 거의 없고, 종래 이곳에서 중국 무역을 독점했던 임(林)씨와 같은 사람도 지금은 의주를 떠나 백마(白馬) 방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씨로부터는 조보(朝報) 일부를 기증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철산(鐵山)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전에, 철산에는 정(鄭)씨라는 대가족이 있고 평안북도의 첫째 둘째가는 문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미리 철산 군청과 교섭하여 이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군청에서 열람하려는 것을 통지해 두었습니다. 제가 군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세 권의 서적이 와 있었습니다. 즉시 열람하였는데, 생각했던 바와 같이 제가 목적한 문서가 정씨 집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진열하고 있는 모문룡문서(毛文龍文書)입니다.

모문룡은 정말 요동의 군관으로 청태조(靑太祖) 누루하치가 무순(撫順)의 동쪽에서 일어나 요양(遼陽)을 함락시켰을 때 명의 유민을 이끌고 압록강 방면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주거(主居) 3에 객거(客居) 7 정도로 전 주민의 7할 이상이 중국의 피난민이었습니다. 모문룡은 저들을 수용하는 데에 성공하여 철산 바다 가운데 있는 단도(椴島)와 그 부근의 여러 섬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병력이 5만 내외였는데 압록강 상류에 군사를 보내어 종종 청조를 배후에서 습격하였습니다. 당시 청국은 산해관(山海關) 방면에서 명군과 교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문룡의 습격은 일대 위

협도 되고 견제도 되었던 것입니다. 만주 방면의 형세가 전개됨에 따라 경성의 태도 또한 변화를 피할 수 없었고 이미 만선(滿鮮) 양국의 서신 왕래도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모(毛)를 이용하여 경성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피도(皮島)의 관리는 항상 경성에 주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란 주로 식량의 요구였는데, 정부도 이에 대한 조처에 몹시 고심하였습니다. 그런 형편은 기록 문서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동기를 만들어 마침내 정묘전역(丁卯戰役)²⁾, 즉 청국과 조선의 제1차 전쟁이 개시되고, 인조는 강화도로 몸을 피하여 형제의 화약(和約)을 맺었던 것입니다.

전람하고 있는 문서는 모문룡이 철산의 정봉수(鄭鳳壽), 즉 현재의 정용묵(鄭容默) 씨의 조상에게 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모문룡의 서명이 있는 것은 정봉수가 만주병의 목을 보낸 데 대해 답례한 목록입니다. 정봉수가 용골산성(龍骨山城)에서 군기(軍器)를 청구한 데 대해 서면상으로 응답한 것이 1통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사료라 생각합니다. 모의 이름은 당시 외국 선교사 사이에 알려져 있어서,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된 서적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람회장에 발췌하여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알려져 있어서 내각문고에 하야시 라잔 소장 중 모문룡에 관한 것을 지난 해 한 번 보았습니다. 단도(椴島)의 전성은 전후 7, 8년이었는데, 모문룡이 여순(旅順)에서 원승환(袁崇煥)이라는 명의 장군에게 펼을 당해 살해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봉수와 그의 형제가 용골산성에 옹거하여 만주군에게 저항했다는 것은 전람하고 있는 인조의 교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강서유사(鄭江西遺事)라는 이 집안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鄭)에게는 자신(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군은 그다지 두렵지 않은데, 무기가 활과 화살뿐이며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릴 만한 문서입니다.

함경북도의 사료는 대체로 국경에 관한 것, 함경북도의 문화에 관한 것인데, 후자는 경성면(鏡城面)에서 채집한 이재형(李載亨)의 송암집(松巖集)이며, 전자는 경원(慶源)의 동원면(東源面)에서 채집한 김관곡(金寬谷)의 기록입니다. 이재형의 이름은 그곳 학자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관곡의 이름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였는데, 그곳에 가서야 우연히 김기홍(金起泓) 즉, 관곡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열람하였더니 오늘 전람에 내놓은 것과 같은 재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 방면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곱곰이 생각하건대, 고려조, 즉 6, 7백 년 전부터의 민족적 노력이 선구가 되었고 그것이 이조가 되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유명한 윤관(尹瓘)의 여진 정벌이 있어서 그 가장 북쪽의 방어선이 공험진(公險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정묘호란을 말함.

다. 이조에서는 김종서(金宗瑞)의 국경 6진 경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명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전쟁 또는 정치적으로 저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문화적, 평화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달리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전람하고 있는 김노규(金魯奎)의 아버지가 쓴 북관지(北關志)와 같은 것은 참으로 작고 조잡한 책자에 지나지 않으나, 문화적 방면에서 보면 저는 한껏 경의를 표하고 싶은 사료입니다. 북관지는 오늘날까지 함경북도 제일의 사료임은 제가 말할 것까지 없습니다. 회령(會寧) 등 각 군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완전한 북관지가 한 부도 보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깊은 산 험한 골짜기 사이의 빈한한 집에서 그러한 서적을 발견한 것을 특별히 보고 드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관곡의 기록에 이르러서는 갑절의 노력을 요했습니다. 이조 조상의 역사를 기록한 용당지(龍堂志)는 전적으로 관곡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경 방면의 각 군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록, 문서의 망실이 심해서 경성과 같은 곳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까지 도청 소재지로서 함경북도의 제일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의 문서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장백산(長白山)의 정계비(定界碑)에 관여했던 이재부(李載復)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길주(吉州)에서 강희량안(康熙量案) 1책을 보았지만, 전도(全道)를 통틀어 이것 한 부밖에 없었습니다. 함경북도를 여행하는 김에 간도(間島)와 혼춘(琿春) 방면에도 채방하였습니다.

경북 안동의 배(裴)씨에게서는 종래 귀중 사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조상 배삼익(裴三益)의 일기 및 선조실록(宣祖實錄)의 원고 일부가 도착하였습니다. 참고하기 위해 간본(刊本) 선조실록을 진열하였으니 보십시오. 선조실록은 광해조(光海朝)에 편찬한 것을 인조조(仁祖朝)에 다시 고쳐서 지금은 2통(通)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고에 의거하여 생각해 보면, 2本 모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고는 분량으로는 얼마 되지 않으나 현재로는 실록 원고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성군(安城郡)에서 송부해 온 심양강탄구지도(瀋陽降誕舊址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양(瀋陽)은 봉천(奉天)의 옛 이름이며, 강탄(降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이조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조부에 해당하는 현종(顯宗)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봉천, 즉 이역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500년의 이조를 통해 예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인조조에 두 번째로 만주와 싸운 결과 당시의 왕세자 봉림대군(鳳林大君) · 인평대군(麟坪大君) 세 분과 그 밖에 대신의 적자 등이 봉천에 인질로 갔습니다. 왕세자가 뒤에 병사하였기 때문에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효종(孝宗)이라 불렸던 분입니다. 현종은 실은 효종의 원자로서 봉천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영조대왕은 즉위 후 이 일은

추념하여 북경에 가는 사절에게 봉천의 구지(舊址)를 찾게 하였습니다. 마침 그것이 도찰원(都察院)의 위치에 있음이 판명되어 도회(圖繪)하여 복명하였습니다. 즉 지금의 봉천 대남문(大南門) 안에 고려관(高麗館)이라 부르는 옛 지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왕세자를 비롯하여 효종대왕은 이 질관(質館)에서 온갖 쓴맛을 다 맛보았는데, 당시의 실황은 오늘 진열한 여러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심양일기(瀋陽日記)는 질관에서 쓴 일기이며, 상계(狀啓)는 질관에서 보낸 서간을 철한 것입니다. 진열된 효종의 어필(御筆)은 봉천에서 보낸 것이며, 송계집(松溪集)은 인평대군의 시문집(詩文集)입니다. 효종은 즉위 후 청조에 대한 보복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합 전까지 민간의 연호는 모두 승정기원(崇禎紀元) 후 몇 년으로 썼는데, 그것은 명의 최후를 기념한 효종 시대 사상의 계속이라 할 일대 관절(關節)이므로 특별히 진열한 것입니다.

5번(홍 위원)

저는 충청남도 아산, 부여에 출장하여 사료를 채방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조선 시대 중기 이후 양반 및 당파의 근거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하 수집한 사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신교서(洪可臣敎書)

홍가신(洪可臣)은 이조 선조 시대의 유일한 유학자로서 경학과 덕행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조 때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문록 전쟁 때 국내의 인심이 동요된 틈을 타서 이몽학(李夢鶴)이라는 자가 충청남도 지방에서 반기를 들어 다섯 군을 함락시키자 관군이 패하여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가신은 홍주 목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를 쳐서 평정한 큰 공을 세움으로써 청난일등공신(淸難一等功臣)으로서 영원군(寧原君)에 봉해졌습니다. 이때 선조로부터 받은 것이 이 교서입니다.

증직교지(贈職敎旨)

이것은 홍가신이 죽자 광해군 7년에 친공신(親功臣)의 예에 의해 공적이 현저하다하여 우의정을 증직했을 때의 교지입니다.

사시교지(賜謚敎旨)

이것은 홍가신이 죽은 후 약 60년이 지난 숙종 시대에 홍가신의 경학, 덕행 및 훈업(勳業)을 기리어 문장공(文莊公)이라는 시호(謚號)를 내렸을 때의 교지입니다.

금금기(今衿記)

이것은 홍씨가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여 자손에게 나누어 준 것에 관한 문서입니다.

홍가신행상비문(洪可臣行狀碑文)

행상(行狀)이란 홍가신 일생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그의 동생 홍경신(洪慶臣)이 지었습니다. 또 비문은 숙종 때의 문호 조경(趙絅)이 찬한 것을 초록하였습니다.

홍가신수필(洪可臣手筆)

이것은 홍가신의 자필입니다.

홍가신자만시(洪可臣自挽詩)

이것은 홍가신이 직접 지은 만시(挽詩)의 원고입니다.

홍가신수필서첩(洪可臣手筆書尺)

이것은 홍가신이 직접 쓴 서찰입니다.

홍우형호적(洪宇迴戶籍)

이 문서는 홍가신의 손자 홍우형(洪宇迴)의 호적입니다. 홍우형은 조선 제일의 명장인 이순신의 외손인데, 이 호적은 300년 이전의 민적(民籍)에 관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설북유고(雪北遺稿)

이것은 만전당집(晚全堂集) 이외에 홍가신이 쓴 문장을 그의 자손이 수집한 것입니다.

정퇴서원만전봉안문(靜退書院晚全奉安文)

이것은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에 홍가신을 모시고 그 이유를 고한 축문입니다. 만전(晚全)이란 홍가신의 당호(堂號)로서 명나라 주지번(朱之蕃)이 쓴 변액(匾額)이 아직도 본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계록(聞啓錄)

이것은 한세량(韓世良)이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재직 중에 정부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당시의 국경에 관한 사항, 노론의 네 대신 및 기타에 관한 남인류(南人流)의 일종의 기록인데, 지금도 홍씨 자손의 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와고(芹窩稿)

이것은 이조 정종 시대의 우의정 김희(金憲)가 저술한 것으로 원본입니다. 김희는 김사계장생(金沙溪長生)의 7대손으로, 노론파 제일의 문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유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정종은 두터운 신임을 보여 늘 유상(儒相)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근와년보초본(芹窩年譜草本)

이것은 김희 일생의 학문, 관력(官歷), 사업에 관한 전부를 기록한 문서의 원본입니다.

계상종유록(溪上從遊錄)

이것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어울려 사귀던 제현(諸賢)의 성명 및

약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노론과 소론이 분립하기 이전 조선 유학의 연원에 관한 유일하게 신용 있는 사료입니다.

이동성리설원고(李東性理說原稿)

이조의 유학에 호론파(湖論派), 낙론파(洛論派)의 구별이 있는데, 이 이동(李東)은 낙론파의 수령으로서 호론파의 영수(領袖) 한원진(韓元震)과 함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동이 쓴 원고 중 남은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층에서 설명을 붙여 진열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나바 간사

문정공(文正公) 안유(安裕)의 화상(畫像)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화상은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난 가을 고 가시하라 위원과 흥 위원의 일행이 채방하러 갔을 때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안유는 유학을 중흥한 학자로서, 얼마 전에도 동궁전하의 경사에 즈음하여 제사용품비를 하사하였습니다. 전 조선에 걸쳐 안자묘(安子廟)가 설치되고 화상은 몇 개나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후세의 복본이며 이번에 전람을 청한 것이 당시 충숙왕의 명을 받들어 그린 진본입니다. 원나라 사람이 그렸다고 일컬어지는데, 1319년부터 올해까지 꼭 607년이 됩니다. 가마쿠라 말기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초에 해당합니다. 그림의 시말은 화면 위에 있는 안우기(安于器)의 찬에 쓰여 있으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찬에 대해서는 사료의 원본, 부분 및 사진 일부를 진열하였습니다.

사료 목록의 작성은 현재 저희 편찬 사무의 전력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카드 중 일부분을 진열하였습니다. 사료는 내외의 서목에서 검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만력(萬曆) 17년(1589)부터 22년에 걸친 이조사고(李朝史庫)의 목록을 열람에 내놓았습니다. 이것들은 목록 작성의 근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분로쿠(文祿) 임진(壬辰) 이전의 것은 오늘 전람하는 것 이외에는 없으므로 참으로 귀중한 사료입니다.

9번(유 위원)

편찬 사업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괜찮습니다.

9번(유 위원)

옛날 공자께서도 역사서 편찬에 대해서는 직서량사관(直書良史官)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의 사료는 각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두어 귀중한 사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은 기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실록과 같은 것도 원고와 대조하면 다른 점이 갖가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고도 공평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편찬을 맡은 분들은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0년 아래의 역사는 당쟁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심사하는 한편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위와 직권을 부여하고, 칙임관(勅任官) 이하의 직원을 두어 권위 있고 완전한 역사를 편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4회 위원회에서도, 유 위원의 희망에 대해 대답했다고 기억합니다. 즉 관제상으로 한층 더 중시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물론이고 총독 각하로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하고자 한다는 생각으로 그 안을 동경 쪽에 보내어 교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제를 보더라도 내년 4월 이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각 위원께서 의견이 없으신 듯하므로 이것으로써 폐회하겠습니다. 다망하신 연말에 즈음하여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 40분 폐회)

아래층에서 채방 사료를 전람함.

1925년 월 일
조선사편찬위원회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동 김동준

〈출전 : 第5會 朝鮮史編纂委員會 會議錄(1924년 12월 23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2. 조선사편수회

1) 조선사편수사업 경과 및 현상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월이 매우 오래되어 정치, 문예, 산업 등에서 각기 특색을 발휘하였고, 특히 일본과 조선은 상대로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 오다가, 마침내 한국의 병합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 국토에 산재한 자료가 차제에 연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극히 공평하고 학술적인 조선사의 편찬을 계획하여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로서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고문 및 위원은 조선인과 일본인 중에서 학자를 간선(簡選)하고 아울러 편찬주임을 임명하여 동월 제1회 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편찬방침을 삼국이전,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분류하고, 각 사료 목록의 편찬과 사료 부분의 제작 등의 편찬 방법 및 각지에 산재된 사료 수집 방법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이 사무를 중추원에서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료 채방도 함경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및 평안북도 일부를 종료하여, 채방 사료의 전람을 공개한 일이 2회에 이른다. 본 사업은 당초 1922년도부터 10년 완성의 예정하였지만, 재정긴축 방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어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개년을 연기하여 1933년에 완성하기로 하였다.

원래 조선에서는 역사서 편찬 사업을 중대시하여 특별히 사관(史官)을 설치하였고, 그 편수에 관계된 자의 지위를 각별히 우대하였으므로, 본 사업의 현상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총독부에서는 어쩌면 수사 사업을 경시할 것이라는 오해의 감정이 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제한된 수년 내에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히 조선사 편찬사업에 적당한 학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관계에 의거하지 않은 조직으로는 인물을 얻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다시금 권위 있는 조직으로 개조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년 4월 1일 공포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제안을 제출했던 바, 법제국(法制局)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본월 6일부로 칙령 제218호에 따라 공포되어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는 직원 역시 내각에서의 전형이 지연되어서, 사무 집행 상 곤란하게 되어, 중추원 서기관장 및 동원(同院) 서무과장에게 촉탁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본회 직원으로서 내신을 끝낸 자 및 예산은 별지와 같다.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상기의 관제 시행과 더불어 폐지되었는데, 종래의 관계를 상세히 하기 위해 의사록을 첨부한다.

〈출전 : 朝鮮史編修事業經過及現狀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2) 조선사편수회 관제

1925년 6월 6일

칙령 218호

제1조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한다.

제2조 조선사편수회는 회장 1인, 고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한다. 고문과 위원은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고문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사편수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내의 고등관 중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정리한다.

제6조 조선사편수회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다음의 직원을 둔다. 수사관 전임 3인, 수사관보 전임 4인, 서기 전임 2인

제7조 수사관은 회장의 명을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를 담당한다. 수사관보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史編修會官制, 1925년 6월 6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3) 조선사편수회 직원 임명 내신을 끝낸 자에 대한 조사

고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후(侯) 이완용(李完用)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후(侯) 박영효(朴泳孝)

종사(從四), 훈일(勳一), 자(子) 권중현(權重顯)

위원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
총독부 학무국장 이진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 이쿠타 세이사부로
총독부 사무관 오다 쇼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유맹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어윤적
휴직 이왕직 전사 정만조
경도제국대학 조교수 이마니시 류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야마자키 마키오
총독부 편수관 이능화, 이병소, 윤영구

간사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야마자키 마키오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김동준, 이나바 이와키치

수사관(修史官)

5등 2급-중추원 촉탁 이나바 이와키치
7등 8급-총독부 편수관 후지타 료사쿠
7등 11급-중추원 촉탁 홍희
4등(兼)-중추원 서기관 김동준
※ 김서기관의 수사관 겸임은 당초 사무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내신(内申) 중에 간사로서 당연히 서무에 종사해야 하므로 수사관 겸임의 내신은 취소하였다.

수사관보

5급-중추원 촉탁 다카키쓰 다쿠지

서기

6급-중추원 고원 현양섭

비고

수사관보 중 1인은 지금까지 조선사 편찬 사무에 종사해 온 촉탁(연수당 2,300엔) 세

노를 3급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임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4급 이상의 초임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각의 결정의 통첩에 의해서 임명을 보류시키고 수사관보 1인을 결원으로 하여, 그 봉급을 급여로 유용하여 종래대로 촉탁으로 채용하였다. 수사관보 조선인 1인 및 서기 내지인 1인은 구로이타 박사(종래 조선사 편수 사무총탁으로서 본 사업 당초부터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는데, 현재 인선 중이다.

수사관보 1인은 위의 두 사람의 봉급 여하에 따라서는 결원인 채로 두어야 하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직원 채용 신청 인원 및 봉급 조사는 별지와 같음.

〈출전 : 朝鮮史編修會職員任命內申濟 : 者調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4) 조선사편수회 고문 · 위원 · 직원 선임

(상략)

제2항 고문(顧問) · 위원(委員) 및 직원(職員)의 선임

1925년 6월 6일 조선사편수회 관제가 공포되자 시모오카 정무총감은 관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에 취임하고, 이어서 6월 25일자로 이나바 이와키치 · 후지타 료사쿠 · 흥희를 수사관으로 임명하고, 수사관보 ·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임명하였다.

7월 20일에는 이완용 · 박영효 · 권중현 · 시노다 지사쿠 · 오다 쇼고 · 이마니시 류 등 조선역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선과 일본의 인재들을 고문과 위원으로 선임하고 서무를 담당시키기 위해 중추원 서기관 등을 간사로 겸임시킴으로써 본회의 조직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사편수회 임직원

회장	정무총감	시모오카 추지
고문	중추원 부의장 후작	이완용
고문	중추원 고문 후작	박영효
고문	종4위 훈1등 자작	권중현
위원	중추원 서기관장	이쿠다 세이사부로
위원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
위원	학무국장	이진호
위원	총독부 사무관	오다 쇼고

위원	중추원 참의	유 맹
위원	중추원 참의	어윤적
위원	경도제국대학 조교수	이마니시 류
위원	중추원 서기관	야마자키 마키오
위원	총독부 편수관	이능화
위원	총독부 편수관	이병소
위원	총독부 편수관	윤영구
간사	중추원 서기관	야마자키 마키오
간사	중추원 서기관	김동준
간사	총독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수사관	훈6등	이나바 이와키치
수사관	총독부 편수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수사관		홍 희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쿠지
서기		현양섭

이어서 1925년 9월 22일자로 다음 3명을 고문으로 추가하여 한층 더 그 조직을 정비하였다.

고문	동경제국대학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
고문	동경제국대학 교수	핫도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고문	경도제국대학 교수	나이토 도라지로

〈출전 :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38년, 30~32쪽〉

5) 조선사편수회 직원 채용 신청 인원 및 봉급 조사

조선사편수회 직원 채용 신청 인원 및 봉급 조사

이름	등급	봉급	합계	사액료	총계	현재 수당
수사관						
이나바	2급	본봉 4,100 가봉 1,640	5,740	396	6,136	6,000
후쿠다	8급	본봉 2,000 가봉 800	2,800	360	3,160	2,800
홍	11급	본봉 1,400 봉급 9,940 상여 910	1,400		1,400	1,200
합계		10,850				
수사관보						
세노	3급	본봉 1,380 가봉 826	2,208	264	2,472	2,300
다카키쓰	5급	본봉 1,020 가봉 612	1,632	264	1,896	1,800
간노	5급	본봉 1,020 가봉 612	1,632	264	1,896	1,800
조선인	7급(假定)	본봉 780		780	780	
서기						
현(玄)	6급	본봉 900	900		900	900
일본인	10급	본봉 540 가봉 320	860	216	1,080	
		본급 8,016 상여 868				
합계		8,840				
총계		19,734				
잔액		78				

* 정원 : 수사관 3명, 수사관보 4명, 서기 2명, 봉급예산 19,812엔

〈출전 : 朝鮮史編修會職員採用見込人員及俸給調,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6) 1925년도 조선사편찬비 예산 조사

1925년도 조선사편찬비 예산조(1925년 6월 18일 현재)

관	항	목	내역	금액		비고
조선사 편찬비				29,160	00	
	조선사 편찬비			29,160	00	
		봉급		6,770	00	
			판임봉급	6,770	00	
		사무비		22,390	00	청비(廳費) 4,123
						수선비 500
						여비 2,600
						촉탁수당 2,400
						위원수당 3,300
						고원급 5,413
						고인료 1,200
						숙사료 1,320
						회복비 78
						잡비 456
						숙사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려는 경우는 허 가를 요함
						수선비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려는 경우 역시 위와 같음
						주인봉급은 실제 소요 액을 위임할 것

〈출전 : 1925年度 朝鮮史編纂費豫算調 1925년 6월 18일,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1925년〉

7) 조선사편수회요람

1. 조선사편수사업 개황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을 공포했다. 다음해 1923년 1월 조선역사에 조예가 깊은 조선과 일본의 학자를 선발하여 위원으로 정하고 조선사편수사업을 시작했다.

조선의 문화는 그 심연이 매우 깊어 우월한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견지에서 자료를 채집하여 편찬한 역사서를 볼 수가 없고, 또한 고기록, 고문서 그 외의 사료로 사용할만한 문헌류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지금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 것은 큰 유감이다.

본 사업을 기획한 것은 실로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위원을 결정하자마자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사의 편찬 및 사료채집 방법 그 외에 대해 심의를 했고, 같은 해 6월에 제2회 위원회를 열고, 1924년 4월에 제3회 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8월 제4회 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에 제5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찬 및 사료 수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동시에 채방수집한 사료를 열람했다.

조선사의 편찬은 당초 계획에 있어서는 1922년부터 향후 10개년 간을 두고 완성할 것을 예상했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재정상의 형편에 의해 2개년간 연장하고 1933년도에 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의 관제를 공포하고 고문, 위원, 간사 및 수사관 이하를 임명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관제발포 이후 제1회 고문, 위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종래의 위원회의 계획에 준거하여 편찬 방법 및 예산에 관해 심의하였다. 1927년 7월 제2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사 원고의 편찬에 관한 강령 및 범례, 복사본류 제작에 관한 범례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 심의 결정하였다. 1929년 12월 제3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사의 인쇄 할 것을 협의했다.

본 회 사업의 성적을 보면 사료수집에 대해서는 가장 어렵다는 지방사료의 채집을 비롯해 이미 모은 사료의 정리와 사료복사본의 제작 등 모두 점차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사료의 일반채집은 1929년에 각도 및 만주에 걸쳐 대략 종료하였다. 빌려서 조사한 것이 기록, 고문서, 사적, 문집, 영정 등 1,240여 종에 이르렀다. 그중에서 특히 명가 보장(寶藏)으로 종래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 그리고 틀린 역사 기록을 바로잡고 불분명한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신 사료를 찾아낸 것도 적지 않다. 실로 본 사업의 두드러진 성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전에 제작한 사료의 복사본 류는 1,062권, 사진 959종류(원판 2,398매)에 달했고 기타 기증을 받은 서적, 탁본 류 192부, 구입한 자료 및 참고도서류 426부가 있다. 그 외에 1926년 7월 쓰시마 구 한수(藩主) 소우(宗) 백작 가문에서 전해 온 조선관계 사료의 모두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들 사료 중 중요한 것은 이를 조사하여 조사서, 조사요록 등을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3회에 걸쳐 수집 조사한 중요 사료를 전람함으로써 일반에게 본 사업의 성적을 제시하고 이 취지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사의 편수에서는 제2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근거하여 각 시대별로 분담을 정해 조선시대의 초기 및 중기(제4, 5편)은 1927년 9월부터, 신라 통일 이전 및 신라통일 시대(제1, 2편)은 1928년 4월부터, 고려시대(제3편) 및 조선시대 후기(제6편)는 1929년 4월부터 착수하여 원고의 작성도 서서히 진행되어 지금은 제1편 33책, 제2편 35책, 제3편 111책, 제4편 190책, 제5편 224책, 제6편 35책, 합계 628책의 가제본을 완료했고 순차적으로 이를 수정해가고 있다.

2. 조선사편수 강령

1) 시대구분에 따라 편의상 다음과 같이 6편으로 나누어 편수함.

제1편 신라 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

제4편 조선시대 전기(태조부터 선조까지)

제5편 조선시대 중기(광해군부터 정조까지)

제6편 조선시대 후기(순조부터 갑오개혁까지)

2) 편수 체제는 편년체로 한다. 각 해의 순서는 간지 및 왕 재위의 순서에 따르며 또한 일본과 중국의 기년(紀年)을 주석으로 기재하여 참조한다.

3) 수집 사료를 연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방면에 걸쳐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한다.

4) 사료의 날짜가 분명한 것은 날짜에 맞게 년, 월만이 분명한 것은 각각 년도와 월에 맞게 조목에 따라 원문 그대로 수록·배열하고 사건의 요령을 조목의 앞에 수록하여 본문으로 한다.

5) 사료의 연, 월, 일 등이 불분명한 것은 관계조문의 아래에 이를 분류·수록하고 본문을 별도로 게재한다.

- 6) 사료의 연, 월, 일이 분명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나누어 분류한다.
- 7) 동일 사건에 관한 사료는 이들을 수록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적고, 참고의 자료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잡록으로 별도로 수록한다.
- 8) 간접적으로 사료를 보조하고 참조하여 비판과 고증에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이를 부재(附載)로 하여 수록한다.
- 9) 제1편은 특히 옛날에 편찬되고 선록된 기록, 사적 및 그 외의 사료를 원문 그대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특히 편년체로 하지 않는다.
- 10) 거론하는 사건에 관한 후인의 기술 및 사론 등을 해당 조문 아래에 참고로 하여 수록한다.
- 11) 인명, 지명류, 기타 이동(異同)에 참고가 될 만한 것 등은 이를 주석으로 표기한다.
- 12) 본문과의 관련 사항, 사료의 비판, 역사적 사항의 고증 등을 위해 조사문을 삽입한다.
- 13) 사료, 잡록, 부재 및 참고 중에서 중요한 칭호 및 사항 등을 이를 머리 부분에 제시 한다.
- 14) 문서, 기록, 그림 기타의 사료로서 모사와 사진 등을 참조할만한 것이나 본문에 참조할만한 지도 종류 기타 등은 이를 도화로서 삽입한다.
- 15) 신사료, 참고 등을 얻을 때마다 그것을 활용하여 계재하고 본문, 조사문, 두주(頭註)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보완·수정을 한다.
- 16) 원고는 연도 및 매수에 따라 편리하게 분책한다.

(중략)

10. 사무분담표(1930년 7월 25일 현재)

회장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회무총탁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서무계	
간사	하리마 겐시로(張間源四郎)
간사	엄창섭(巖昌燮)
주임서기	가쓰라기 스에지
주임서기	김용적(金容迪)
주임서기	현양섭(玄陽燮)
고원(雇員)	마에다 고조(前田耕造)
고원	황명주(黃命周)
임시고원	김건태(金建泰)
	이누카이 사치코(犬飼幸子)

편수계	
간사	이나바 이와키치
제1, 2편부	
주임총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총탁	윤용균(尹容均)
고원	한동철(韓東喆)
전사원(典寫員)	김영한(金永翰)
제3, 4, 5, 6편부	
주임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제3편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총탁	아키우라 히데오(秋浦秀雄)
총탁	구찬서(具贊書)
고원	구로이 하루노리(黒井治徳)
전사원	이기용(李淇鎔)
전사원	이동섭(李東燮)
제4부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수사관보	신석호(申奭鎬)
총탁	가와구치 우키치(川口卯橘)
고원	김환(金煥)
고원	홍원표(洪元杓)
전사원	어용선(魚龍善)
전사원	김규락(金圭洛)
전사원	홍경순(洪庚孫)
제5편부	
총탁	세노 마구마(瀬野馬熊)
총탁	조한직(趙漢稷)
전사원	조규식(趙奎植)
전사원	임직순(任稷淳)
전사원	박충서(朴忠緒)
전사원	이진규(李真珪)
제6편부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쿠지(高橋啄二)
고원	조승호(趙承祜)
전사원	임청(林青)
전사원	황명수(黃丙秀)
전사원	이종명(李種明)
전사원	이용상(李用庠)

조사부	
주임수사관	홍희
수사관보	가쓰라기 스에지
총탁	최남선(崔南善)
총탁	이마무라 도모(今村鞏)
총탁	박용구(朴容九)
총탁	조중관(趙重觀)
고원	김중협(金重協)
정비부	
주임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
총탁	시부에 게이조(澁江桂藏)
고원	황명주
전사원	오회선(吳禧善)
전사원	원정한(元鼎漢)
전사원	유길수(柳吉秀)
전사원	김윤철(金潤喆)
임시전사원	김희동(金憲東)
임시전사원	정성원(鄭成源)
임시전사원	이승범(李昇範)
임시전사원	장지택(張之澤)
임시전사원	심상규(沈相奎)
임시전사원	김진우(金鎮旭)
임시전사원	홍은식(洪殷植)
임시전사원	성창영(成昌永)
임시전사원	이순규(李洵珪)
임시전사원	김경수(金敬洙)
임시전사원	홍승윤(洪承綸)
심의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수사관	홍희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
총탁	이마니시 류

11. 직원이동(1930년 7월 25일 현재)

(갑) 조선사편찬위원회

(연월일의 기입이 없는 것은 1925년 6월 8일 위원회 규정 폐지까지 존재했음)

위원장	아리요시 다다이치(1924년 7월 4일 전임) 시모오카 추지
고문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위원	오다 간지로(1923년 3월 29일에 사직) 마쓰이 히토시(1923년 8월 16일 사직) 이상영(1923년 3월 25일 사직) 가시하라 소조(1924년 3월 28일 사망) 나가노 간(1924년 12월 1일 전직) 후카가와 덴지로(1924년 12월 8일 사직) 현채(1925년 2월 6일 사망) 유맹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 이병소 윤영구 홍희 오다 쇼고 시노다 지사쿠 오쓰카 쓰네사부로 이진호
	김동준
	이나바 이와키치
	야마자키 마키오
간사	가네코 마사케쓰
	가쓰라기 스에지
	김용적
총탁	구로이타 가쓰미
	이능화
	사사가와 다네로

	이나바 이와키치
	홍희
	다카키쓰 다쿠지
	세노 마구마

(을) 조선사편수회

회장	시모오카 추지(1925년 11월 22일 사망)
	유아사 구라헤이(1927년 12월 23일 사직)
	이케가미 시로(1929년 4월 4일 사망)
고문	이완용(1926년 2월 12일 사망)
위원	오쓰카 쓰네사부로(1925년 6월 15일 전임)
	야마자키 마키오(1928년 3월 31일 전임)
	이진호(1929년 1월 19일 사직)
	이쿠타 세이사부로(1929년 11월 8일 사직)
	고우타케 마사요시(高武公美)(1929년 11월 28일 전임)
	유맹(1930년 1월 21일 사망)
간사	김동준(1925년 9월 18일 전임)
	야마자키 마키오(1928년 3월 31일 전임)
	정교원(1928년 3월 31일 전임)
	이동진(1928년 7월 28일 사망)
	고우타케 마사요시(1929년 11월 28일 전임)
	손영목(1929년 11월 28일 전임)
수사관	후지타 료사쿠(1926년 6월 23일 전임)
수사관보	이병도(1927년 5월 30일 사직)
	이케다 도미키조(潮田富貴藏)(1927년 8월 30일 사직)
	쓰루미 류기치(鶴見立吉)(1928년 4월 14일 사직)
서기	가네코 마사케쓰(1929년 3월 17일 사직)
	오노 도쿠조(1929년 4월 5일 사직)
총탁	이나바 이와키치(1925년 6월 25일 수사관임명)
	홍희(1925년 6월 25일 수사관임명)
	이능화(1925년 6월 15일 해촉)
	사사가와 다네로(1925년 8월 31일 해촉)
	육종윤(1927년 7월 20일 해촉)
	권중익(1927년 12월 16일 사망)
	나카무라 히데타카(1927년 12월 27일 수사관임명)
	스에마쓰 야스카즈(1928년 3월 31일 수사관보 임명)
	이와타니 다케이치(1928년 6월 6일 해촉)

	김태두(1928년 12월 20일 해촉)
	신석호(1930년 5월 2일 수사관보 임명)

〈출전 : 『朝鮮史編修會要覽』,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30년 7월, 1~6쪽, 24~30쪽〉

8) 위원회의 경과 및 중요결의(제1~9차)

(상략)

제3항 위원회의 경과 및 그 중요결의

제1차 위원회

1925년 9월 말로 회장 · 고문 · 위원 · 수사관 이하 일단 조직이 정비되었으므로 10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중추원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시모오카 회장이 동경에 가 있어 부재 중이었으므로 이쿠다 위원이 회장대리를 맡아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하였다.

“오늘 조선사편수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조선사편찬사업은 지난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 고문 및 위원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 중의 학자와 관리들 중에서 선임하고, 그동안 오늘날까지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이 5회, 또 각지에서 채방수집한 자료를 일반에 관람시킨 것이 2회에 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에 의해 이 사업을 더욱 권위 있는 것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침내 금년 6월 6일 본회의 관계를 확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조선사편수회가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는 종래의 위원회로부터 계속사업이라고 보아 지장이 없는 것이며, 본회의 사업 역시 1933년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래 고문 · 위원 또는 서기직을 맡아 직간접으로 위원회의 사업을 맡아 주셨던 여러분은 새로운 관계에 의해 각자의 새로운 지위에 취임하여 주셨으므로 본회로서도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본회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오신 구로이타 가쓰미 · 핫토리 우노키치 · 나이토 도라지로 세 분의 박사가 모두 그대로 고문의 역을 맡아 주시게 된 것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진실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모든 역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협조하시어 본회의 목적이 지체 없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사이토 총독은

“이제 조선사편수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회 설립의 취지는 1923년 조선사편찬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자세히 언급했던 것처럼 해마다 인멸되어 가고 있는 귀중사료를 수집하여 공평하고 학술적인 조선사를 편찬함에 있는 것임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양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 후 2년여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다시금 조직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업의 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공포된 조선사편수회 관계의 근본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고문·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라고 훈시하였다. 이어서 간사의 사무보고가 있은 후, 다음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산회하였다.

— 다음 —

제1. 사료채방

- (1) 관청측의 원조
- (2) 편찬 채방상의 주의점 및 경험
- (3) 사료의 내용과 채방의 방법
- (4) 채방구역

제2. 사료의 정리

- (1) 목록작성의 완성
- (2) 실록 및 등록의 정리
- (3) 복본의 작성

제3. 편찬의 준비

다음날인 9일에는 위원들로부터 제출된 다음과 같은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끝으로 지방의 자료를 전람하였다.

1. 조선사 편찬비 증액의 건
2. 고려의 폐왕(廢王) 신씨(辛氏)를 왕씨(王氏)로 고치는 문제

3. 고려 멸망 시 왕실족척(王室族戚)과 그 유신(遺臣)들은 일본에 귀화한 자가 많고, 그 사료 또한 풍부하다면 일본 자료에 중점을 두는 문제

제2차 위원회

1927년 7월 12일 중추원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박영효 · 구로이타 양 고문과 편수위원인 이쿠다 중추원 서기관장 외 7인이 출석하여 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인사말을 들었다.

“오늘 이 회의를 열게 된 것은 금년부터 실제적인 편수작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조선사편찬위원회(1923년 12월 8일)에서 심의 결정되었던 편찬의 형식과 구분, 편찬의 체재, 그 밖의 방침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심의 결정하고자 함에서입니다. 마침 구로이타 박사께서 곧 외국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구체적인 편찬의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편찬사무 진행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니 배부된 조선사편수회 강령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 진행에 들어가

- 제1. 조선사의 강령 및 범례
제2. 복본의 작성

위의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하였다.(76항 참조) 그러나 그날은 마침 야마시나노미야(山階宮) 후지마로오(藤麿王) 전하가 경성에 와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수집된 사료 140여 점을 진열하여 관람케 했다.

고문 · 위원 간담회

1928년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중추원에서 고문 · 위원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케가미 회장, 권중현 · 구로이타 양 고문, 이쿠다 · 이진호 · 오다 · 이마니시 · 유맹 · 어윤적 · 이능화 · 정만조 · 이병소 · 윤영구 각 위원, 이케가미 · 이나바 양 간사가 출석하고 야마나시(山梨) 총독도 임석하였다.

이케가미 회장

“지난 겨울 부임한 이후 한 번쯤 고문·위원 여러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라도 가져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제야 겨우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사료의 일반 채방에 있어서는 예정한 목표량의 과반을 수집함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내 일반인들이 귀중한 사료의 수집과 이번의 편찬사업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많은 편의를 제공한 데 힘입은 바가 커던 것으로 참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일반채방 작업은 끝낼 예정이므로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일반인들이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선사의 편찬작업은 내년 7월 이후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각 편마다 분담자를 정해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사료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사료의 채방과 편찬의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고 참고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어서 야마나시 총독은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조선사편수회 고문 및 위원님들의 연석회의에 즈음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회가 조선사료의 수집·정리와 조선사편찬의 사명을 떠고 발족한 이후 고문 및 위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취지를 돋고, 모든 직원들은 힘써 사무에 종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날로 인멸되어 가고 있는 사료를 수집하여 공정한 조선사를 편수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은 본회 창립 당시에 비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조선통치의 시책 상, 학술상으로도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노력 매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간사로부터 서무와 편찬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편찬과 사료수집에 관해 간담하고 이어서 각 고문과 위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의 개진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권중현 고문

“이 조선사편수회는 칙령으로 발족되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사를 편찬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사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회의 관계자들이 자주 모여 상의하고 작성되고 있는 초고를 받아보아 완벽한 조선사를 편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마니시 위원

“권 고문의 말씀은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수위원이라는 직책은 앞으로 완성될 조선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월은 불 가능할지라도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은 위원회나 사무협의회 같은 것을 열어 편찬의 내용이나 실정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원들은 책임을 가지고 편수작업의 실정을 파악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이타 고문

“권 고문과 이마니시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사의 편수업무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년간에 걸쳐 조선사 편찬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진 피해 때문에 계획을 연장하여 12년에 걸쳐 완성시키기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는 조선반도의 각 도(道) · 각 지방에 있는 것을 채방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 중국 및 만주에 있는 사료도 수집하여 완벽한 조선사를 편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 고문 여러분들의 조력에 힘입어 이미 사료의 수집도 목표의 과반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년 7월의 회합에서 편수의 체재 · 강령을 정하여 그 방침에 따라 편찬작업을 진행시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로는 원고만 완성되었을 뿐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칠 단계에까지는 와 있지 못합니다. 이 업무가 조금 더 진척되는 날에는 여러분들의 기坦없는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실은 사료가 너무 방대하여 그 수집 정리와 편찬에 있어 수사관들로서도 매우 곤란을 느끼고 있으므로 충분히 연구하여 일단 완성된 다음에 심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일일이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넘길 때에는 여러분의 충고나 의견을 들어 완전하고 공정한 역사를 편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

“지금 권 고문의 의견이나 이마니시 위원의 의견은 지당한 말씀으로, 자주 회합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편수업무에 반영할 것인가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여 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날 기회를 보아 검토한 후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제3차 위원회

1929년 12월 23일 중추원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고다마 회장, 권중현 · 구로이타 양 고문, 이마무라 · 핫토리 · 시노다 · 유맹 · 오다 · 어윤적 · 야마니시 · 이능화 · 정

만조·최남선 위원, 간사·수사관이 참석하였다. 본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고다마 회장은

“취임 이후 직접 고문 및 위원 여러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라도 가져볼까 생각하여 왔습니다만 공무에 쫓기어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구로이타 고문께서 본회의 업무관계로 조선에 오시게 된 것을 기회로 위원회를 열게 된바, 연말의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시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사 사업이 국가의 중대사의 하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반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이제 까지의 성과를 보면, 사료의 일반채방작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원고의 작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모두 함께 기뻐해 마지않을 일이며, 아무쪼록 예정기간 내에 완성되어 인쇄까지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坦없이 토로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거듭해서 당초의 목적에 배치됨이 없이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문·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라는 인사말에 이어 담당 간사들로부터 회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구로이타 고문이

1. 당초 제7편 ‘조선시대 후기’를 정조에서 갑오개혁까지로 잡았던 것을 변경하여 순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조의 시대는 제6편의 마지막에 집어넣어 편찬하는 문제
2. 편수 및 인쇄의 계획을 다음의 표와 같이 고치는 문제

이상의 두 가지 안건을 제안하고 각 위원들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였다.

따라서 위 안건 제2항의 취지대로 종래 1933년까지로 예정된 편찬 및 인쇄완료 계획을 1년 연장하여 193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고 별실에서 원고·차입 사료의 복본·사진류를 전람한 후 폐회했다.

편수 · 인쇄 예정표

편 연도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1930년도	전반기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후반기								
1931년도	전반기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후반기								
1932년도	전반기	인쇄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편 수		
	후반기						인쇄		
1933년도	전반기			인쇄	인쇄	편 수	인쇄		
	후반기					인쇄			
1934년도	전반기				인쇄	인쇄			
	후반기								

인쇄 책수 예정표

편 연도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계
1932년도	전반기	3책						5책
	후반기						2책	
1933년도	전반기	2책	3책				2책	10책
	후반기				3책			
1934년도	전반기				7책	8책		15책
	후반기							
계		3책	2책	3책	10책	8책	4책	30책

제4차 위원회

1930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중추원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 구로이타 고문, 이마무라 · 시노다 위원 이하 11명, 하리마 · 이나바 양 간사가 참석하였다. 고다마 회장의 개회사가 있고 간사의 보고가 있는 후 위원들의 질문으로 들어갔다.

오다 위원

“지난번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면 제1편은 1932년부터 인쇄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면 1931년부터 인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로이타 고문

“오다 위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위원회에서 제1편은 가능하다면 1931년부터 인쇄에 착수하여 한다는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편수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제1편과 제2편은 지금 완성된 원고에 약간만 손질을 하면 인쇄할 수 있을 만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문제는 예산과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국의 사정을 알아보니 그쪽의 의견으로는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쇄비에 관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대략 500페이지 정도의 책을 3권쯤 인쇄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쇄에 착수하게 되면 조선사편찬위원회 발족 당시의 편찬지침에 따라 제1편은 편년체가 아닌, 기록이나 사적의 원문만을 그대로 종류별로 수록하여 인쇄하는 것으로 하지만, 제2편 이하는 제1편과 달리 본문만을 인쇄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 원고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1편의 체재와 제2편 이하의 체재는 다릅니다. 제1편은 중국·일본·조선의 고사적을 수집한 그대로 인쇄합니다만, 제2편 이하는 본문만을 인쇄하고 사료의 원문은 인쇄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인쇄문제에 대하여 지난번의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료 자체를 인쇄하려고 하면 매우 방대한 것이 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문만 인쇄하는 것으로 그치고, 본문과 사료 두 가지 모두를 갖춘 복본은 대학이나 도서관 등에 남겨서 보존하고, 일반 배포용에는 본문에 사료의 명칭만을 기재하여 출처를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1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에 실려 있는 갖가지 기사를 하나로 묶어서 본문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같은 것은 각각 그대로 싣고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적고 주해문을 붙여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최남선 위원

“편수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1편의 편수범위입니다. 이 요람에 따르면 신라통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반도 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으로 역사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집어넣을 것입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반도사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반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제7편은 갑오개혁 때까지 편수한다는 것입니다만, 그 이후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입니까?”

이마니시 위원

“제1편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고대의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는 민족을 중심으로 하느냐, 영토를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1편은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편찬합니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민족의 이동에 관계가 있는 한,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는 주위의 여러

민족들에 관한 기사도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영토가 반도 밖에 까지도 걸쳐 있습니다만 물론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남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신족(肅慎族) 같은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민족입니다만, 저는 조선사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는 발해 같은 나라도 조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취급할 방침입니까?”

이마니시 위원

“숙신은 연대문제상 역사학에서 취급하기보다도 인류학·민족학의 연구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해도 조선사에 관계가 없는 한에서는 생략합니다.”

최남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고대사는 민족 본위로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 지리 본위로 취급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 본위로 취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대단히 복잡하고 애매한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민족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고대민족에 관한 사료는 조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사적들에서도 산견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면밀히 조사하여 빠짐이 없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것들을 모두 망라한다 해도 그다지 방대한 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장래에 도움을 주고, 또 조선민족은 인종학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선의 민족과 문화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방의 여러 민족관계 사료는 전부 일괄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마니시 위원

“최 위원의 말씀에 대하여 이 분야의 담당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료와 사설을 구별하는 일인데, 사료는 가능한 한 수집하지만, 사설을 수집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다마 회장으로부터

“조금 전 구로이타 고문의 말씀과 같이 내년도부터 인쇄에 착수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으므로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폐회하였다.

제5차 위원회

1931년 8월 25일 제5차 위원회를 중추원에서 개최하였다. 회장인 이마이다 정무총감, 권중현 · 구로이타 고문, 우시마 · 시노다 · 오다 · 이마니시 · 임 · 어윤적 · 하리마 · 이능화 · 정만조 · 이병소 · 윤영구 위원이 참석하여 이마이다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우가키 총독의 다음과 같은 훈시가 있었다.

“조선사편수회 제5차 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몇 마디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조선사를 편찬하는 일이란 통치방침상으로나 학술상으로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인 것임은 구태여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본회가 발족된 이래 벌써 수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 예기한 바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 노고를 깊이 치하하려 합니다. 이제 편찬위원회의 각 부에서 하나하나 원고를 완성하여 인쇄에 들어간 것도 있으니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한층 더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어서 이마이다 회장으로부터

“본회의 사업경과를 보면 사료의 일반채방작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또 지난 1927년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한 원고는 점차 완성되어 금년도부터 제1편 · 제2편의 일부는 마침내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찬사업이 겨우 4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고문 · 위원 제위의 열성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훌륭히 끝맺는 것은 더욱 어렵다.’라는 옛사람의 가르침도 있는 것이지만, 본회의 사업은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층 정진하여 총독각하의 뜻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회무에 대해서는 간사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 정리를 끝낸 대주종가(對主宗家) 사료 중 몇 가지를 별실에 진열해 두었으므로 나중에 천천히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의안 제1 ‘인쇄장소 결정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경에서 인쇄를 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지만, 한편 교정을 보기 위해 직원을 동경에까지 출장시켜야 하므로 예산을 극도로 절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교정을 보기 위해 직원을 장기간 체재시켜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편수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이곳에서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의안 제2 ‘인쇄원고를 위원회에 부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원고를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면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도 있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본회에 심의부를 두고 이나바·홍희·나카무라 3명의 수사관과 이마니시 촉탁을 심의부원으로 하여 심의케 하기로 결정했다.

의안 제3 '명칭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고본조선사(稿本朝鮮史)' 혹은 '조선사고(朝鮮史稿)' 등의 안도 있었지만 결국 '조선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위의 세 가지 의안이 결정되자 구로이타 고문이

"제가 이번에 이곳으로 온 것과 때맞추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사의 편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인쇄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총독각하와 정무총감 각하의 진력에 힘입은 것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예산 사정으로 지체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앞서 어떤 위원으로부터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앞서 편수담당 간사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있었던 대로 편수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심의부를 두고, 그 부원으로는 본회의 아니바·홍희·나카무라 3명의 수사관과 이마니시 촉탁을 위촉하여, 완성된 원고를 정밀히 심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거쳐 인쇄에 넘기게 한 일은 자극히 합당한 일이며 미리 정한 방침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여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932년도에는 6책, 1933년도에는 10책, 1934년도에는 11책을 인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월 평균 1책 꼴이 되어 심의작업도 매우 빨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편부의 원고작성 작업과 함께 심의작업도 병행시켜 예정된 기간 내에 완성시킬 예정이었지만 1923년의 지진 피해 때문에 1924년 위원회에서 2개년을 연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전에 편수담당 간사가 보고드린 방침대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말씀 덧붙일까 합니다. 그것은 원고가 심의부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다시 위원회로 넘겨져 그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인쇄에 돌려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원고는 일단 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정된 방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고 다시 심의부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위원회에는 부의하지 않고 바로 회장의 결재만 얻어 인쇄에 넘기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일이 위원회에 부의시키는 것으로 하면 매달 위원회를 열든가, 각 위원들에게 돌려서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책 1권당의 원고심의에 1, 2년이 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심의부가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원고작성과 인쇄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이마이다 회장이

“지금 구로이타 고문의 말씀처럼 인쇄에 넘기기 전에 원고를 일일이 위원들에게 회람시키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고, 시간의 촉박함도 있으니 완성된 원고는 심의부에서 맡아 심의하여 바로 인쇄에 넘기기로 하고, 다만 그 내용에 중요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들에게 상의할 기회도 있을 것이므로 구로이타 고문의 의견대로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라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여러 위원들이 이에 찬성함으로써 이마이다 회장은 다시

“그러면 인쇄에 넘기기까지의 절차는 구로이타 고문의 의견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로이타 고문으로부터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시켜 중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희망의 말씀이 계셨는데, 회장으로서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예산사정을 감안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들 절약 위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본회에서도 절약할 여지만 있다면 절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희망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몇 마디 말씀드려 듭니다.”

라는 말과 함께 폐회하였다.

제6차 위원회

1932년 7월 21일 중추원에서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장인 이마이다 정무총감, 권중현·구로이타 고문, 우시마·시노다·임·어·마쓰모토·오타니·정·오다·이능화·이병소·윤·최 위원, 마쓰모토·엄·이나바 간사가 참석하였다.

이마이다 회장의 인사에 이어 마쓰모토·이나바 양 간사의 업무보고가 있는 후 의사 진행에 들어갔다.

이마이다 회장

“이제 본회의 사업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척되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31년도에는 3권의 책을 인쇄·출판하게 되었으며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에는 6권의 책을 출판해 낼 예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출판은 단지 시정 상 유익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학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믿으며, 이 점에 대하여 참으로 경축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고문·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노력에 기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사업도 1934년도에는 종료될 것이며 금년도 이후에는 인쇄책 수도 해마다 늘어날 것이므로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해주세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위원직과 촉탁을 맡아주셨던 이마니시 박사가 갑자기 서거하신 데에는 애도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박사는 다년간 본회를 위하여 노력해 주셨는데, 그분이 담당하셨던 제1편·제2편의 출판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삼가 그분의 서거에 조의를 표합니다.”

구로이타 고문

“본회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제1편 2책·제2편 1책 합하여 3권의 책이 인쇄가 완료되어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3권의 책에 대해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쭈어 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료의 인쇄에 관한 일입니다. 이 점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부탁드릴 때 본회에서 편수하는 조선사는 일당일파에 치우치지 않고 또 곡필이 없는 공평무사한 역사를 편찬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정확한 사료를 선택하고 그것에 기준하여 본문을 작성하며, 본문과 함께 그 근거되는 사료도 명확하게 밝혀두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쇄를 함에 있어서도 본문과 사료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사료까지 전부 인쇄한다는 것은 시간상, 비용상으로 매우 곤란한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상의하여 『조선사』의 인쇄는 본문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원본이 되는 ‘조선사초고(朝鮮史草稿)’는 인쇄가 끝난 후 적당한 장소에 보관시켜 편수작업의 과정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제1차 위원회의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제로 독자들로 하여금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여해 왔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사료도 인쇄하여 얼마만큼이라도 제1차 위원회의 결의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사료 출판의 건은 물론 사료 전부를 출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출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회에서는 수 년 동안 편수작업과 함께 사료채방작업을 실시하여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선내 각 지방의 명족·구가의 비밀 소장 사료를 차입하여 그 복본을 작성한 것이 1,350여 책, 사진이 2,700여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부 출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공간하는 것은 본회의 편수 취지에 적합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밖에 보통의 간본 중에서도 본회의 사업 개시 후에 발견된 것으로 종래의 유포본보다 좋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본회에서 편수 사료로 채택하게 된 이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사료 출판의 건은 아무쪼록 실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

료출판 전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이라 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내 각 지방의 명족·구가의 비밀 소장물로서 『조선사』에 인용된 것 중 주요한 것만을 골라서 출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선사료사진집(朝鮮史料寫眞集)』이라 하여 채방된 사료와 그 밖의 사진자료를 수록하여 기간 내에 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안에 찬성하신다면 우선 『조선사료총간』으로는 제3편에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집어넣어 출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구규장각소장본(舊奎章閣所藏本) 이외에는 아직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3편의 인쇄와 함께 병행해서 인쇄될 수 있다면, 『조선사』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도와줄과 동시에 학계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다 위원

“지금 구로이타 고문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사료 출판의 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사업이 예산건축이라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미 30권의 책이 예정 이상으로 빨리 나오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성되어 나온 것을 통독하여 보니, 제1편과 제2편 이하는 편찬 방침이 서로 달라 제1편 3책은 사료를 정리해서 그대로 출판한 것으로 일반 연구자들에게 매우 편리하지만 제2편 이하는 강령문에 사료명을 부기하였을 뿐이므로, 말하자면 강령문이 살아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귀한 사료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경성에서는 그 사료를 찾아볼 수 있어도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료를 공개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 조선사 간행의 의의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조선사에 인용된 사료를 모두 출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출판할 것인가가 문제로 됩니다. 이미 간행된 책 중에서 인용된 사료를 검토해 보면 (1) 보통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책 (2) 유포본 중에서도 보통 나돌아 다니는 것보다 좋은 것 (3) 유일본인 것, 이상의 3종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고려사절요』 같은 것이 거기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와 같은 것도 그러한 것으로서, 모두 기본적인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조선사』의 출판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무쪼록 출판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라든가 『일성록(日省錄)』 같은 것도 출판했으면 합니다만, 이것은 다행히 대학에서 『이조실록』을 출판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어쨌든 『고려사절요』처럼 단 하나밖에 없고 달리 볼 수 없는 유일본은 꼭 출판하여 『조선사』의 출판 의의를 한층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약간의 문답이 있는 후, 회장은 구로이타 고문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남선 위원

“이미 완성되어 나온 3권의 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 중, 앞의 것과도 관련되는 것이 있어 그러한 점을 몇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일수(日數)와 간지(干支)의 대조에 대해서입니다. 제2편의 범례에 적혀있는 대로 간지가 있는 일수의 추정을 1880년 내무성에서 간행한 『삼정종람(三正綜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삼정종람』의 일수는 추산 상의 이유에서, 그 중국부(支那部)라는 것도 윤달(朔閏)의 배정이 당시의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실제상의 역일(曆日)과 차이 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사』 제2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무왕 9년부터 향후 1세기 정도 사이에 대충 20회를 헤아리는 형편이고 그중에는 1년에 2번 이상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신라의 역법은 문무왕 때(14년) 당(唐)의 역법을 받아들여 그 후에도 대체로 당의 역법을 적용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지의 추정에서 『삼정종람』과 실제상의 역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의 그것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라 경명왕(景明王) 7년 11월의 삭(朔)은 경자(庚子)로서 큰 달(大尽)이라고 나와 있지만, 중국의 역일에는 신축(辛丑)으로서 작은 달(小尽)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9일이라고 한 무신(戊申)은 대부분 8일로 고쳐야 할 것이며, 그 밖에도 몇 군데 모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고려사』에 간지의 표시가 군데군데 자세하게 나오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제적 착오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역일의 추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삼정종람』에서처럼 일정한 추보법(推步法)에 의거한 역일보다도 오히려 당시의 중국에서 실제 사용했던 역일을 표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요사(遼史)』의 ‘삭고(朔考)’에 보이는 요(遼)와 송(宋)의 역법상의 차이도 있으므로, 어쨌든 역일의 추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内外국 기사의 대조에서 일본과 중국의 왕대나 연호가 교체될 때에는 그 교체되는 월차를 명시하여 두면 한층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양계(南北兩系)의 많은 왕조와 인접해 있는 고려 시대에는 그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실제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원전의 인용이나 고감(考勘)인데, 실로 담당자의 신고의 흔적이 엿보여 죄송스럽기 짹이 없습니다만, 더 한층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동명왕(東明王) 항목에 인용된 『삼국유사』의 「단군고기」 중에 ‘석 유환국(昔有桓國)’이라고 해야 할 것을 후세의 ‘천인(淺人)의 망필(妄筆)’에 기인한 ‘환인(桓因)’으로 한 것 등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단군고기」라는 것은 오래된 기록을 매우 간단히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자일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몹시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환국’ 즉 ‘환(桓)의 나라’와 ‘환인’이라 하는 데에는 전문의 해석상 옛날부터 간단치 않은 인연이 붙어 있었으므로, 가령 한 자의 잘못이라 해도 그 영향은 몹시 큰 바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을 인용할 때에는 설혹 아주 명백한 오류인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며, 실제로 이번의 인용문에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한 좀더

사려 깊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지적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열핏 떠오르는 저의 소견을 더욱더 정진을 바라는 노파심에서 실례인 줄 알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나바 간사

“이미 간행된 3책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지적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일에 대해서 『삼정종람』의 삽순표(朔旬表)가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해서 그것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사』 초고에서는 안문(案文)을 붙여 정정하고 있습니다.”

최남선 위원

역일 같은 것은 『삼정종람』보다 ‘이십사삭윤표(二十史朔閏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질의 · 응답이 있은 후 폐회했다.

제7차 위원회

1933년 8월 14일 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마이다(今井田) 회장, 권중현 · 구로이타 고문, 우시마 · 시노다 · 오다 · 어윤적 · 이능화 · 이병소 · 윤영구 · 정교원 · 마쓰모토 위원이 출석하고, 이마이다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구로이타 고문

“본회의 사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정상(施政上)으로 나, 학계를 위해서도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흔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회는 1922년 아리요시 정무총감 재직 시에 발족되어 이제 12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1922년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10개년으로 하여 본 사업을 완료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번의 뜻하지 않은 관동대지진 때문에 부득이 하여진 일반예산 축소방침에 따라서 2개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급적 그 기간 내에 완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는데, 마침 앞으로 1년 전후면 그 추가예정기간의 기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편찬작업 같은 것만 해도 이제는 별써 그 과정의 절반 이상이 완료된 셈인데, 본회의 이번과 같은 어려운 사업 치고는 결코 바라기 어려운 빠른 진전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했던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출판계획도 이미 확정되고 하여 앞으로 1936년 3월까지 본 사

업이 완료될 수 있게 된다면 연도는 부득이 조금 넘긴다 해도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사업은 아무래도 좀 지연되기 쉬운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정기한인 1935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총간』 출판의 전은 제1차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존의 확인된 사료를 중심으로 편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료채방 작업 과정에서 채집한 것 중에서 편수작업상 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만을 출판하여 일반에 알리는 일은 이번의 편찬사업이 얼마나 신중하고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시정방침상으로나 학계에 대해서도 신용과 권위를 인식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료총간』의 출판을 계획하였던 것이며, 재정형편이 곤란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각국(各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고려사절요』와 같은 매우 좋은 자료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료총간』의 출판에 소요될 금년도 예산안은 정무총감 이하 관계관들의 노력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만, 대장성의 일반경비 삭감방침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작년처럼 홀륭한 것은 만들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 한 번 변통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라는 희망의 뜻을 피력하였다. 마쓰모토 간사가 『사료총간』의 출판계획 목록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 후

구로이타 고문

“이 출판목록은 주로 채방사료와 구규장각(旧奎章閣) 등의 소장본 중에서 아직 일반적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 중 특히 『해동제국기』, 『당장서화첩(唐將書画帖)』, 『군문등록(軍門瞻錄)』만을 출판하고 나머지는 34·35년도에 전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거나 이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 위원

“이 목록에 실려있는 것은 물론 모두 출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살펴보면 대체로 ‘분로쿠노 애키’와 병자호란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조금 다른 분야의 것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로이타 고문

“이 목록에서 분로쿠임진난(文祿壬辰亂)에 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쪽에 관해 의문 나는 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이 계획한 것입니다. 『사료총간』 외에 『사료사진집(史料

寫眞集)』의 출판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료총간』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사료총간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판하는 것이고 사진집은 책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선사』의 도판으로 삽입할 수 없는, 따로따로 낱개로 되어 있는 귀중한 것을 모아서 사진집으로 만들어 본문기사와의 대조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찬성을 얻어 출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오다 위원 등의 찬성이 있었고 곧 폐회하였다.

제8차 위원회

1934년 7월 30일 중추원에서 제8차 위원회를 개최, 이마이다 회장, 구로이타·이윤용 고문, 기타 위원·간사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회장의 인사말, 간사의 업무보고, 고문·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마이다 회장

“본회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본회의 산업도 점점 막바지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더 한층 분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등·권 중현·양 고문께서 서거하신 것은 본회로서는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나바 간사

“『조선사』의 발간예정 총 책수는 1929년 12월 23일의 제3차 위원회에서 1책당 500페이지 정도로 하여 총 책수 30권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편찬업무의 진행과정에서 고려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사료가 예상 외로 대단히 많아져서 도저히 예정책수에 다 집어넣기가 곤란하므로 발간예정 총 책수를 35책으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로이타 고문

“본회의 사업은 처음에 10개년의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만 관동대지진 때문에 2개년을 연장하고 그 후 인쇄형편을 고려하여 다시 1개년을 연장하여 1936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예정 기한 내에 전부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진행상 혹시라도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잔무를 정리한다는 형식을 취해서 나머지를 전부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사료총간(史料叢刊)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작업은 제1차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조

선사의 편찬작업에 인용된 사료 중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대단히 희귀한 것, 즉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출판함으로써 본회의 편찬방침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지난 193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한두 부밖에 없는 사료는 『승정원일기』, 『일성록』과 종가 문서, 기타 조선에 산재하고 있는 귀중한 문집류, 예를 들면 『삼봉집(三峰集)』, 『보한재집(保閑齋集)』, 『모재집(慕齋集)』 등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인쇄함으로써 본회의 편찬방침이 공평무사함을 널리 인식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귀중사료의 인멸을 방지하고 널리 소개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료 자체를 출판하는 일은 그 일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잔무처리 작업의 하나로 하여 되도록 많은 것을 출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판하는 데는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업무에 숙련되어 있는 본회의 직원을 모두 그대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사』의 마지막 부분을 1894년 갑오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의 사실은 편찬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위원회 때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갑오 이후의 시대는 병합 직후 국내외의 사건이 대단히 많고, 또 10개년의 기간을 가지고 그것까지 끝내려 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면 본회의 잔여업무로서 편찬함으로써 수미 일관된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저의 생각으로는 관제에 의한 조선사편수회 업무는 예정대로 1936년 3월까지로 일단 마감하고 다음에는 잔여업무로 하든가, 어쨌든 다른 형식으로라도 사료총간을 많이 출판하고 갑오 이후의 역사도 편찬했으면 합니다.”

최남선 위원

“저 구로이타 고문의 의견대로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은 여러 번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도로 보면 예정기간 내에 남은 부분을 전부 완성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기한에 쫓겨서 일을 급하게 하여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잔무처리라는 방법이 있다면, 사료를 충분히 음미하여 완전한 것을 편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료총간의 충실성을 바라마지 않는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군과 기자 항목은 조선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서는 그것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제1편에 할주(割註)나 두주(頭註)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잔무를 정리하는 경우에 정편(正篇)이나 보편으로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을 편찬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회에서 편찬한 『조선사』는 그 부수와 책수가 매우 방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색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색인도 역시 잔무의 한 작업으로 작성했으면 합니다.”

이나바 간사

“지금 최 위원으로부터 본회와 같은 사업은 두 번 다시 착수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음미하여 완전한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은 제1차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 편찬방침으로 채택된 편년체 형식으로는 그것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슨 왕 몇년 몇월 며칠자에 그것을 집어넣을까, 그 확실한 연대가 없으므로 저희들도 고심하던 나머지 결국 수록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본편에는 수록하지 못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별편의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의 형식으로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위원

“저는 제1차 위원회 때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단군과 기자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 사항을 집어넣을 장소에 대해서는 결국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은 그 사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사상적·신앙적 측면으로 발전해 온 것을 한데 묶어서 별편으로 편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이타 고문

“단군과 기자는 역사적 실재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인 것으로, 사상적·신앙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상적·신앙적 측면에서 따로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편년사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신앙적인 요소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을 수반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만약 그것을 별편으로 편찬하려고 한다면 이와 비슷한 세로 사상적·신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유교·불교 쪽도 역시 별도로 취급하여 편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본회의 사업은 자꾸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최 위원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남선 위원

“단군과 기자가 역사적 실재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그것은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만 적어도 조선인 사이에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 그것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우리들 조선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회 편찬의 『조선사』는 조선인 사이에서는 잘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바 간사

“단군과 기자에 대한 저희들 편찬자 측 입장에서의 편찬경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편의 ‘조선사료’ 항목에 단군기사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단군에 관한 기사가 편찬작업의 기본 사료로 결정·채택된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자에 관한 기사는 이미 중국 측 사료 속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단군에 관해서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전후의 인물인 백문보(白文寶)가 단군의 연대에 관해서 상소한 것이 있고, 또 이조 세종 때에 단군을 제사 모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백문보의 항목이나 세종의 항목에 그것을 집어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저희들은 단군에 관해서 가능한 한 그것을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편년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별편으로서 편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다 위원

“저는 구로이타 고문의 희망대로 『조선사』의 본편은 1935년도로 일단 끝내고, 뒤에는 잔여업무라는 형식으로 『사료총간』을 많이 출판하고, 편찬 연차를 연장해서 갑오 이후의 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은 첫째로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장각하의 진력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단군에 관한 문제는 편찬담당 간사로부터 그것을 집어 넣으려고 노력했던 고심담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조선사에서는 그것을 외사로서 따로 취급했던 예도 있으므로 별편으로 편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능화 위원

“단군과 기자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대가 불명하기 때문에 본편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이제 별편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한 사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별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삼국유사』, 『동국통감』과 기타 중국인의 학설 등을 모아서 좀 전에 이나바 간사가 말씀하셨던 고려 백문보의 항이나 이조 세종의 항에 수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이다 회장

“조선사의 편찬연차를 연장해서 갑오 이후도 다루거나, 사료총간을 중간한다거나, 색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은 모두 충실했음을 기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또 당초에는 조선사를 30책으로 완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앞서 간사의 보고대로 제3편에 3책, 제5편에 2책을 늘려 총 35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군과 기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완벽한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체로 예정기한을 어기지 않고 1935년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만, 만약 기한에 쫓겨서 불완전한 상태로 끝마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잔여업무로 취급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상과 신앙과 기타 문화 분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후일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론짓고 폐회하였다.

제9차 위원회

1935년 7월 5일 중추원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마이다 회장, 구로이타·야마다·이윤용 고문, 우시마·시노다·오다·이능화·이병소·정교원·오타니·후지다·와타나베 위원이 참석하고 이마이다 회장의 개회 인사에 이어 다음과 같은 토의에 들어갔다.

이나바 간사

“단군 기사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는 본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여러 가지 희망사항도 있었으므로 편찬과정에서는 각별히 주의했던 것입니다만, 공민왕 24년과 폐왕³⁾ 원년조에서 합당한 기사(일문보 사망)를 검출하여 단군에 관한 고래의 문현을 채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미 배본되었으므로 여러분도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미 간행된 『조선사』 중, 본문의 하단에 주를 붙였던 사료전명의 기록방식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문집에는 존칭을 붙이고(『우암선생년보(尤庵先生年譜)』), 어떤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명재유고(明齋遺稿)』). 이와 같은 일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에서는 서명은 모두 원래의 제목 그대로를 채록한 것뿐이며, 편찬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로이타 고문

“지금 노세타니(野世溪) 간사로부터 서무보고가 있었고, 또 이나바 간사로부터 편수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로 완결짓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최초의 예정대로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대로 예정된 35책 중 현재까지 간행된 것은 21책뿐이고 그 외에 또 2책이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간행된 것을 제하면 결국 14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5책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30책의 분량으로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편찬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중에 규장각 도서뿐만 아니라, 본회에서 수집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또 지방의 구가의 소장본 중에서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진귀한 사료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편찬내용에 집어넣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도중에 35책으로 변경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정무총감께도 상신하였던바 모처럼 여기까지 일을 진행시켜 왔으므로 35책으로 중간해서라도 조선사로서 보다 완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필코 금년 안에 완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진행

3) 고려 32대 우왕.

상태로 보아서는 아무리 해도 금년도 안으로는 완결을 보지 못할 것 같고 적어도 내년(1936년) 1년은 꼬박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감각하게 전에도 여러 번 기간연장을 상신한 바 있고, 특히 1935년도까지는 꼭 완결짓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완성되는 날이면 고대문화·민족문화의 발전을 생각해서도 그 일이 매우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또 학계에 대해서도 크게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아무쪼록 금년 1년 작업을 계속해서 완벽한 것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책 발간 예정에 비추어 현재까지 간행된 것은 21책에 불과하지만 책 1권의 분량이 처음 예정했던 바로는 500페이지 정도이었던 것이 실제로 간행된 것을 보면 약 700페이지나 되고 있으므로 이미 간행된 21책만 해도 1책의 분량이 700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500페이지 3책의 예정 페이지 수에 비하면 훨씬 그것을 상회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작업진도는 결코 완만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동안 작업을 맡아주신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며, 이 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5편부에서는 이 사업에 많은 경험을 쌓아 오신 흥희 수사관이 사망하시고, 또 본 사업에 처음부터 관계해 오신 세노 촉탁도 잇따라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잃은 것은 본회로서도 매우 통절한 일이지만, 본년도의 예정편찬을 진행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노력을 편수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충분하게 긴장하고 일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었던 본 사업에 관계하면서 편찬하는 일에 더욱 숙달하신 분들을 한번에 두 사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금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가는 대에 있어서 각 위에 대해서도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한 6책을 본년도 내에 진행한다고 하는 것도 과연 예정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떨까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노력을 부탁드려서 반드시 10년도 내에 이 6책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8책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한 일을 그 진행 중에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심히 유감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반드시 속행해서 처음 목적인 조선사의 완벽을 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중 이 사업이 속행되게 해서 그 마지막 1년 더욱더 힘을 써서 긴장하고 이것을 완성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각 위 및 편수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결심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11년도에도 이 사업의 진행이 계속 되기를 총독각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가 완결되는 것을 이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11년도에 할 수 없는 부분은 12년도에 잔무정리 형식으로 환성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사』의 마지막 부분을 어느 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서 이나바 간사로부터 1894년 갑오까지로 한정할 예정이라는 대답이 있었던바, 구로이타 고문이 거듭 그 점에 관해서는 일한병합까지를 편찬내용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자는 논의가 제1차 위원회 석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한데 묶어서 병합까지의 것을 편찬하려 한다면 당초의 편수목적을 확장하는 일이 되고, 일종의 사업목적 변경이라는 형태가 되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일단 완결한 후에 다시 고려해보기로 하는 것이 본회 설치의 취지로 보아서도 좋을 것이며, 어쨌든 당초의 예정대로 갑오년까지의 역사를 일단 완성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회장·위원·간사들 사이에서 사업완료 연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36·37년도까지 예정된 35책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문·위원 간담회

1936년 9월 27일 정무총감 관저에서 개최되어, 구로이타·이윤용·하야미(速水) 고문, 오다케(大竹)·시노다·오다·이(能化)·윤·최·후지다·오타니 등의 위원과 간사가 출석하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구로이다 고문의 의견·희망 등을 듣고 폐회하였다.

〈출전 : 第三項 委員會の経過及び其の重要決議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38년, 32~75쪽〉

9) 조선사편수회 편찬사무의 분담과 예산, 출판

(전략)

제7항 편찬사무의 분담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자 먼저 사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위원 3명이 중심이 되어 조선 내의 사료 채방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1925년 6월 조선사편수회 관제가 공포되고 보다 많은 직원을 충원하게 되었으므로 1927년 6월 사무분장내규를 정하고 편수 사무를 분담시켜 마침내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선시편수회사무분담표(1927년 6월 1일 현재)

1. 편수사무

(1) 사료의 수집

채방부 수사관	홍희
정비부	촉탁 나카무라 히데타카

(2) 사료의 편찬

사적정본(史籍定本)	촉탁 이마니시 류
사적해제(史籍解題)	수사관보 다카키쓰 타쿠지
직관표(職官表)	수사관 홍희

(3) 조선사의 편찬

제1편부(신라통일 이전)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보 이병도
제2편부(신라통일 시대)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보 이병도
제3편부(고려시대)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보 이병도
제4편부(조선시대 전기: 태조에서 선조까지)	촉탁 나카무라 히데타카 수사관보 쓰루미 류기치

제5편부(조선시대 중기: 광해군부터 경종까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수사관보	다카키쓰 타쿠지

제6편부(조선시대 후기: 영조부터 갑오개혁까지)

촉탁	세노 마구마
----	--------

2. 부 속

(1) 도서부 촉탁 나카무라 히데타카

(2) 정비부 촉탁 나카무라 히데타카

촉탁 시부에 게이조

그런데 이상의 직원들에 의해 편찬업무가 진행되던 중 1927년 12월에 시오다 수사관보가, 1928년 4월에는 쓰루미(鶴見) 수사관보가 각각 퇴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에 따라 증원의 필요가 있어 1929년에는 신석호·오기하라·조한직, 1931년에는 소노다 등을 채용하여 편찬업무를 계속해 왔는데 1932년 5월에는 제 1·2·3편부의 주임인 이마니시 류 촉탁의 사망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이 있었다. 또 1931년부터는 마침내 조선사의 인쇄에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직원을 보충하는 일이 급박하여져 1933년 3월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구찬서, 동년 4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동년 9월 슈도 요시유키(周藤吉之·마루가메 긴사쿠(丸龜金作, 1934년 4월 구로다·이시하라, 동년 6월 마쓰오카 등을 보충하고, 또 현 직원들로 하여금 겸무하도록 하여 편찬과 인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 후 1935년 1월에는 홍희 수사관, 5월에는 세노 촉탁의 사망으로 편찬업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일치하여 노력한 결과 그대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1937년 초에는 거의 원고작성을 끝내고 연도 말에는 인쇄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직원의 각 편별 분담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각 편별 분담자 성명 일람

간사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제1편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	스에마쓰 야스카즈
제2편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	스에마쓰 야스카즈
제3편	촉탁	이마니시 류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스에마쓰 야스카즈
	수사관보	오기와라 히데오
	촉탁	시부에 게이조, 윤용균
제4편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 신석호
	수사관보	시오다 후기조, 쓰루미 류기치
	촉탁	가와구치 우키즈, 권중익, 슈도 요시유키, 마루가 메 긴사쿠, 구로다 세이조, 후지이 세이이치
제5편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홍희, 스에마쓰 야스카즈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큐지
	촉탁	세노 마구마, 구찬서, 조한직, 이시하라 토시오, 이능화, 다나카 한지로
제6편	수사관	다보하시 기요시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큐지, 타가와

총탁	세노 마구마, 소노다
	이능화, 조한직
조사부 수사관	홍희
총탁	박용구, 육종윤, 조중관
도서부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
서기	현양섭
총탁	시부에 게이조
정비부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타카
서기	현양섭
총탁	시부에 게이조, 마츠오카
심의부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나카무라 히데타카, 홍희
총탁	이마니시 류, 다보하시 기요시
인쇄부 수사관	스에마쓰 야스카즈
수사관보	이종명
총탁	마츠오카, 구로다, 시부에 게이조

* 비고 : 본 표에는 편수 도중 사망 전 ·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앞의 관직명은 반드시 편찬종사 중에 종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제3절 사업의 계획 및 완성

제1항 기간과 예산

조선사편찬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조선사의 완성예정 연한을 10개년으로 정했었지만 1923년 관동대지진 한 재정형편 때문에 기간을 2개년 연장하여 1933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본회의 사업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1925년 6월 6일 새로운 조직의 관제를 공포하고 예정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조선에 걸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이 발견되는 중요한 사료의 분량이 더 많아져 편찬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1개년을 더 연장했다. 하지만 본회 제1차 위원회의 희망에 따라서 중요사료를 출판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다시 1개년을 연장하여 1935년도로서 완료할 예정을 세웠다. 그 후 편찬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료의 분량이 계속 불어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발간 예정 책수를 다시 5책 5권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정연한인 1935년도까지도 완성시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또 2개년을 더 연장해서 1937년도에 겨우 완성을 보게 되었다.

즉 최초의 예정으로는 10년에 걸쳐 조선사 30권(1권당 약 500페이지, 합계 15,000페이지)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이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16년에 걸쳐 『조선사』 35권(24,000페이지)과 『조선사료총간』 20종, 『조선사료집진』 3질을 편찬하고 1938년 3월로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본사업의 소요예산은 초년도에는 17,640엔으로 하되 1923년에는 증액할 예정이었지만, 관동대지진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여 겨우 5천 엔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본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1924년도부터는 해마다 6만 엔씩을 앞으로 10개년간에 걸쳐 배정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24년도에도 진재의 여파가 계속되어 예정된 만큼의 예산을 증액받지 못하고 겨우 35,990엔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다.

1925년도에는 관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겨우 42,628엔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1926년도에는 구 대마도주 종백작가의 소장 문서 구입비를 포함하여 67,628엔을 배정받음으로써 동년 5월 대마도주의 조선관계 문서를 25,000엔에 구입했다.

1927년도에는 예산긴축방침 때문에 5,000엔이 감액된 62,628엔을 배정받았다. 1928년도는 전년과 같았지만, 192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7,352엔이 증액된 69,980엔을 배정받아 수사관보 2명, 촉탁 1명을 증원함으로써 편찬사업이 조금씩 진척되기 시작했고, 또 앞서 구입한 종가 문서의 정리작업 등을 처리할 수 있었다.

1930년도에는 다시 전반적인 재정긴축방침 때문에 5,500엔이 삭감되어 실행예산으로서 64,480엔을 배정받았으므로 사무비를 절약하여 사료를 등사하였다. 1931년도에는 조선사의 인쇄비조로 3,600엔을 요구했지만 예산긴축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3,312엔이 삭감된 61,168엔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여비 등을 절약하여 조선사 3책을 인쇄 간행했다.

1932년도에도 역시 총독부의 일반방침에 따른 예산긴축의 결과, 서기 1명을 감원시키고 55,453엔의 예산을 배정받아 조선사 5책을 인쇄, 간행하였다. 1933년도에는 전년과 같이 55,453엔의 예산을 배정받아 조선사 6책을 인쇄, 간행했다. 그리고 조선사료총간 제1편 『고려사절요』 24책은 본회의 예산으로 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사정으로 본부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여 간행했다.

1934년도에는 종래의 기준 예산인 55,003엔과 더불어 『조선사료총간』 및 『조선사료집진』의 인쇄비로서 32,567엔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25,525엔이 증액되어 합계 80,528엔을 배정받았다. 그리하여 이 해에는 『조선사』 6책과 『조선사료총간』 3종, 『조선사료집진』

(상) 1질을 인쇄 간행하였다.

1935년도에는 전년보다 285엔이 삭감된 80,243엔의 예산을 배정받아 『조선사』 6책과 『조선사료총간』 6종, 『조선사료집진』(하) 1질을 간행하였다. 1936년도에는 80,243엔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므로 『조선사』 6책과 『조선사료총간』 5종, 『조선사료집진』(속편) 1질을 간행했다.

1937년도에는 81,003엔의 예산을 배정받아 『조선사』 3책과 『조선사료총간』 5종을 간행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본 사업은 16년의 기간과 90여만 엔의 경비를 사용하여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부록 1 참조). 또 1938년도에는 35,000엔의 예산으로 『조선사』의 색인·연표 작성작업과 갑오 이후의 사료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연도별 소요경비 내역을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소요경비 일람표

연도	주임 봉급	판임 봉급	사무비	합 계	
1922년도	—	—	17,640	17,640	(결산)
1923년도	—	—	22,640	22,640	"
1924년도	—	—	35,991	35,991	"
1925년도	8,892	4,380	29,356	42,628	"
1926년도	8,857	6,802	51,969	67,628	"
1927년도	8,849	6,752	47,127	62,728	"
1928년도	10,599	7,568	44,561	62,728	"
1929년도	9,299	4,705	55,976	69,980	"
1930년도	11,231	7,170	46,079	64,480	"
1931년도	9,967	6,778	44,423	61,168	"
1932년도	10,268	6,841	38,344	55,453	"
1933년도	10,297	6,604	38,552	55,453	"
1934년도	10,827	6,299	63,402	80,528	"
1935년도	9,925	6,138	64,180	80,243	"
1936년도	12,071	3,181	64,991	80,243	"
1937년도	15,978	1,918	63,107	81,003	"
1938년도	6,838	4,164	23,998	35,000	(예산)
계	143,898	79,300	752,336	975,534	

제2항 인쇄 및 배포

조선사는 1931년부터 인쇄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 인쇄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1931년 4월의 고문·위월 간담회에서는 동경에서 인쇄하기로 하고 그 인쇄소 등의 교섭은 구로이타 고문에게 의뢰했는데, 그 후 검토해 본 결과 동경에서 인쇄하는

것은 교정작업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자를 동경에까지 출장 보내야 하기 때문에 편수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원본 대조상의 곤란한 점 같은 문제도 있고 기타 불편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다시 협의한 결과 경성에서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근택상점 인쇄부·조선인쇄주식회사·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인쇄의 체재 등을 설명하였던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는 지정한 활자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퇴하고, 나머지 2개사가 경쟁입찰에 응한 결과, 조선인쇄주식회사로 하여금 1931년도부터 1937년도까지 계속해서 『조선사』 전 35책을 인쇄케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사료총간』과 『조선사료집진』도 근택상점 인쇄부·조선인쇄주식회사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붙여 인쇄·간행케 하였으나 그중 일부분은 원본의 차입 곤란 또는 설비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도의 편리당(便利堂)에서 인쇄·간행케 했다.

『조선사』 간행의 주된 목적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널리 세상에 유포시켜, 조선사에 대한 종래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고 조선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하는데 있으므로, 본서의 배포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인쇄회사로 하여금 염가로 판매케 하고 또 본회에서 직접 배포하는 것은 주로 도서관·학교·조선사연구자 등에 한정함으로써 널리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용케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했다.

제4절 조선사료총간

1925년 12월의 제1차 편수회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본회에서 수집한 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 『사료총간』이라는 제목으로 번각(翻刻)출판하기로 했다. 즉 『조선사』에 인용·수록된 사료는 다만 그 사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문은 모두 생략하므로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 중요 사료의 일부를 출판해서 『조선사』와의 대조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수집한 사료 중 가장 귀중한 것 20종만을 뽑아 원본의 형태에 따라서 프로세스판(寫眞製版)·콜로타이프판 또는 활판으로 인쇄했다. 그리고 방대하여 전권을 인쇄하기 곤란한 사료·문서·화상·필적 등 225매를 콜로타이프판으로 인쇄하여 『조선사료집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해제를 붙여 상편·하편·속편의 3질로 묶어 간행하였다.

〈출전 :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38년, 106~122쪽〉

10) 조선사편수회의 의의(사설)

(1)

이번에 조선사편수회관제(朝鮮史編修會官制)가 공포되었다. 동 회는 총독부의 관리에 속하고 조선사료의 수집, 편찬 및 편수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무총감이 회장이 되며, 고문과 위원으로 총독의 주청에 의해 내각에서 이를 임명하고, 기타 간사 및 편수관, 서기 등의 직원을 두게 되었다. 동 사업은 물론 지금부터 새로 착수하는 사업은 아니오, 이미 1922년에 조직된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한참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관제의 공포는 이를 국가적 문화사업으로 삼는 까닭이라. 나는 이렇게 진전되는 조선사의 완전을 확실히 기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조선사의 편찬이라 함을 통치상 하나의 정책으로 고찰할지 모르나, 본 사업은 결코 목전의 정치적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니오, 조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은 실례를 들어 논증하여 오직 과학적 진실을 구함에 그 문화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사이토 총독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조선사의 편찬방침을 성명한 바 있지만 본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사가의 인선을 볼지라도 그 학자적 양심과 과학자적 태도에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나는 권위 있는 조선사의 편찬에 의하여 조선 자체의 진실을 구한다. 그 진실이야말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이해와 배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전대의 통치자 중에는 이 진실이 염폐되어 진위의 결합을 강제하고자 한 것 같으나, 사이토 총독이 단연히 구방침을 버리고 국가적 수사의 대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문화정치의 완벽을 기함에 불과하다. 설령 조선 사실에는 일본과의 관계상 의미 없는 일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추호도 은폐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와 반대로 일선 관계의 근거가 될 사실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을 과장할 것도 아니다. 진실에 입각한 것보다 이상의 호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일의 조선인은 완전한 조선사를 얻어 전통 문화의 가치와 민족적 심리의 진상을 깊이 알게 될 것이요, 또 일본의 위대한 면목과 사명은 조선사의 광휘에 의하여 일층 선명하게 될 줄로 믿는다.

〈출전 : 朝鮮史編修會의 意義, 『毎日申報』, 1925년 6월 13일〉

11) 조선사편찬계획에 대하여,

80만 엔을 유해(有害)하게 소비치마라(사설)

(1)

사이토 마코토 씨가 조선통치의 임무를 맡은 이후 각종의 소위 문화정책은 그 본류가 일선융화에 있다. 일선융화에 노력하겠다는 자이면 어떠한 협잡배라도 이에게 금전과 관력을 제공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 없이 하여왔다. 이번에는 80만 엔의 예산으로 10년 계획을 세우고 조선 역사를 편찬할 터이라는데, 머지않은 시기에 구체적으로 관제가 발포되리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 역사 편집에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이나바 씨의 의견이라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근래 조선인 사이에는 조선인의 희망하에 기록된 역사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번 이 사업으로 이러한 결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하기를, “일한병합은 일본의 정복욕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으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니 한국은 동양화란의 원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 인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합된 것이니, 이 병합의 목적을 진실하게 편찬 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2)

조선총독부 계획으로 편찬하는 사업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불완전, 혹은 유해무익한 역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재래 조선인의 독립 국가가 있던 시대에도 완전한 역사가 되어 온 적이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치자의 지위에 있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자로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과거에 있어서 공정하고 충실한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 예가 하나도 없었으니, 어찌 조선총독부 계획만 헐책할 수가 있으랴. 그러나 우리 조선인의 경제력으로는 80만 엔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부담이요, 이것이 위에서 서술한 현하의 정책과 또는 이나바 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허위와 기망을 일삼는 재료를 작성하기에 소비될 염려가 적지 않으니, 총독부 당국자와 또는 실제 역사 편집에 참여할 인사들의 그 학자적 품격과 인간으로의 양심을 향하여 일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나바 씨가 말한 바와 같이 “일한병합을 일본의 정복욕에 인하여 된 것이라”고 보는 역사안의 소유자와 “동양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는 자간에 학자 자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에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후자를 고집하

는 자로써 그네가 선전하는 표어를 진리화하기 위하여 10년간을 두고 거대한 경비로 계통적 서물을 작성할 터이니, 이것의 사학적 가치나 사회학적 의의는 의문이라고 할지라도 정략상으로는 매우 유력한 변호자의 지위를 점할 것이다. 10년간에 80만 엔의 경비로 수집하고 통일한 기록을 부인하려고 하면 그에 대등한 노력의 결정이 아니고는 타인을 수긍시키기 어려우리니, 과연 만일 금번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의 사실과 이론이 정곡을 잃은 것을 발견할 때에 사실은 흑백이 명백하지만 제삼자를 수긍시키기에 충분한 반박론을 조직할 수 있을지는 다소 염려하는 바이며, 따라서 일반과 같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출전 : 朝鮮史編纂計劃에 對하여, 『東亞日報』, 1925년 6월 13일〉

12) 아사인수(我史人修)의 슬픔, 최후의 정신적 파산(상, 하)(사설)

(1)

정당하여야 할 물건이 너무 부당하게 쓰이기 잘하는 것 중에 역사라는 우심(尤甚)한 일물(一物)이 있다. 똑같은 기술과 해명으로써 우리 사회 생활의 보감이 되어야 할 그 본래의 사명은 흔히 뒷줄로 서버리고 도리어 강자, 권력자의 이용물이 되어서 그 비의 부도의 엄폐물이 되고 그 횡역(橫逆) 포악의 변호자료가 됨은 실로 기막히는 억울함(冤抑)이라 할 것이다. 훌륭한 지분(脂粉)이 가장 많이 추악한 얼굴의 화장꺼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많이 비행패덕자(非行敗德者)의 얼굴가리개로 쓰임은 필시 역사 자신의 위대한 실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니, 가장 잘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술의 증거는 되지만 좋은 술이 독한 약같이 악용됨은 술 자신의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역사가 인심농락(人心籠絡)과 언이식비(言以飾非)상에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효력을 가진 것을 진작부터 간취한 자는 강자, 권력자, 승리자들이었으니, 이를테면 어떠한 정치적 환국(換局)에 있어서 약자가 대개 비자(非者)가 되고 마는 것과 같음이 그것인데, 이것이 국가적 대혁(代革)의 경우에는 더욱 그 정도를 높이고 다시 민족적 흥패의 사태에는 가장 몰염치하게 악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이다. 가까운 일로 말할지라도 고려 왕씨의 말운에 관한 이조의 기록 같은 것이 어떻게 승자의 강소(強笑)에 대한 패자의 철원(徹冤)을 상징하는 것이라. 명계(明季)의 실사(實事)에 대한 만청(滿清)의 기전이 어떻게 정복자의 증상적(增上的) 횡포를 표시한 것이냐.

(2)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 갈등은 실로 일조일석의 옛일이 아니요, 또 일기일궐(一起一蹶)이 시득시실(時得時失)하여 어느 한편이 늘 우뚝하거나, 늘 납작하지 않았던 것이 대개 그 실정이겠지만, 최근까지의 단락에 있어서 불행히도 조선은 패자도자(敗者倒者)의 쓴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온갖 권력의 자류를 일본에게 빼앗길 때 기록과 변증의 권능도 그 속에 들게 되매, 이것을 호기로 하여 그네의 몰염치한 위탁가식(僞托假飾)이 자유분방한 날개를 시공의 양간에 벌리게 되어 허다한 교묘한 둔사(遁辭)는 자기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이목을 현란하게 되었음이 기막히다. 그런데 그네의 이러한 노력이 있는 한편에 그 대수자(對手者)인 조선인은 등한과 태만이 정확히 그 반비례를 지어 양자 관계의 사실은 더욱 그 전도반착(顛倒反錯)을 고정하게 되었다. 양민족 일역일순(一逆一順)의 최고조를 보이게 된 최근의 교제 같은 것은 그 진실을 바라는 것이 도리어 어림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연대가 올라갈수록 조선이 우강(優強)한 처지를 가지는 상세(上世)의 사천(事績)까지 이통에 너무 심한 억제로써 변환되며, 아무도 뭐라 하는 이 없이 그것이 사실인양 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억울함(冤屈)이냐.

(3)

알기 쉬운 일례를 말하면 그네의 이른바 신공후(神功后)의 삼한정벌이란 것은 이미 그네 자신의 진보한 역사가의 손에 위조반설(僞造反說)임이 분석논파된 것인데, 이것이 그네들의 국민성 배육(培育)의 자료가 됨은 오히려 참을 만하다 하고 그네만의 손에 선전된 이 자료가 아직 자식이 없는 외국인의 몰비판적인 승인을 얻어 마치 조선이 옛날에도 일본에게 굴욕을 받은 일이 있는 것처럼 통설됨은 얼마나 기막하게 원통한 일이냐. 또 이것이 최근 조선의 국가적 귀무(帰無)에 대한 포원막신(抱冤莫伸)할 일대숙업(一大宿業)처럼 선전됨은 과연 어떠한 비한(悲恨)이냐. 이것이 그대로 우리 자체의 과서(課書)에 들어서 없는 종문서를 억지로 있는 것처럼 믿으라 하는 노력을 내어야 할 수밖에 없는 희비극이야 말은 하여 무엇하랴. 그런데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지금까지 양민족 관계의 기술이란 것이 대개 이 정도의 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음과, 그것이 어느 정도 그대로 세인에게 신용되어 있음과, 이러니저러니 해도 당자인 조선인은 도무지 무관심, 불용의로만 지냄을 볼 때마다 역사가 바르게나 비뚤거나 똑같이 큰 능률의 임자임을 아는 우리의 눈에는 남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마를 수 없다.

〈이상 (상)〉

자래로 일본인처럼 역사로써 위정의 보조물을 삼기 좋아하는 국민이 없다 할 만하며, 또 일본인만큼 역사 환몽(幻弄)⁴⁾으로 말미암아 분에 넘치는 성공을 얻은 국민이 없다

할 만한 것은 지금 일본인의 역사란 것을 본질적으로 살펴본 이는 환하게 아는 바이다. 어느 서양사람 중에 만일 일본인이 역사제조에 발휘한 정도의 천재를 다른 예술이나 문학상에도 드러낸다면, 가장 경탄해 마지않는 작품은 오직 일본에서만 보게 되리라 말한 이도 있다. 그렇다. 그네처럼 예술기교와 문학적 의장이 다분하게 가미된 역사는 진실로 세계에 적다 할지니, 그것은 사실의 심명(審明)이나, 재료의 배치나, 표현의 방식이나, 문구의 정확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구(假構)와 전설을 그대로 실유(實有)와 진경으로 환화(幻化)⁵⁾케 하는 데 비범한 기량과 용기가 있다는 친탄일 뿐이다. 어떠한 나라의 역사든지 그 고대에 속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전설적 취미(臭味)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일본처럼 엉터리 후대적 설화만으로 둥뚱그린 것이 없으며, 고대뿐 아니라 근대까지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는 다시 없다. 문학적 작품인지, 전설적 기록인지의 식별이 일본의 역사에서처럼 현란하고 어지러울 수가 없음은 일본사가 스스로도 왕왕 큰 탄식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지만은 이것이 대개 국민성 도야의 꿀단지요, 위정자 더욱 사상지도자의 화수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선부른 무슨 소리를 하다가는 의외의 봉변이나 보고 마는 상례가 된다. 과연 이러한 기초 위에 이미 일종의 견고한 국민성을 축조하고 또 이 축조로써 최근에 이르러 꽤 큰 국민적 성공을 거두게까지 되었으니, 이만큼 맛들인 역사 환통의 재미를 그네들이 얼른 잊어버리지 못함은 용혹무괴(容或無怪)라고도 할 듯하다.

(2)

그러나 자기네 집안만의 일일 것 같으면 있는 일을 덮는다거나, 없는 일을 있다거나, 화기청마(和氣清磨)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아도고덕(兒島高德)의 이야기가 정말이거나 만든 것이거나, 교과서에는 노하여 찢어버렸다고 대서특필한 풍신수길(豊臣秀吉)에 대한 명국(明國)의 책봉문(冊封文)이 곱게 실물이 남았거나 아니거나, 자기네의 필요대로 마음껏 재미를 보게 두겠지만 자기네의 존영(尊榮)을 위하여 구태여 남을 모함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다면 이 창피를 당하는 이에게 있어 이런 기가 막히는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피아 관섭(関渉)의 역사란 것은 다분히 이런 따위의 것이요, 다시 여기에다 국수발 늘이듯 잡아 뽑은 턱없는 갈개발을 기다랗게 붙인 것들이다. 그것도 고의로, 특별한 용심으로 그렇게 한 것들이다. 자기에게 중요하면 조그만 사실이라도 최고도의 현미경으로 하듯 확대를 하고 그 반대로 아쉬우면 중천한 날이라도 손가락 하나로 가리려 하기를 예사로 하였다. 최근 일시의 패도는

4) 교묘하고 못된 피로 남을 속여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을 뜻함.

5) 우주 만물이 환상과 같이 변화하는 일을 뜻함.

조선인에게 영원한 과거와 주전(周全)한 범위에 있어서 열악자(劣弱者)일 운명을 짚어지게 한 억울함이야 무슨 푸념을 하여야 시원할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 말하면 남을 떠밀고라도 우뚝한 자리에 올라앉은 이가 실상 약은 사람이란 것일 터이요, 약자의 어리석은 말은 할수록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하겠으니, 남을 원망하고 혀물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진상을 천명하는 어떠한 노력과 함께 소극적으로 타인의 무언(諱言)을 절파(折破)⁶⁾하는 어떠한 항쟁이 없는 수오(羞惡)를 자감(自感)하여 역사진(歷史眞)의 파지상(把持上)으로 심성절책(深省切責)⁷⁾과 발분진력(發憤戮力)⁸⁾을 가짐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3)

조선역사의 진실이 엄폐되고 또 매몰된 것은 다만 외교 방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종 없는 악선전 때문에 턱없는 오인을 받는 일도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보다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야 할 많은 것이 깊이 깊이 파묻혀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떻게 소중하든지, 그 영향이 어떻게 커다랗든지 조선인은 모르는 체 위주요, 남에게 내맡기기 위주임은 어찌함인가. 그러다 부족하여 바로 그까짓 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스스로 제 역사를 능멸하며 타매(唾罵)⁹⁾하는 경향조차 생김에는 아연하여 이를 바를 모르겠다. 조선사람이 내버리는 조선의 역사는 다시 한 번 일본인의 손에 넘겨주는 바 되어 이번에 새로 조선사편찬에 관한 관서가 생기고 관리원(吏員)이 나고 어렵다는 재정에서 80만 엔이란 적지 않은 돈이 이리로 찢기고 조급한 성미에 십년 가까운 세월을 이 일에 허비하겠다 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에야말로 무슨 목적을 위한 고의의 곡필을 하지 않겠음을 세간에서 약하는 것이 마치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곧잘 한 것을 자참(自懺)하는 것 같은 등 서두르는 품이 적지 아니하다. 아닌게 아니라 이번 일이 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는 정직한 동기에서 나온 듯하지 않은 것도 아니나, 아무리 그네가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남의 손에 되는 일이 내게 따뜻하기를 바라는 바라는 이가 도리어 억지일 것이오,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네가 또한 일본인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저 그런대로 굿이나 본다 할 밖에 다른 말을 할 것은 없다. 다만 우리 역사를 가지고 남이 무슨 복새를 놓든지 임자 되시는 조선인은 한편으로 □연분연(□然憤然)하시며 흐리멍텅하기만 하사 요만한 자극과 감분이 없으신 꼴을 보고는 조선인이 이미 최후의 정신적 파산까지 하려는 것 아니

6) 세력 따위를 꺾어서 부순다는 뜻.

7) 깊이 성찰하고 심하게 책망함.

8)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함.

9)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경멸히 여겨 욕함.

신가를 염려스럽게 생각할 뿐이다.

〈이상 (하)〉

〈출전 : 我史人修의 哀(上, 下), 『東亞日報』, 1925년 10월 21~22일〉

13) 조선사 문제(사설)

(1)

“조선인에게는 우선 조선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역사에 정통함으로써 병합(併合)의 의의가 명료해질 것이다. 한갓 조선역사를 봉(封)하여 두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조선사의 권위에 대하여 한 일본인의 말이다. 조선인에게 조선사를 잘 알려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인즉 내가 생각하는바 필요론과 매우 다르다. 그를 해설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건국 이래 적나라한 조선사에 정통한 자이면 병합을 도저히 안 할 수 없었던 실정을 충분히 양해하였으려니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 때문에 병합을 해야 했는지 그 의의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이는 일부 일본인의 말이지만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일본인은 제법 많이 있을 줄 믿는다. 이 생각이 바로 되었는지 비뚜로 되었는지는 좀 사려가 있는 자이면 직관으로 판단할 것이다.

(2)

조선사를 깎아 내려 말하는 자는 소위 사대사상이 조선인에게 뺏속 깊이 내려온 것을 들추어낸다. 근세 누세기의 사적(史蹟)으로 보아서 그럼직도 할 것이요, 극동 반도에 있어서 북으로 대황(大荒)을 연(連)하고 서로 한족(漢族)의 대방(大邦)에 이웃하며 동남으로 경도악랑(鯨濤鰐浪)이 헤아릴 수 없는 천참(天塹)¹⁰⁾을 이루고 있는 해국 일본을 끌어 당겨 매양 걸출한 자와 교약한 자들이 일어남이 있을 적마다 심대한 상처를 받음도 사실이었다. 나는 소위 ‘국위국광(國威國光)’류의 문구를 떠벌여 자기임취(自己麻醉)의 존대성(尊大性)을 끄집어내거나 ‘선민선철(先民先哲)’을 들먹여서 감상적 명분론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개척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들의 생활의 과거를 살피는 것이 그 미래를 해석함에 매우 필요하지 않음은 온갖 지배하는 것이 아

10) 천연으로 이루어진 요새지를 뜻함.

닌 것을 아는 이상에 저들이 생각하는 바가 매우 허망한 부유(腐儒)¹¹⁾의 소론(所論)인 것을 단언한다.

(3)

형평(衡平)운동이 조선에 있고 수평(水平)운동이 일본에 있다. 서양에는 백인의 틈에 끼인 유색인종의 운동이 있다. 이 운동에 임하는 자들은 모두 수천 년 동안 거듭거듭 쌓여오던 억압, 주구 등 피맺하고 눈물어린 과거를 돌아볼수록 더욱더욱 치열한 해방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과거 참담하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무한한 반항의 의욕이 돋아지는 것이다. 누가 가로되 그들에게 자기들의 역사를 알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맹에를 메고 억압의 자물쇠 속에서 웃고 있게 되리라고 할 것인가? 조선사를 운위하는 저들 논자의 소견은 허망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본래 제국주의 국가의 주구를 짓는 자들이니 구태여 티낸들 무슨 쓸데 있으랴?

(4)

근일 조선의 위정당로(爲政當路)는 깊지 않은 시일에 적지 않은 공력을 들여서 조선사의 편수를 일단락지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질을 이루었다. 우리들은 아직 전편을 통독하는 노파심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두찬¹²⁾이 있다 한다. 더구나 단군을 말살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뒤섞는 짓도 웬만치 않게 하였다 한다. 그들은 소위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미치지 않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나, 대개 매우 무용한 짓이다. 무릇 구속을 해놓고 압박을 미워하며, 주구(誅求)에 진저리 치고, 해방을 열망하기를 거꾸로 달린 자가 폴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는 자이면, 어찌 반드시 과거사로써 구구히 좌우되는 바 있으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대부분에 있어 백인을 보기를 초인으로써 하고 그에게 항거하려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던 사람들도 근일 자못 벌떼같이 일어나 그 해방을 외치게 되니, 무릇 인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억압에 반항하는 해방의 투쟁이 있을 것이라. 어찌 반드시 역사론을 운위하리오. 그들이 논하는바 대개는 무용의 무용한 것일진저.

〈출전 : 朝鮮史問題 『朝鮮日報』, 1926년 8월 8일〉

11) 생각이 낡고 완고하여 쓸모없는 선비라는 뜻.

12) 전거나 출처가 확실하지 못한 저술. 틀린 곳이 많은 작품을 일컫는다.

14) 나카무라 히데타카, 신간 조선사에 대해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1)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사업은 시작 이래 10년이 지나고 있다. 즉 1922년 12월, 총독부훈령 제64호로 공포된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에 기초하여 중추원(中樞院)에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처음에는 10개년 만에 완성할 예정이었지만, 1923년의 관동대지진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2개년의 연한을 연장하여, 1933년에 완료하도록 되었다. 또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의 관제(官制)가 공포됨으로써, 중추원과 분리하여, 소속관서로서 독립하며 이후의 사업은 착착 진척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더구나 예상 이상의 성적을 올려, 규모의 부족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연한을 1개년 연장하여, 1935년 봄에 편수를 완성하고 출판을 종료할 예정에 있다.

예전부터 조선에서 역사라고 하면, 우선 중국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선인은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오랜 전통을 가진 사대사상 때문인지 아니면 500년간의 주자학이 거의 국교로서 채용되어, 강목류를 가까이 한 탓인지, 가례가 규범으로서 고성(固成)된 대가족제도의 사회에는 족보의 중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인지, 국가조직이 국민 결성에까지 강력한 억제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과거를 아는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당론에 사로잡힌 사회에서는 4색당파의 원류로서만 과거의 여러 사상을 기억하거나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결과인지 어찌 되었건, 조정에는 사관이 있고 역대 왕들에게는 실록이 있고 또 편성된 정사까지 갖고 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확한 자료에 의해 편찬된 일반적인 사승도 적었고, 야사도 볼 만한 것이 없었다. 패사(碑史), 소설, 전기류 라든가, 당론사(黨論史) 같은 것만이 자국의 과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었다. 따라서 근세에는 간간이 탁월한 역사가, 사학자 등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해도 극히 드물고, 대체로는 사물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고 지리를 설명하며 견강부회의 설을 주장하거나 사적을 편찬하더라도 무비판적인 자료를 잡다하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중국문명의 침윤을 받아 온 국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였다. 따라서 오늘날, 반도문화의 유래를 알고, 민족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자가 읽어야 할 사승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고기록, 고문서의 종류로서 사료가 될 만한 귀중한

문헌도 멸실되어 왔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반도사를 편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인의 작은 힘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정통하고, 충분히 고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의 학자와 새롭게 진보한 연구법을 체득한 역사가의 협력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학술적 견지에 서서 공평불편(公平不偏)한 태도로 편수되는 역사를 대성하여 반도의 구폐를 혁파하고, 완전한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조선사편수사업이 시작된 이유라고 할 것이다.

* * *

일본의 조선 연구는 생각 외로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쇄국시대였던 근세를 살펴봐도, 이토 도가이(伊藤東涯)의 동한사략(東韓史略) 아라히 하쿠세키(新井白石),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일한교통의 요충이었던 쓰시마(對馬)의 학자들의 업적도 있고, 또 각종 조선 도서의 복각이나 조선 신사(信使) 내빙(來聘)을 기회로 출판된 일반서적 중에서도 조선 사정의 소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메이지 이후로 국제관계의 중심문제가 항상 조선을 둘러싸고 움직이게 되자 조선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왕성해졌다.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매우 상세해지고, 일한병합을 전후하여 적지 않은 역작이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고대사의 연구와도 병행하여, 일선관계의 연원을 찾아 가고자 하는 시도를 한층 왕성하게 하고,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 하야시 다이호(林泰輔) · 가니지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 · 시라토니 구라기치(白鳥庫吉) ·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 쓰다 사유키치(津田左右吉) · 이마니시 류 등 여러 박사들의 노작을 비롯하여 속속 그 결과가 발표되어 완전히 한 시기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연구가 언어학, 역사지리, 고대사 등 각각의 방면에서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개중에 심한 것은 일견 내선옹화론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조선사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았다. 단지 두세 명 학자의 연구 중에 다소 이채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고고학 방면의 개척이 간노(關野) · 도리이(鳥居) 두 박사 등에 의해 시작되어, 하마다(濱田) 박사에 의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총독부의 조선사편수사업은 때마침 이러한 때에 시작된 것이다.

그 후 10년, 이은 낙랑 고분의 발굴, 경이적인 미술공예품의 출토, 경주 금관의 발굴 등에 세간의 시선이 현혹되어 있는 사이, 문헌에 의한 조선 문화의 연구, 역사에 대한

탐구는 거의 그 모습을 감춘 듯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은 결코 작지 않았다. 전반기는 사료 채방기였다. 당초, 사료의 채방과 수집은 가장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그것은 우선 일본인 사이에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당색에 의한 감정적 간격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나 실제로 사료의 채방에 착수한 결과, 예상 외로 호조를 떠었다. 물론 수백 년 동안 상호간에 장벽을 세워 왔고, 족보처럼 지켜온 조상 전래의 기록이나 고문서가 어려움 없이 제시될 리도 없지만, 일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색의 감정은 누그러지고, 조선과 일본에 걸쳐 각색에 미친 편찬위원의 공평한 선발로 일본의 사이는 근접되어, 두 가지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중화되었다. 또한 수차례 시도된 각 파의 중심 종가에 대한 용의주도한 채방은 마침내 사료 채방을 성공시켰다.

* * *

1929년에 각 도 및 만주에 걸쳐서 일반 채방을 완료하였다. 빌려서 조사한 것은 기록·고문서·사적·문집·영정, 기타 1,240여 종에 이르며, 나중에도 점차 특별 채방을 실행하고 또 자진하여 제공받은 것도 적지 않았다. 특히 명가에서 비장하여 기존에 집안 바깥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던 것이 처음으로 수사의 자료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잘못되었던 사필을 정정하고, 불명한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료로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매우 많다. 이들은 모두 사본이나 사진으로 만들어 축적, 수장(蔵)되었다. 그밖에 1926년 7월에는 쓰시마 구번주 소우백작 집안의 비고에 전해지던 조선관계사료 전부를 구입하고, 또 구규장각(현재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관이다)을 비롯하여 각 곳의 소장사료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주요 사료의 조사서(調査書), 조사요록(調査要錄) 등의 편찬도 이루어지고, 때에 맞추어 전람회도 개최하여 일반에게 그 성과를 알리고, 취지를 이해시키는 데 힘을 쏟은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널리 조선사의 연구에 일대 기여를 해 온 것 또한 세인이 잘 아는 바이다.

이렇게 하여 사료를 수집하는 한편, 1927년 9월부터는 시대별로 분담하여 『조선사』의 편수에 착수하고, 해마다 책 수백 권의 원고를 만들고 있다. 즉 『조선사』는 상대부터 이태왕 갑오년에 이르기까지의 조선통사이며, 편수의 편의상 이것을 6편으로 나누어, 신라통일 이전(신라 문무왕 8년까지)을 제1편, 신라통일시대를 제2편, 고려시대를 제3편, 조선시대 전기(태조~선조)를 제4편, 중기(광해군~정조)를 제5편, 후기(순조 이후)를 제6편으로 하여 제1, 2편은 이마니시 박사에게 촉탁하여 담당하고, 현재 수사관보 스에마쓰 문학사가 이것을 담당하며, 제3편은 수사관 이나바 박사, 제4편은 나카무라 수사관, 제5

편은 수사관 흥희, 제6편은 다시 이나바 수사관이 분담하여 각각 아키우라 촉탁, 신 수사관보, 두 문학사와 세노 촉탁·다카키쓰 수사관보, 두 명이 주로 그 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 * *

『조선사』의 서술은 편년체를 원칙으로 하여, 날짜순으로 간명하게 사실을 들고, 이것을 본문으로 하여 근거로 한 사료를 모아서 수록하고, 참고자료도 함께 게재한 것이다. 단 제1편만은 상대로서 연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조선·일본·중국에 있는 사료에 따라서 전해지는 연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사료는 삼국사기, 일본사료는 일본서기, 중국 사료는 각 정사의 연도를 따라서 각각 사적 및 금석문의 원문을 연도순으로 수록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전승을 가진 동일한 사료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대조·교정하여 요강을 각 조의 앞머리에 들어 본문을 대신하고, 쓸데없는 억측을 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에나 충실하게 사료에 의거하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편수된 『조선사』는 원고가 완성되는 대로 출판할 계획인데, 제1편은 전문을 모두 생략하지 않고 인쇄하고, 제2편 이하는 내용이 매우 많으므로 본문만을 취하고 여기에 사료의 명칭 조목을 상세하게 주기하여 인쇄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 사료에 대해서는 각 편마다 코로타잎 도판을 삽입하여 참조의 편의를 도모한다. 1931년부터 출판에 착수하여 올봄 3월에 제1편 제1권(조선 사료), 동 제2권(일본 사료) 및 제2편을 합하여 3권이 발간되게 되었다. 1932년 이후 또 순차로 인쇄·출판을 계속할 것인데, 모두 완성이 되면 전 30권 즉 제1편은 3권, 제2편은 1권, 제3편은 4권, 제4편은 10권, 제5편은 8권, 제6편은 4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 이미 간행된 3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조선사』 제1편은 신라통일 이전, 즉 편의상 상대부터 무진(戊辰) 신라 문무왕 8년까지를 사료 그대로 수록하고, 이것을 제1권 조선사료, 제2권 일본사료, 제3권 중국사료의 3권으로 나눈 것인데, 이번에 출판된 것은 제1권과 제2권이고, 제3권은 1932년에 간행된다.

제1편 제1권 조선사료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서 찬록된 사적과 금석문에 대

해서 사료가 될 만한 것을 선택하여, 삼국사기의 연도에 따라 수록하고, 그 앞머리에 요강을 들어 나타낸 것이다. 또 사료를 배열하는 순서는, 우선 사적을 들고, 다음에 금석문을 수록하되 또 그 각각에서는 친록 연도순의 선후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배열된 각각의 사료에 대해서 각각 가장 우수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원본의 체재를 유지하여 인쇄하고, 여기에 반드시 이본(異本)을 대교하여 그 차이를 참고 서명과 함께 주기하고, 문장 중의 주요 명사를 두주로 기재하여 연결참조의 편의를 위해 주기를 삽입한 것이 대체로 본서의 체재이다.

지금 본권에 수록된 사료의 명목 및 저본, 대교본을 일람하면, 삼국사기는 정덕(正德) 경주 참본(慶州槩本, 이것은 현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인 구규장각도서본 및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소장본 두 가지에서 결본을 합하여 완본으로 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경주의 아무개가 소장한 완본을 기초로 하여 조선인쇄회사가 발행한 고전간행회 영인본이 있다)을 저본으로 하고 조선 중기의 고(古)활자본으로 대교하였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은 『유방전총서본(遊方傳叢書本)』에 의거하였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은 해인사 소장의 고려참본을,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은 조선시대참본(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관 구 규장각도서)을, 『삼국유사』는 정덕경주참본(이마니시 류 박사 소장본을 영인한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총서본)을, 『고려사』는 조선시대 고 활자본(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관 규장각본)을,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조선 고활자본(위와 같음)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고참본(조선사편수회 소장본)에 의거하고 있다.

* * *

사료 수록의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를 제시하면, 개권(開卷) 제1조로서, 갑자 신라시조 혁거세 거서간 원년(1~5페이지)이 있다. ‘4월, 신라 박혁거세 세움. 호를 거서간, 국을 서라벌이라고 함’이라는 요강 아래에 삼국사기의 권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 거서간, 권12 신라본기의 논찬, 권34 지(志)의 지리 및 삼국유사의 왕력(王曆), 권1 신라 시조 혁거세왕, 권5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등의 조들을 수록하고 있다. 또 갑신 신라시조 혁거세 거서간 21년,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원년의 조(8~19페이지)에는 ‘이해, 신라, 금성(金城)을 쌓음. 고구려, 시조 고주몽 세움’이라고 요강을 들고, 전자에 대한 것으로서는 삼국사기의 권1 신라본기, 권34 지리지, 삼국유사의 왕력을, 후자에 대한 것으로서는 삼국사기의 권13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성왕의 첫 조 및 삼국유사의 왕력, 권1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와 동국이상국집 권3 고율시(古律詩) 동명왕편 및 서, 고구려 호

태왕비 등을 수록하고 또 고구려 시조에 관련하여 삼국유사 권1 고조선(왕검조선)의 조 즉 단군에 관한 사료도 수록하고, 단군에 대해서는 상세한 두주까지 실어서 전설의 유래를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사료의 취급에 있어서 저본을 확실하게 하고, 이체(異體)문자, 기타 특수 체재(體裁)까지 수록하고 이본의 대교를 염밀히 하여 피휘궐화(避諱闕畫)류부터 기사의 원거(原據)의 유래(특히 많은 삼국사기 기사 중의 중국사료에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까지도 명기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의문점을 제시하여 후고에 대비하는 등 형식적으로도 매우 정밀한 검토를 한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삼국사기의 연도를 따른다고 하는 기계적인 사료 배열 이상으로 그 가운데에 편수자의 노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위에 든 단군기사의 취급도 그 일례일 것이다. 특히 각 조에 적당히 나누어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적당한 개별 조에 전문이 수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전체(列傳體)나 금석문 같은 것의 안배에는 편수자의 고심도 보인다. 예를 들어 고구려 호태왕비와 같은 것이 그 일례일 것이다.

또 금석문을 보면, 하나하나 원탁(原拓)에 의거하여 독해한 것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탁(古拓)인 것은 하나하나 이를 대교하여 현재 잔궐(殘闕)하고 있는 부분도 보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신 신라 법흥왕 15년, 고구려 안장왕 10년, 백제 성왕 6년, ‘이 해 신라, 처음으로 불법(不法)을 시행하다’의 조에 수록된 ‘경주 백률사석동기’는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씨가 소장한 『원화첩(元和帖)』에 의해서 보충되고(426페이지), 무자 신라 진흥왕 29년, 고구려 평원왕 10년, 백제 위덕왕 15년, ‘신라, 대창(大昌)으로 개원(改元)함. …… 8월, 신란, 왕 순변(巡邊) 함……’의 조 이하에 수록된 ‘초황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보통 황초령비라고 하며, 함남 함주군에 있는 것)는 총독부 박물관 소장 및 이마니시 박사 소장의 고금석첩(古金石帖) 등에 의해 보충되고(488페이지) 있고 또 새로 나온 마운령비도 이 후자의 조에 수록되어, 초황령비와 대교(對校) · 상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판을 한번 보자면, 삼국사기 정덕경주참본 3가지, 삼국유사 정덕경주참본(이마니시 박사 소장본) 2가지, 고구려호태왕비 ·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 ·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고탁본(박물관 소장본) · 석가문상광배명탁본 각 1가지를 합쳐서 9가지의 코로타입 사진판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판 본문 732페이지, 목차 45페이지의 큰 책이 되었다.

(3)

제1편 제2권은 일본사료인데, 무신 신라 문무왕 8년 즉 일본 덴지(天智) 천황 7년 이전에 대해서 일본에서 찬록된 사적 · 금석문 등으로부터 사료를 검색하고 『일본서기』의 연

도에 따라서 수록한 것인데, 그 배열체재는 모두 제1권의 예를 따르고 있다. 각 조의 모두에 요강을 들고 있는 것 등은 물론이다.

우선 사료의 저본 및 대교본을 보면, 『고사기(古事記)』는 구(舊)집국사대계본(輯國史大系本)에 의거했다. 『일본서기』는 국사대계(國史大系) 육국사(六國史)본에 의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사대계구집본을 참고하였다. 또한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간한 비적대관(秘籍大觀)에 수록된 모든 영인 고사본을 대교하고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는 모두 국사대계육국사본에 의거하였다. 『하리마(播磨) 풍토기(風土記)』는 고전보존회가 영인한 삼조서가본(三條西家本)에 의거하였고, 이노우에 미치야스(井上通泰) 교정본(일본고전전집 영인본)을 참고하였으며, 『이즈모(出雲) 풍토기』는 니시오 노부아키(西野宣明) 교정본(일본고전전집 영인본)을, 『히젠(肥前) 풍토기』는 아라키다 히사오유(荒木田久老) 교정본(위와 같음)을, 『고어습유(古語拾遺)』·『상궁성덕법왕제설(上宮聖德法王帝說)』·『가전(家傳)』은 군서류(群書類)로 경제 잡지사본(經濟雜誌社本)에 의거했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군서류로 원 판본에 의거하여 같은 경제잡지사본 및 신찬성씨록고증을 참고하였고, 『부상략기(扶桑略記)』·『석일본기(釋日本紀)』·『원형석서(元亨釋書)』는 구집국사대계본, 『일本国현보선악영이기(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는 군서류로 경제잡지사본, 『원홍사연기(元興寺緣起)』 및 『유기자재장(流記資財帳)』은 다이고지본(醍醐寺本, 고전보전회 영인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는 동사본(東寺本, 동양문고 영인본), 『선린국보기』는 명력참본(明暦參本, 조선사편수회 소장)에 의거하고 있다. 저본 선택은 아직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일본사료 수집(蒐集)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만큼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사대계본은 보통 본과는 다르지만, 그 교정은 이미 구로이타 박사가 손을 대어 완성한 것이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채록해도 지장이 없었다. 또 다른 것들도 그 원본의 표주(標註)를 체재를 따라 그대로 수록한 후에 영인본류를 볼 수 있는 한 대교하여 보정했으므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다. 특히 삽입된 도판은 『고사기』는 신후쿠지본(真福寺本)을 취하고, 『일본서기』는 교토 다나카(田中)본·도쿄 궁내성도서료본(宮內省圖書寮本)·도쿄 마에다(前田)본·도쿄 이와자키(岩崎)문고본에서 각각 백제기(百濟記)·백제신찬(百濟新撰)·백제본기(百濟本紀)를 인용한 부분 및 스이코기(推古紀)의 중요 각조를 취하고, 원홍사연기·법왕제설·입당구법순례행기의 사진을 추가하는 등 그 채택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

본권의 내용은 본문 352페이지 및 이에 해당하는 연대에 관한 일본사료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를 하나의 예로 보자면, 단순히 조선에 관련이 있

는 일본의 기사로서뿐만 아니라, 전기한 백제기·백제신찬·백제본기처럼 조선 자체에 관한 사적의 일문(逸文)까지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일본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본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채록하고 또한 인쇄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훈(古訓)·고자(古字) 등도 가능한 한 고사본의 의미를 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수록된 사료의 찬록 연차는 대체로 가마쿠라 시대까지 이르며, 무로마치 초기의 것도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개권(開卷) 제1페이지는 신대에서 시작하여 “스사노 오노미고토(素菱鳴尊)가 신라국에 이르러 소시모리(曾戸茂梨)에 거주하다 동으로 바다를 건너 이즈모국(山雲國)에 이르렀다”라고 요강(要綱)을 들고, 일본서기 권1 신대의 모든 조, 이즈모 풍토기 의우군(意宇郡)의 조에서 석일본기의 술의(述義)도 수록(1~4페이지)했다. 또한 스이닌(垂仁) 천황 3년 갑오년에는 “3월, 신라의 왕자 아마노누보코(天日槍)가 오다”라고 하는 고사기 권 중(中)의 아마노누보코(天之日矛) 도래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일본서기』 권6 스이닌 천황 3년 봄 3월 조, 동(同) 88년 가을 7월 무오(戊午) 조, 『고어습유』, 『신찬성씨록』, 『하리마 풍토기』, 『석일본기』 권10 술의에 인용된 『지쿠젠(筑前) 풍토기』, 『선각만엽집초(先覺萬葉集抄)』 권2에 인용된 『셋쓰(攝津) 풍토기』 등에 보이는 관련 기사는 모두 수록하였다(10~17페이지).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유명한 긴메이(欽明) 천황 13년 임신년에는 “……○10월, 백제의 성명왕, 서부희씨(西部姫氏), 달솔(達率), 노리사치게(怒唎斯致契)를 파견하여 석가불의 금동상, 번개(幡蓋), 경론(經論)을 현상했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 권19 긴메이 천황 13년 조를 들고, 상궁성덕법왕제설·원홍사가람연기(元興寺伽藍緣起) 및 유기자재장(流記資財帳)·현계론(顯戒論) 등의 무오년 전래설을 싣고 있는 것을 함께 수록하고, 부상략기·삼국불법전통연기의 기사도 함께 싣고 있다(157~165페이지). 원홍사연기(元興寺緣起) 등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서에서 비로소 처음 구두(句讀)를 표시하여, 활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그리고 서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 신찬성씨록의 교정은 지금까지 본서만큼 심혈을 기울인 것이 없으며, 비록 한정된 번들에 관한 것이지만 본서의 특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4)

다음으로는 제2편인데 이것은 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제1편과는 다소 성질을 달리하며 체재도 다르다. 소위 신라통일시대로서 기사 문무왕 9년부터 을미 신라 경순왕 9년 즉 고려 태조 18년까지로, 대체로 267년간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가 주요한 사료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석문·문집 기타 사적에서 일본·중국의 모든 사료까지도

첨가하여 이에 의해 본문을 찬술하였다. 연도는 간지로 들고, 삼국사기에 따라 여기에 왕 재위의 연차를 병기하고, 또한 일본과 중국의 기년을 주기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월차에 따라서는 편의상 삼정종람(三正綜覽)의 중국 부분에 따라 달의 대소, 월삭의 간지가 주기되고, 일차 및 그 간지의 대비는 모두 삼정종람을 따랐다. 일본사료에 나온 것은 해당하는 일차 아래에 본문을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역의 대조와 월의 삭(朔) · 진(盡)에 대해서는 당시의 역법이 어떠했는지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일차를 명기하고, 조선 · 일본 · 중국 삼국의 사료에서 나온 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오히려 신라의 역법이 확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에서는 어느 정도 편의를 위해 한가지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서에서 삼정종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본문의 각 조에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사료명을 주기하고, 목차에까지도 논거하는 바를 명시하여 참조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명칭을 보면, 조선의 사료로는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는 물론이고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이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그리고 고려사절요 · 조당집(祖堂集) · 신고려사(新高麗史) 등의 신사료도 수록하였다. 일본의 사료로는 일본서기 · 속일본기 · 일본후기 · 속일본후기 · 문덕실록(文德實錄) · 삼대실록(三代實錄)의 육국사(六國史)를 비롯하여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 · 일본일사(日本逸史) · 일본기략(日本紀略) · 부상략기(扶桑略記)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 회풍조(懷風藻) · 만엽집(萬葉集) · 도씨문집(都氏文集) · 본조문수(本朝文粹)에서 화엄회권(華嚴繪卷)까지를 수록하였다. 중국의 사료로는 당서(唐書) · 구당서(舊唐書) · 오대사(五代史) · 구오대사(舊五代史) · 요사(遼史) · 자치통감(資治通鑑) · 당회요(唐繪要) · 오대회요(五代繪要) · 책부원귀(冊府元龜) · 문원영화(文苑英華) · 송고승전(宋高僧傳) · 신승전(神僧傳) · 불조통기(佛祖統紀) ·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등이 있다. 또한 조선 · 중국의 금석에 대해서는 그 원비명을 인용하고 있다.(금석명의 주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기준의 금석집(金石集)을 들었다. 고본 사료 자체는 원탁에 의해 교정한다는 방침을 따르지만, 본서처럼 사료명만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간결하게 기술된 점은 훌륭하다. 단 같은 기사에 대하여 전후를 대조하여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대체적인 선후의 통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층 더 주의를 해야 할 점도 있다. 제1편과는 달리 사료의 요강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의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사료의 전역

과도 같은 장문 등에서 편수자가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금후 연구자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미(辛未) 신라 문무왕 11년 7월 26일 경신(庚申) 조에 보이는 당의 계림도총관(鷄林道總管) 설인귀(薛仁貴)가 군중(軍中)에 있던 신라승 임윤(琳潤)을 파견하여 국왕에게 보내온 서(書)와 왕의 보서(報書, 11~24페이지), 정해(丁亥) 신라 경애왕 4년(경순왕 원년, 고려 태조 10년) 및 다음해에 보이는 견훤(甄萱, 414페이지)과 고려 태조(416~419페이지)의 왕복서면(書面)과 같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신라통일시대는 270년에 이르는 긴 시대이고 그 문화도 활짝 꽂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는 매우 빈약하여 『삼국사기』만으로는 도저히 시대를 그려내는 데 불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의 출간에 의해 비로소 현재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료를 널리 망라한 신라편년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본서의 의의를 중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권은 456페이지, 목차는 19페이지에 이르며, 도판은 삼국사기문무왕기 · 고구려천남생묘지탁본 · 백제부여용묘지탁본 · 삼국유사 · 무진사종기탁본 (동경제실(帝室)박물관 소장) · 창림사무구정탑원기(아유가이 후사노신 씨 소장) · 조당집 (해인사장판 고려대장경 소수) ·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탁본의 코로타입판 8점이 실려 있다.

(5)

이상으로 『조선사』 기간(既刊) 3책을 대체적으로 소개했다. 제1편 제3권 중국사료는 1932년에 간행하여 제1편을 완성할 예정이고, 이것으로 조선고대사의 자료는 빠짐없이 수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편 고려시대는 이미 제1권의 인쇄를 완료하고, 제2권에 착수하고 있으며 제3권도 원고를 끝냈다. 제4편 조선시대 전기도 그 제1권이 인쇄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들은 제6편 즉 조선시대 말기의 제1권과 합쳐서 6권이 올해 중에 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제3편 이하 각 편에 걸쳐 10권, 다음 연도에는 11권을 간행하여, 1935년 봄에는 이것을 완결할 예정으로 현재 그 원고의 작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조선사』 제2편 이하는 귀중한 사료, 특히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진기한 사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명칭만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또 편수된 본서의 평가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조선사편수회의 사업으로 아직 미간(未刊)의 기록 · 문서 · 사적류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골라 다음에 본서의 발행과 함께 사료총간 및 사료사진집으로서 간행하여 열독자가 편리하게 참조하도록 하고, 또

한 성과가 의의 있다고 할 만한 계획도 착착 진척되고 있다.

어쨌든 『조선사』는 겨우 십수 년의 계획에 의해 편수를 속행한 것으로 또 그 경비면에서 볼 때도 연 평균 4,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의 수집은 물론, 편수 상의 준비에 있어서도 종종 불충분한 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 조선에서는 전혀 유례가 없고 또 비교할 것이 없는, 매우 정비되고 상세하며 정확한 조선의 통사로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본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되면, 조선의 과거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서 확실한 지식을 얻어, 현재와 장래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재 여러 학교에서 조선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초등교육가들, 그리고 이미 누차 논란이 되고 있는 중등학교에서의 조선역사수업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뜻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반려가 될 것이다. 또 전문적인 조선역사 연구자에게도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편년으로 한 번에 개념을 얻기 위해서도 편리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특히 이것이 총독부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므로 조선통치상으로 보아도 하나의 광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덧붙여 본서는 조선 인쇄주식회사에서 증쇄·발매되고, 특히 보급을 위하여 매1권 정가 2월 50전, 1부 30권 70원으로 배포하게 되어 있다).

1932년 8월 10일

〈출전 : 中村榮孝, 「新刊朝鮮史に就いて」, 『朝鮮』 208號, 1932년, 39~54쪽〉

15) 나카무라 히데타카, 조선사의 편수와 조선사료의 수집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사업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40년 가까운 일본의 조선통치 기간 동안 조선총독부가 실행한 문화사업 중에서 고적의 조사·보존과 조선사편수 두 가지는 그 취지와 성과 면에서 모두 영원히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구로이타 가쓰미 박사는 양쪽에 모두 관계하였다. 박사는 뛰어난 식견과 깊은 학식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기획과 왕성한 실천력으로 사업 수행을 추진하여 두드러진 인상을 주고 있다.

조선사편수는 1922년 12월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이 그 발단이며, 마침

내 1925년 6월에 조선사편수회의 관제가 공표되어 사업 규모가 갖추어지고, 1938년 3월에 이르러 당초에 계획되었던 『조선사』는 간행을 끝마쳤다. 이어서 이 『조선사』에 이어지는 사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는데, 1945년, 조선해방 후 사업은 신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조선총독부의 폐지와 함께 관제가 소멸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일본 및 조선의 학계와 온갖 관민의 권위를 망라한 대규모 조직으로 이루어져, 당초 계획한 『조선사』를 간행하기까지 15년 남짓한 세월과 100만에 가까운 국비가 들어가고 35권 2만 4천여 페이지의 『조선사』(활판) 및 20종 100책에 이르는 『조선사료총간』(사진판·활판), 3질 9집 225장의 『조선사료집전』(사진판)이 출판되었다. 3,538책의 『조선사고본』(기간) 『조선사』는 그 본문만을 인쇄한 것)과 3천 책에 달하는 사료복본류, 5천 매를 넘는 사료사진이 만들어지고, 구쓰시마 번주의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6만 점을 넘는 고문서·기록·고지도류를 비롯하여 조선의 여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다수의 고문서·기록·전적류가 집적된 것이다. 그 후에도 조선 내외에서 귀중한 사료가 수집되어, 그 조사연구의 성과가 관계자의 저서와 논문으로, 또한 『연구회찬(研究彙纂)』(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한편 『조선사』의 총목록·총색인 각 1책도 출판되었으며 『조선사료총간』도 속간되었다.

구로이타 박사는 이 사업의 초기에 나이토 도라지로(内藤虎次郎) 박사와 함께 사업의 산파역을 맡았으며, 제도가 정비된 후부터는 고문에 취임하여 이의 충실과 발전을 도모하며 시종일관 중심이 되어 『조선사』를 완성했고, 『조선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업을 위하여 변함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1940년 4월 천장절(天長節)에 이 편수사업에 대하여 천황의 특명에 의해 논공행상이 이루어졌는데, 구로이타 박사에게는 은배(銀杯) 2개가 하사되었고, 그때까지 편수사무를 주재한 이나바 이와 키치는 서훈되었으며, 흥희·나카무라 히데타카·스에마쓰 야스카즈·이능화·다보하시 기요시에게도 은배 1개가 하사되었다.

(1)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성립까지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 통치를 시작할 때, 구(舊)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전문 학자를 초대하여 실시해 온 사업을 이어받아, 구관(慣)제도의 조사와 고적 및 유물의 보존에 특별히 힘을 쏟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은 조선의 역사로 향하게 되었다. 1915년 5월에 구관제도를 조사하는 일은 중추원에서 행해지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7월에는 조선반도사를 편찬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마침 고적유물조사의 성과가 처음으로 『조선고적도보』¹³⁾로 출판되어 널리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중추원은 총독의 정치자문기관으로서 찬의와 부찬의에는 조선 귀족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선의 명사가 선발되었는데, 1916년 1월에는 그중에서 15명이 반도사를 편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중추원 서기관이었고, 조선의 구관제도를 비롯하여 금석문이나 전적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오다 간지로가 그 기획을 맡고, 3개년 동안 완성한다는 예정이 세워졌다. 드디어 3월에는 교토제국대학 교수인 미우라 히로유키, 같은 대학 강사인 이마니시 류,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였던 구로이타 박사가 촉탁되어 여기에 참가하고, 「조선반도사」의 편찬 및 「조선인명사서」(1939년에 간행되었다)의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했다. 이것이 구로이타 박사가 조선의 역사를 편수하는 일에 관계한 최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전후로 박사가 조선에서 활약한 것은 오히려 고적 유물조사 분야이고, 각지를 돌면서 크게 견문을 넓혀, 실지의 조사에 힘썼다. 1916년 7월에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발표되어, 고적조사위원회가 조직되고, 국가의 고문화재 보존에 관한 제도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여기 조선에 설치되는 데에도 박사는 크게 기여했다.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1918년 1월이 되어, 중추원의 조직개편과 함께 구관제도 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과와 함께 설치된 편찬과에 속하여 사업촉진이 이루어졌다. 총독부학무국 편집과장 오다 쇼고(후의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편찬과장으로 겸하고, 이마니시 류(후의 경성제국대학교수) · 하기야마 히데오(후의 총독부 도서관장) · 세노 마구마(후에 조선사편수회에 촉탁) · 스기모토 쇼스케(사업 도중에 사망) 등의 전문학자가 각각 고대에서 최근세까지 시대별로 조사 · 집필을 분담했다. 그러나 자료의 수집에 예상 외의 어려움을 느끼고, 한창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예정한 연한을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는 1919년 3월에 만세사건(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민족자결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선통치의 방침은 일대전환을 이루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반도사의 편찬이 그 후 잠시 동안은 속행되었지만, 결국 끝까지 완수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구로이타 박사는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조선사의 편수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학자적 견지에서 볼 때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영원히 가치가 있을 만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조선에서 문화사업으로서 정말로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를 염원하며 그 기획에 임했다. 조선사편찬위원

13)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시종일관 담당하여 1935년까지 15책을 완성하였다. 고대(古代)부터 이 씨조선시대에 걸쳐 고고학적 유물 · 유적에서부터 건축 · 회화 · 도자기 등의 미술공예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적유물의 호화로운 도보(圖譜)가 되었다.

회야말로 이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며, 발전하여 ‘조선사편수회’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1916년 7월에 발표된 다음의 조선반도사편찬요지를 통해 이 편찬사업이 기획된 취지를 돌아보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성립하게 된 사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백반(百般)의 제도를 쇄신하여 혼란스러운 구태를 개혁하고 각종의 산업을 진흥하여 빈약한 민중을 구제하는 일은 조선의 시정상 당면한 급무이긴 하지만, 이들 물질적인 경영에 노력함과 동시에 교화·풍기·자선·의료 등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집행하며, 조선 백성의 지능과 덕성을 계발함으로써 이들을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번에 중추원에 명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게 한 것 또한 민심훈육(民心薰育)을 위한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무릇 식민지의 통치를 개론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식민지 인민을 교육하고 그들의 의견을 향상 시켜 주는 일은 모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사상을 함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반항(不平反抗)의 기풍을 조장하는 결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지금 그들이 조선 고래의 역사를 읽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이러한 사업은 자칫하면 그로 인하여 그 구태를 회상하고 그 일에 연연케 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과거에 구미의 여러 식민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를 들어 조선의 경우를 논하려는 편견일 뿐이다. 저들의 경우, 모국과 식민지와는 지세가 아주 상이하고 인종 또한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도저히 동화융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국은 식민지의 이익을 거둬들이는 일에만 급급하고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에는 등한한 것이다. 식민지 또한 모국에 대해 경조화복(慶弔禍福)을 함께하려는 정의(情誼)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은 자연의 형세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국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는 강역이 인접하여 있고 인종이 서로 같고 그 제도 또한 쌍방이 비슷하여, 혼연(渾然)한 일대영토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이해휴척(利害休戚)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을 방치하여 그들이 일진월보(日進月步)의 대열에서 낙오케 됨을 돌보지 않는 일은 처음부터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바가 못 되는 것이다. 하물며 그들을 무지몽매한 지경에 둑어 놓으려 함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전연 불가능한 일에 속한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교화하여 인문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고 일치합동의 단합된 힘으로 제국일본의 앞날의 용성을 도모케 함은 만세의 양책(良策)으로서, 병합의 큰 뜻이 실로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조선의 인민을 교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은 처음부터 그들의 이목을 가리는 계책으로 나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화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고래로 사서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전자는 독립시대(独立時代: 合邦以前)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여하고 있어 혀되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조선에 있어서의 러일·청일 간의 세력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한국통사’라고 일컫는, 한 재외조선인의 저서 같은 것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심을 혼탁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것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절멸시킬 방책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혁수고에 그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혹은 그 전파를 장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해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사(舊史)의 금압 대신 공명 적확한 사서로써 대처하는 것이 첨경이고, 또한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 점을 조선반도사 편찬의 주된 이유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서적의 편찬이 없다면 조선인은 무심코 병합과 관련 없는 고사, 또는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만을 읽는 일에 그칠 것이다. 그리하여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눈앞에다가 오는 당면사에만 익숙해져 오늘의 밝은 세상이 오로지 병합의 은혜에서 연유한 것임을 망각하고 부질없이 구태만을 회상하여 도리어 진보에의 기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인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조선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서는 많지만, 현대와는 관련이 없어서 독립국 시대를 생각나게 한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서도 적지 않지만, 청일·러일의 세력다툼과 연결지어 조선의 향배를 설명하거나, 한국의 멸망을 슬퍼하거나 하여 병합을 저주하는 듯한 것이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공명하고 적확한 사서를 제공하여 민심을 훈육하고, 조선인을 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관된 조선반도사를 만들어서 병합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불식시켜 일선협력의 의욕을 일으키려고 계획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통치는 처음부터 동화주의를 근본정책으로 하고 있었다. 메이지 이래, 일본이 대륙에 진출한 것은 부국강병이라는 국책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성장에 수반하는 상품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한 것이며, 결국 세계적인 대립 속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승리하여 국제적으로 지위를 확립하고, 그 결과로 조선을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대외정책에는 유교로부터 배운 중화사상에 근거한 개화주의의 전통이 흐르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밀접하며 인종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연이 깊고 같은 중국

문화의 흐름을 공유하는 조선에 대한 친근감은 자연스럽게 동화주의라는 지배방침을 낳았다. 그러나 이것이 제국주의적 식민정책과 통하는 점이 있고, 오늘날의 세계주의와도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를 편찬하는 의도는 동화주의라는 조선통치의 본뜻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치방침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무력에 의한 치안의 유지나 조선인이 정치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눈앞의 현실은 동화주의가 오히려 미명을 내세워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며, 나아가 그러한 불만이 저항운동을 격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무단정치의 폐해를 제거하고, 통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도를 개혁하려고 기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앞에 서술한 만세사건이 일어났으며, 통치 방침은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의 실시가 그것이다.

1919년 8월에는 관제 개혁이 실행되었다. 총독은 문관이 맡게 되었으며, 현병은 폐지되고, 제복·대검(帶劍)이 금지되고, 조선인의 임용이 확대되고 언론이나 집회의 제한이 느슨해졌으며, 또한 지방자치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조서(詔書)에 일시동인을 통치정신으로 한다는 것이 선언되었는데, 이것은 현실 정치에 일본 본토와 조선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동화주의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정치라는 사명을 짊어지고 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는 조선총독으로서 유일한 해군 출신 무장이었으며, 정치적인 경험에 풍부하면서 문화적인 교양도 깊었다. 우선 관리를 징계하여 형식정치를 타파하고, 민중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전념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민족 문화에 대한 태도를 지시하여 문화와 옛 관습을 존중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별하였다. 시대의 추세에 순응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에 잘못된 점에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광범위한 독립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흥분한 인심을 진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면서,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로(古老)를 가까이 하고 식자에게 의견을 구하며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즈음 조선인의 정치의식을 보면, 두 가지 동향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한 가지는 국가의 흥망은 대세가 이미 그러하므로 병합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만 단, 민도(民度)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조선에만 특수한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병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여기며 민족 독립의 회복을 요망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륙 진출에 따른 국제 정국의 동향과 관련되어 성립한 조선의 정당에 계보를 잇고,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응하여 전개한 정치적 입장

의 양극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원식(閔元植)은 그 당시 일본의 중앙 정계에서 보통선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것에 호응하여, 스스로 중심이 되어 국민협회를 만들고 시사신문을 발간하여 참정권 요구 운동을 전개하고 동지들과 함께 국회에 청원하였다. 한편 만세사건 당시 이미 국외에 나가 상해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이승만(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간도 지방에도 유력한 독립운동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성 등 다른 지방에서 은밀히 이들과 호응하여 활동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어떤 이는 불만을 품고, 어떤 이는 불안을 느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여 민족의 앞날에 광명을 비추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화정치의 요체 중 하나는 충실한 교육 보급을 통해 민도(民度)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1919년 12월, 1920년 11월, 1922년 2월, 세 번에 걸쳐 조선교육령이 개정된 결과, 초등·중등학교에서 전문학교 및 대학까지 내·선인(內·鮮人: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 나아가 일본인 일반을 내지인(內地人)이라고 통칭하고 있었다) 모두 같은 방침 아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중등학교 이하는 일본어를 상용하는 곳과 상용하지 않는 곳이 학교의 명칭계통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전문학교 이상은 모두 공학이 되어 교육내용도 점차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무차별주의 제도가 대다수 조선인에게는 오히려 언어와 문화까지도 종속시키는 이민족 탄압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로 조선인의 자제를 교육하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학과목 중에 국사의 내용으로 조선의 변천에 관한 사적(事蹟)의 대요(大要) 또는 조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초등·중등 교육에서는 언어·풍속·습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된 것이지만 당시 널리 고조된 조선역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망에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총독부는 초등학교의 보충교재로서 조선사역(朝鮮事歷)을 편찬하여 교과서를 보충하고, 교사용 참고서를 간행하여 수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러나 조선역사를 독립 과목으로서 교육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이 이것을 요구하여 동맹휴교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역사를 교육함으로써 청년 자제의 민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선민족 자체의 역사에 대한 동경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1922년 말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성립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년 6월에는 구관 및 제도조사회가 설치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학무국에 고적조사과가 창설되었는데, 모두 지금까지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면목을 새롭게 한 것으로 총독부의

고 문화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은 점차 충실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해 6월에는 사이토 총독이 취임한 아래 정무총감으로서 이 사업을 지원하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가 내무대신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아리요시 주이치가 임명되었다. 신임 총감은 마침 구로이타 박사와 동창인 친구이며 그가 미야자키(宮崎)현 지사 시절에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 조사가 이루어져 박사도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서로의 인품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총독부가 직면하고 있던 조선역사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박사의 협력을 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구상에 기초한 수사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물론 세상의 정세를 참작하고 조선의 고문화 및 역사에 대한 대책이 통치의 근본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터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던 총독이 스스로 요청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때까지 5년여에 걸쳐 계속되어 온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그 취지에서 볼 때 신속하게 성과가 공간되어 당면한 시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자료 수집의 곤란 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시기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사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민중의 교화에 앞서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구로이타 박사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학술적인 견지에 서서 권위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료의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역사를 편찬하여 신속하게 이것을 공간함으로써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며, 앞으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헌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입안과 사업을 담당할 전문학자의 인선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사의 권위자인 교토제국대학 교수 나이토 도라지로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을 기했다. 그 결과 일찍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학술조사부에서 만주의 역사·지리 조사연구에 참가하고 만주사(史) 연구자로서 명성이 높은 이나바 이와키치가 추천을 받아 편찬 주임으로 예정되어,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과에서 대일본사료 및 고문서 편찬에 종사하고 대외관계사에도 조예가 깊은 가시하라 소조와 함께 새로운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정되었다.

이처럼 준비가 갖춰지고, 1922년 12월 4일에는 총독부훈령으로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조선사 편찬과 조선사료의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사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리요시 정무총감이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에는 고문 및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1월에는 제1회 위원회가 개최되어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시기의 고문에는 조선 귀족으로서 중추원 고문직을 맡고 있던 이완용·박영효·권중현, 위원에는 중추원 서기관장인 나가노 간(中추원 참의인 유맹(劉猛, 무관 출신)이지만 공정한 식견을 갖고 있어 신망이 높았다)·어윤적(노론계의 학자, 『동사연표』의 저자)·이능화(李能和, 『조선불교통사』)·정만조(소론계의 학자, 후의 경학원

대제학) · 이마니시 류 · 이나바 이와키치 · 마쓰이 히토시(처음에 이나바 이와키치 등과 함께 만철조사부에서 만주사 연구에 종사했으며 위원에 취임 후 바로 사임했다) · 가시하라 소조 등의 역사가가 위촉되었다. 이것으로 총독부의 고문화 조사 · 보존 사업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2) 조선사편수회 설치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성립에 의해 면목을 일신하고, 규모를 새롭게 한 총독부의 수사사업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는 1923년 1월 8일에 개최된 제1회의 회의 석상에서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한 훈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며, 문예 · 생산 등 각기 특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사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온 나라에 산재한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학술적 견지에서 매우 공평하게 편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게다가 자료는 점점 소실되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귀중한 것을 잃게 되어 문화의 자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현상입니다.

우리 총독부는 지금까지도 문화방면의 시설에 주의를 기울여왔으며, 구관조사를 비롯하여 고적조사 등 갖가지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이미 역사에 관한 편찬 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수사사업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여러 학자들을 비롯하여 사정에 정통한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또 일본의 역사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의뢰하여 현대에 알맞은 조선사 편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방면 모두 고문위원 여러분들을 촉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두들 협력일치하여 이 사업이 예정기간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업은 조선 전체에 산재한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하고 학술적인 견지에 서서 공평하게 편찬함으로써 귀중한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고문화를 보존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대에 어울리는 조선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학술적 견지에 서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이 새로운 계획의 근본을 이루는 특색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은 점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대에 어울리는 조선사라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정정을 생각해 볼 때, 일견 특수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이른바 학술적 견지와 연관된다는 것은 구로이타 박사가 같은 회의 석상에서 편찬 요강을 설명할 때 학문적 역사연구의 동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예전에는 정치가 역사연구의 주요 부분을 이루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문화 방면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총독의 훈시에 이어 아리요시 위원장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처음 총독은 5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구로이타·나이토 두 박사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여 10개년으로 고치고 첫 3년을 사료의 수집, 다음 5년을 사료의 수집과 편찬·기고, 나머지 2년을 고본의 정리에 할당하는 예정을 명확히 하였다. 사업의 출발점으로 사료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편찬 강령을 보면, 형식은 편년사로 하여 삼국 이전부터 조선시대 후기(갑오개혁까지)에 걸쳐 시대별로 7편으로 구분하고, 연·월·일에 맞춰 일본문 강문(綱文)을 달고, 그 후에 사료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풍속·종교·문학·예술·가요 등에 대해서 분류사 편찬도 수행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편년사의 결점을 보완하고 문화사를 중히 여기는 방침과 호응하는 것이다. 또 구로이타 박사는 사료 수집의 범위는 현대까지 이르고, 이것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지만 국가사업이므로 학술적으로 정확하고 명세하도록 할 필요에서 편찬은 우선 갑오(메이지 27년, 1894)의 개혁까지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출판, 사료의 임시 간행, 사료·사적 해제의 공간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역사서 편찬 사업의 초기에 사료의 수집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제국주의적인 지배 아래에서 급격한 근대화를 강요당한 결과, 조선 사회의 변혁은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일본 경제에 종속되는 산업의 식민지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구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계층의 문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인 변동은 조선의 관청이나 서원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 구가(舊家)·명족(名族) 등이 전해온 고문서·고기록이나 전적류가 소실되도록 만들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가치와 존재 의의가 상실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의 소재를 폭넓게 확인하고 조사·연구함과 동시에 수집·보존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서둘러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1923년 5월에는 도지사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특히 조선사료의 보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정무총감(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도의 지사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고문서나 고기록 등의 종목을 열거하며 관·공청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에 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존하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어서 6월 12일에는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사편찬의 취지를 관민 일반에게 주지시켜 사료의 수집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책을 의논함과 동시에 민간 사료를 차입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1924년 4월 2일의 제3회 위원회에서도 사료 채방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때까지 수집한 사료를 전관했다. 같은 해 8월 5일 및 12월 23일의 제4회·5회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료의

전관이 이루어졌는데, 점차로 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일반에게도 그 의의가 이해됨에 따라 매우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사이토 총독은 이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열의를 보이면서 귀중한 사료를 빌리는 경우에는 직접 봇을 들어 감사장을 썼고, 또한 휘호를 증정하여 호의에 보답할 정도였다.

사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은 우선 소실될 운명에 처해 있는 민간 사료를 채방·조사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조선에서는 고문헌이 조금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합 때 정부의 사고에 비장되어 있던 고기록·전적류는 물론이고 관청의 기록류, 궁정의 장서 등이 총독부에 넘겨지면서 그 양과 질 모두 풍부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또 민간에서 시장으로 유출된 문헌·전적도 다수에 이르기 때문에 채방에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조선의 정치·사회 정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찬의 저록(著錄)은 물론이고 관찰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파별과 당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료를 널리 수집하여 편견을 바로잡고 사실을 구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평한 역사 편수를 기대할 수 없다. 사료 수집의 초기에 당론의 원류를 찾고, 각파의 중심이 되는 명가의 문헌을 채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일은 경쟁적으로 문외불출(門外不出)의 비보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이나바 위원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노론의 대종(大宗)인 우암 송시열의 후손가에 전해진 문헌류 전부를 전람(展覽)했던 것과 같은 일은 조선사회에서 일대 경이였다. 반향은 커서, 수사사업에 대한 인식은 깊어졌다. 식자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파별을 뛰어넘은 엄정한 사필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었던 사각의 비석을 공개하여 주밀(周密)한 자료를 전시하고, 단간영묵(斷簡零墨)이라도 중시하고 고증하며 고문서나 기록에서 전거(典據)를 구하여 비사를 구명하고 사의(史疑)를 해결해 가는 학문적인 연구방법에 기초한 편수 준비는 주목과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료의 수집은 단지 조선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内外의 문헌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이나바 위원이 내각문고를 비롯하여 일본 내지의 공사 수장(蒐藏)된 일본 및 중국의 전적을 조사하고 가와하라 위원이 조선 외교·무역 기록·문서를 쓰시마 섬에서 채방한 일 등도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처럼 사료의 수집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깊어졌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사업의 의도를 일부러 곡해하는 자도 있고 또 경시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대하여 신뢰할 만한 인재를 모으고 조사를 철저히 하며, 담당 직원을 우대하여 사업이 진척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1924년 말에는 2년간에 걸친 실적을 되돌아보고 국가사업으로서의 규모를 정비하며 권위 있는 조직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 공포가 기획되었으며, 다음해의 예산에 경비를 요구하기에 이

르렀다.

당시 일본의 재정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 이후 계속해서 긴축방침이 취해지고 있었으며, 이 사업도 이미 연차 예산이 감축되어 완성 연한을 2개년 연장하고 예정된 계획을 변경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총독부에서는 행정정리의 실시와 함께 고문화보존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도 고적조사과가 폐지되고, 구관 및 제도 조사회가 해산되던 때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관제로써 정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증가시켜 규모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었다. 총독부에서 수사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1924년 7월에는 최초의 계획자였던 아리요시 정무총감이 관직을 사임하고, 위원장은 신임 정무총감인 시모오카 추지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이토 총독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의 확립에 대한 구상은 이미 아리요시 정무총감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맹우(盟友)인 구로이타 박사가 일관되게 실현을 계획했기 때문에 신임 총감도 사업의 성격과 의의를 잘 이해하고, 남다른 결의를 갖고 이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구로이타 박사는 취임 직후에 정무가 많은 신임 총감과 어떤 때는 상경하는 기회를 잡아, 어떤 때는 왕복하는 차 안에서 회담을 하고 몸소 그 취지를 받아 중앙정부와 절충에 임했으며 오직 계획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박사에 의해 조선사를 조사·연구하는 것이 오로지 조선사의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볼 때 중국과 만주는 물론이고 일본사 연구에도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설파되어 이 사업은 더 높이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시모오카 정무총감의 정계(政界)에서의 신용에 힘입어서 예산은 정부와 국회에서 인정되고 관제 공포가 결정되었다.

1925년 6월 6일에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관제가 공포되고,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는 독립된 관청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을 이어받아 총독부의 수사사업은 그 기초를 확립하고, 중요한 한 시기의 획을 그었던 것이다. 관제의 대요는 다음과 같았다.

제1조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 그리고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한다.

제2조 조선사편수회는 회장 1인, 고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는다.

고문 및 위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조선사편수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

내 고등관 중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제6조 조선사편수회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수사관 전임 3인 주임

수사관보 전임 4인 판임

서기 전임 2인 판임

제7조 생략

이 관제의 규정에 따라 우선 시모오카 정무총감이 초대 회장에 취임하고, 이어서 이나바 이와키치 · 후지타 료사쿠(이때까지 총독부 고적조사관을 거쳐 편수관. 후의 경성제국대학 교수. 도쿄예술대학 교수 ·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및 흥희가 수사관, 다카키 쓰 다큐지가 수사관보에 임명되고, 이완용 · 박영효 · 권중현은 고문에,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후의 경성제국대학 총장) · 총독부 편집과장 오다 쇼고(小田省吾) · 교토제국대학 조교수 이마니시 류 · 총독부 편수관 이능화 · 이병소 · 윤영구 등 조선사에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들과 중추원 서기관 등이 위원으로 뽑혔다. 그 후 같은 해 9월에 구로이타 박사가 도쿄제국대학 교수 핫토리 우노키치(후에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겸임했다) 및 교토제국대학 교수 나이토 도라지로와 함께 고문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조선사편수회의 조직은 일단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기획에 있어서 구로이타 박사를 비롯하여 편수에 종사하는 직원은 모두 편의상 중추원 촉탁의 명의(名義)였으므로 사무 진행상 지장도 적지 않았지만, 이때에 이르러 이름과 실질을 모두 갖춘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후 고문에는 중추원 고문 이윤용 및 경성제국대학 총장에 취임한 자가 계속 임명되어 야마다 사부로 · 하야미 히로시 · 시노다 지사쿠 이어지고 위원에는 역사학의 전문가가 추가되어 최남선(조선사의 권위자. 단군에 대한 연구로 알려졌으며 민족운동의 지도자. 후의 만주건국대학 교수) ·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타니 쇼신 · 경성제국대학 교수 후지타 료사쿠가 임명되고, 총독부 내무 · 학무 · 재무 각 국장과 중추원 서기관의 직책에 있는 자가 순차적으로 임명되었다.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된 1925년 10월에는 8 · 9일 이틀에 걸쳐 제1회 고문 ·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제공포를 기회로 하여 사업완성의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검토함과 동시에 경비예산의 증액을 심의했다. 그 후 연차계획에 대해서는 조사의 진행에 따라 중요 사료의 발견도 많고, 사업은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아 부득이 1년을 연장하고 다시 중요 사료의 출판 계획 실시에 따라 1년을 추가하여 총 14년간, 1935년까지 완결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사』는 편찬이 완성된 부분부터 인쇄에 착수하여 첫 30권(1권에 약 500페이지, 통계 1만 5천 페이지)을 예정으로 1931년에 최초의 3권을 간행했는데, 후에

5권을 추가하여 통계 2만 4천 페이지에 이르게 되고, 이 때문에 2개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비에 대해서는 1938년까지 연도별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천하였으며 항상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그 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

연도별 경비 일람표	
엔	
1922년	17,640
1923년	22,640
1924년	35,991
1925년	42,628
1926년	67,628
1927년	62,728
1928년	62,728
1929년	69,980
1930년	64,480
1931년	61,168
1932년	55,453
1933년	55,453
1934년	80,528
1935년	80,243
1936년	80,243
1937년	81,003
1938년	35,000
계	975,534 엔

이와 같은 경비의 증액은 앞에 연한의 연장에 대하여 서술한 것처럼 복잡한 사업의 진척정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매년의 예산편성마다 재무 당국과 미묘한 절충이 반복되었던 궤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이쇼 말년부터 쇼와 초년에 걸쳐 조선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일대 전환을 이루고, 대자본의 진출에 의한 공업생산 발전은 만주사변을 거쳐 군수 자원의 개발로 이어져 약진하는 길로 가던 중에, 이처럼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사업에 연한의 연장과 경비의 증액이 계속 인정을 받은 것은 구로이타 박사가 사무담당자를 독려하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지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예산절충에 책임을 지고 온 힘을 다해 쏟은 결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창시자인 사이토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야마나시 한조를 맞이하고 계속하여 다시 사이토 총독을 거쳐 우가키 가즈시게의 시대가 되고, 회장에도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 이케가미 시로 · 고다마 히데오 · 이마이다 세이토쿠 · 오노 로쿠이치로 등 몇

대의 총감을 보내고 맞이하면서도 모두가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 『조선사』의 완성

1925년 6월에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고 수사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확립되어 총독부의 태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조선 사회의 이해와 신뢰는 깊어졌고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급속히 성과를 올려 내용도 충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1927년부터는 사료의 수집과 함께 처음부터 이 사업이 목적으로 해온 『조선사』의 편수에도 착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같은 해 7월 12일 조선사편수회의 제2회 고문·위원회의에서는 편수의 구체적인 방법이 심의·결정되었다. 마침 고문인 구로이타 박사가 제2회 외유길에 오르기에 앞서 조선을 방문하고 있던 때였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사편수회 제1회 위원회에서 조선사편찬의 강령을 결정했지만 그 후의 경험에 비춰 수정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구로이타 박사의 지시를 기초로 하여 이나바 수사관 및 필자는 지금까지의 위원회에서 토의된 문제를 고려하고 흥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조선사편수강령」 및 「조선사편수범례」를 연구, 고안하여 이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본 것이다. 이 강령 및 범례에 대해서는 그 후의 고문·위원회에서 다소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중요한 변경 없이 『조선사』 편수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었다.

우선 '조선사편수강령'을 보면, 제1회 위원회의 결정을 기초로 하여 사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준비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넣고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한 층 적절한 수정이 가해졌다. 그 한 가지는 편(編)의 구분에 대한 것이다. 편수의 범위를 상고(上古)부터 갑오개혁까지로 하여 7편으로 나누고 있던 것을 6편으로 하여 제1편 삼국 이전·제2편 삼국시대·제3편 신라시대를 고쳐서, 제1편 신라통일 이전·제2편 신라통일시대로 하여 제4편 고려시대는 제3편이 되고, 제5편 조선시대 전기(태조부터 선조까지)·제6편 조선 중기(광해군부터 영조까지)·제7편 조선 후기(정조부터 갑오개혁까지)는 각각 제4·5·6편이 되었다(제5편과 제6편의 시작과 끝은 나중에 바뀌어 정조까지 제5편, 순조부터 제6편이 되었다).

이 개편과 함께 제1편 신라통일 이전의 편수에 대해서 특례가 설정된 것은 주요한 수정사항의 하나이다. 물론 '편수의 체제는 편년으로 한다'고 하는 사체(史體)의 원칙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제1편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예전부터 전해오는 편찬·찬록된 기록·사적, 기타 사료를 원문 그대로 유취(類聚) 수록하여 편년체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를 만든 것이다. 신라통일 이전에 대해서는 조선·중국·일본에 각각 특색이 있는 문헌이 남아 있지만, 서로 기년이 다르고 통일적인 편년체 편수를 하려고 하면 비정(比定)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오히려 수집한 사료를 유형별로 수록하여 후일의 고구(考究)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을 할 때에도 조선·중국·일본으로 나누어 사료의 전문을 간행한다는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편수의 범위를 갑오개혁까지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료를 수집·보존하여 앞으로의 조치에 대비하는 것도 이 수사사업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체재에 대해서는 편년체의 연서를 표기할 때 간지 및 왕의 재위 연차(왕명은 묘호(廟號)로 부르고, 묘호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에 따른다)에 따른다. 일본과 중국의 기년을 주기하여 참조하는 것은 그때의 강령으로, 처음 결정한 방침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과 조선의 수사는 기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시된다. 그 선택방법에 따라 수사의 근본정신에까지 비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지 및 조선 역대의 국왕 재위 연차를 기준으로 한 것은 조선에 내려오는 기년법(紀年法) 중에서도 중국의 정삭(正朔)을 피한 것을 답습한 형식이며 조선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체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일본 통치하의 수사라는 입장에서 명분론도 나왔지만, 사실에 입각하여 가장 타당한 방식을 취한 것 또한 본 수사사업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및 중국의 기년을 주기할 때에도 결코 명분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따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기년에 관하여, 고려에 대해서는 이나바 수사관이 열심히 주장한 것을 기초로 하여, 이씨조선시대에 편수된 정사인 『고려사』에서 사용된 유년(踰年) 칭원(稱元)의 구례를 따르지 않고 당시의 사실을 쫓아 즉위 칭원(卽位 稱元)을 사용하였다. 폐왕 신우(辛禡)·신창(辛昌)은 위원의 제안에 의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왕씨로 인정하는 의견이 채택되어 전·후 폐왕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특례로서 제1편은 사료를 있는 그대로 유집(類集)하는 것으로 조선·중국·일본의 사료별로, 편의에 따라 각각의 주요한 사적의 기년에 의해서 순서를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사편수범례는 강령에 제시된 방침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선택하고, 강문으로서의 본문을 계기(揭記)한다. 이에 대하여 사료를 유수(類收)하고, 「잡록(雜錄)」을 정리하며, 「참고」를 부재(附載)하고 또한 「주기」나 「안문」의 체재에서부터 「두주」의 제시방법, 「도화류(圖畫類)」의 삽입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그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주로 『대일본사료』·『대일본고문서』의 예를 본떠, 『대일본유신사료(大日本維新史料)』의 강령·범례를 참고로 하여 입안한 것이다.

본문으로 채택하는 역사 사상의 선택에 대하여,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아 고찰하여 정치·외교·경제·문화의 각 방면은 물론이고 사회조직·풍속에도 주의를 기울인 것이나 특별히 전기 항목을 제시하여 정치·경제·문화·사회 각 분야에 관한 사람들의 전기의 수록을 방침으로 하여 죽었을 때까지의 중요 사적(史籍)·직관·저작·계통 등을 주로 기술하였다. 사료에 대해서는 간사본·고문서·일기류에 걸쳐 사료 가치에 알맞은 서열을 정하는 방법부터 수재(收載) 시의 체재 처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속서(俗書)·잡저(雜著) 등의 종류에서 「잡록」을 골라내고 후인의 논술 중 정획·탁발(拓拔)한 것을 사료의 보조로서 「참고」로 게재하는 것 등 문현을 망라하여 유감없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도화」의 삽인은, 문서·기록·사적은 말할 것도 없고 화상·회도·회화·조각류, 그리고 유물·유적의 사진으로부터 금석문의 탁본 등은 서로 관계가 깊은 조 아래에 우선은 반드시 고본 속에 삽입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색 있는 방법이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로이타 박사의 경험과 식견을 기초로 한 세심한 준비에 힘입은 바 크다.

편수의 강령 및 범례가 결정되자 바로 이에 따라 『조선사』 고본의 작성이 개시되었다. 당시 이미 편수회의 사무 분담에 대한 내규가 정해져 있었고, 부를 나누어 주임을 두고, 직원은 나누어 소속되어 있었지만,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채방부(採訪部)에서 지방 사료의 소재를 조사하고 채방의 계획을 세우며, 정비부에서는 차입 사료를 조사하고 복본·사진류의 제작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전자는 수사관(修史官) 홍희, 후자는 필자가 촉탁하여 각각 주임이 되고 『조선사』의 편수에 대해서는 제1편부에서 제3편부까지는 촉탁 이마니시 류, 제4편부는 필자, 제5편부는 수사관 이나바 이와키치, 제6편부는 촉탁 세노 마구마가 각각 주임이었다. 창설시에 수사관이 된 후지타 료사쿠는 이 전 해 여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 고고학 연구 및 박물관 시찰을 위해 재외 연구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내임한 이마니시 류는 촉탁으로 영입되어 전공하는 고대부터 고려시대의 편수를 담당하게 되고 그 밑에 수사관보 이병도(후에 한국 서울대학교 총장·문교부장관 역임. 현 학술원 회장. 진단학회 회장)가 소속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건강상의 이유로 직책을 사임하여 후임으로 촉탁인 하기야마 히데오, 이어서 윤용균(경성제국대학 졸업. 요절하였으며 『윤문학사유고(尹文學士遺稿)』가 있다)을 영입하였다. 필자도 새롭게 촉탁으로 영입(1927년 말에 수사관 취임)되어 전공하는 고려 말기(공민왕)부터 착수하여 조선시대 전기에 걸친 편수를 담당하고 밑에 수사관보 쓰루미 류기치(이전에 함경북도사 조사에 종사한 적이 있다)가 소속되었고 이어서 수사관보 시오다 후키조(현 오사카대학 교수)로 바뀌었다가 바로 수사관보 신석호(후에 수사관이 되고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현 고려대학교 교수)·촉탁 가와구치 우키치가 속해

있었다. 또한 조선반도사 편찬에 있어서는 근세(이씨조선)를 집필하여 이를 완성하고 자리를 옮겨 촉탁으로 있던 세노 마구마가 조선시대 후기의 편수를 담당하고 촉탁 조한직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 사업개시부터 홍 수사관의 협력 아래 『이조실록』의 태백산본『광해군일기』의 연구에 몰두하여 학위논문『광해군 시대의 만선관계』를 완성한 이나바 수사관이 전공인 조선시대 중기를 담당하고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쿠지(현 게이오의숙대학 사무국 근무)가 여기에 소속되었다.

그 후 1929년 12월 23일 제3회 고문·위원회의에서는 사료의 수집에 대하여 각 지방에 걸쳐 일반적인 채방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특별 채방만 남게 되었으므로『조선사』 편수를 집중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 편수 및 인쇄에 대한 예정·계획이 심의·결정되었다. 이즈음 조선시대의 편수에 대해서는 수집된 신 사료도 많고, 당론에 관련된 문헌류의 처리가 지난(至難)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홍 수사관이 주임이 되어 중요 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연구를 실행하고, 사료를 각 편부(編部)에 회부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기술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편수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쇄에 대해서는 편수의 진행과 함께 1932년에 착수하여 5권·10권·15권, 그리고 계속 간행하여 1934년에는 전 30권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다음해 8월 22일의 제4회 회의에서 착수시기를 앞당겨 1931년에 제1편 일본사료·조선사료 및 제2편 3권을 인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8월 29일에 제5회 고문·위원회의가 개최되고 ①『조선사』 인쇄 장소, ② 인쇄 원고의 심의 수속, ③ 간행『조선사』의 명칭이 검토되어 예정대로 인쇄가 개시된 것이다.

인쇄 장소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구로이타 박사가 기술상의 이점과 발매·보급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도쿄에 있는 설비가 완전한 인쇄소와 규모가 큰 출판회사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편수와 병행하여 인쇄가 이루어지고 교정상의 불편과 경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결점이 있으며 조선에서 인쇄할 경우 인쇄기술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점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이것에 인쇄기술을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성의 조선인쇄주식회사로 결정하고 판매도 여기에 맡기기로 하였다. 인쇄 원고의 결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심의부」를 설치하여 이나바·홍·나카무라 3명의 수사관 및 이마니시 촉탁을 부원으로 하여 심의를 거쳐 인쇄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간행본의 명칭은 「고본조선사」·「조선사강」 등의 안도 있었지만 토의 결과『조선사』라는 명칭이 선정되었다. 우선 편수된『조선사고본』에 대하여 제1편은 전문을, 제2편 이하는 본문만을 수록하고, 수록된 사료의 명칭을 주기한 것을 간행하는데, 이 사업이 목적으로 한 편수의 성과로서는 「조선사」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고본이 모두 정리된 후 도서관 등에 비치

하여 공개하고 간본(刊本)과 대조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인쇄는 1931년에 제1편부터 착수되어 당시 제1편 및 제2편의 편수에 종사하고 있던 수사관보 스에마쓰 야스카즈(후에 수사관·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된다. 현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는 인쇄부 주임이 되고 기획과 사무를 담당했다.

이와 같이 편수 및 인쇄는 궤도에 올라 진척되었지만 고본의 책수가 예상 밖으로 많아져서 인쇄할 권수도 1934년에 다섯 권이 증가하여 총 35권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편수에 필요한 연수도 연장되었는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부담도 매우 과중해져 밤을 새워 정진해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건강에 무리가 오는 사람이 속출했다. 사업의 성격상 처음부터 편수의 보조나 기록·문서류를 해독하여 등사할 사람을 뽑았는데 학식과 경험을 갖춘 고령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일본면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편수 사무의 중심 책임자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업의 진행을 크게 방해하였다. 1932년 5월에는 이마니시 촉탁이 교토에서 객사하여 제1·2·3편부의 주임은 이나바 수사관이 겸임하게 되고 1935년 1월에는 흥 수사관, 5월에는 세노 촉탁이 사망하였으며, 편수·인쇄 또는 사료 정비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던 수사관보·촉탁 등을 맡은 사람들에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수사관보인 다카키쓰 다큐지·하기야마 히데오가 병에 걸려 사직했고, 촉탁인 윤용균·가와구치 우키치·박용구·시부에 게이조·구찬서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그러나 구로이타 박사는 항상 그 빈자리를 보충하여 적당한 인재를 추천하고 알맞은 조치를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 1933년에는 메이지 외교사 전공의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 기요시를 제6편부의 주임으로 하고 그 전후에는 촉탁으로 다가와 고우미(후의 수사관보, 수사관, 현재 도쿄대학 강사)·소노다 요시로(경성대학 조수, 후의 수사관보, 현재 다이훈 대학 교수) 등의 신예를 영입하고 각 부의 소속을 조정하여 제 1·2편의 편수를 완료한 스에마쓰 수사관보로 하여금 제5편을 지원하도록 하고 위원 이능화를 촉탁으로 하여 오로지 사무의 진척을 도모하였다. 한편 직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한의 연장도 제안하였다. 드디어 1937년에 『조선사』 35권의 간행을 종료하고 사업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계획에까지 도달했다. 1935년 7월의 제9회 고문·위원회 때의 일이다. 그리고 다음해인 1936년 9월 27일, 신임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하여 개최된 고문·위원의 간담회에서 사업의 완성에 대한 조치가 논의되고, 다음 해, 예정대로 『조선사』는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구로이타 박사는 1936년 11월에 다카사키의 여관에서 병상에 눕고, 그 후 두 번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사』는 여기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38년 3월에 제6편 제4권이 간행됨으로써 완성되었는데, 그 후 「수권(首卷)=총목록」 및 「총색인」 각 1권이 간행되어

완벽해졌다. 편수에 착수한 이후 11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수사사업이 기획되고 사료의 수집이 시작된 후 16년이 경과했다. 고본은 3,500책을 넘고, 간본은 제1편이 3권, 제2편이 1권, 제3편이 7권, 제4편이 10권, 제5편이 10권, 제6편이 4권, 모두 35권으로 총 24,000 페이지를 넘는다. 고금을 일관한 조선사는 이미 그 양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물론 조선에는 중국의 예를 따라 국가에 사관이 있었고, 역대의 기록을 갖추어 실록을 편수하였으며 왕조의 흥망과 함께 정사의 찬록이 이루어졌고, 사가(史家)의 저술도 적지는 않았다. 『삼국사기』·『고려사』는 기전체를 취하고, 『삼국사절요』·『고려사절요』·『동국통감』 등은 편년체를 취하며 모두 관찬서인데,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과 같은 명저도 있었다. 이씨조선시대는 역대의 『실록』을 사고에 전하여 보관하고 『국조보감』은 공간되었다. 사저로는 이궁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처럼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를 취한 대저술도 있으며 안정복의 『열조통기(列朝通紀)』가 있고, 한치운의 『해동역사(海東繹史)』, 오경원의 『소화외사(小華外史)』처럼 조선 이외의 문헌을 집대성한 양서도 있으며, 『대동기년(大東紀年)』도 새로운 특색이 있고 비슷한 것으로 관찬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것이 간행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면 중국사를 떠올리거나 보감류를 들고, 혹은 당쟁사나 족보·가승(家乘)이 있다고 알고 있을 뿐이어서 기록이나 문서는 관청의 필요를 위해 준비해 두거나 사문의 비망에 그치고 실록은 사고에 비장되어 전해질 뿐이었다. 따라서 정사 및 실록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기록·고문서를 추가하며 널리 내외의 전적을 참조하고 사료를 망라하여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정리·기술한 통사라는 점에서 이 『조선사』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또한 고대사는 널리 조선·일본·중국의 사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사기』에서부터 『당서』에까지 이르러 중국 정사의 동이전을 전문 수록하여 동방 제족(諸族) 관계사료를 망라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의 민족 및 문화의 연원을 구명하는 기초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료의 수집이나 본문의 편수에서 학술적인 입장에 서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다음에 서술할 사료의 수집 및 출판의 경과에 의해 더 명확해질 것이다.

(4) 사료의 수집과 출판

조선사편수회의 사업은 처음부터 조선사의 편수를 최후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보존하는 일이 기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사료수집에서 성과를 올린 것은 조선사의 내용을 풍부하게하고 정확하게 하여 그 가치를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고문화 보존이라는 시각에서 보아도 이 수사사업의 의의를 크게 만들었다.

처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립되자 우선 이나바 이와키치·가시하라 소조·홍희 3명의 위원이 중심이 되어 사료의 수집에 착수하고, 한편으론 총독부 학무국 소관인 이른바 구 규장각도서 및 이 왕가 장서각 도서 등 이미 소재가 알려져 있던 수집사료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경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지에 출장을 나가 명가·구족을 방문하여 소장한 고문서·기록 및 전적을 조사하고, 민간에 산재한 미지의 사료를 채택하는 일에 노력했다. 특히 지방 사료의 채방은 의의가 크며, 그 성과가 수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조선사편수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사료 수집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26년 12월에는 이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 채방·‘정비’ 두 부가 설치되고 채방부는 수사관인 홍희가 주임이 되어 실시·계획의 입안과 조사의 지도를 맡았으며, 정비부는 필자가 주임이 되어 차입 사료의 조사 및 복본·사진 제작을 담당했다. 그리고 「사료채방내규」를 만들어 일반 및 부분(部分)으로 구별하고 각 연도가 시작될 때 계획을 의정하기로 하여 사료 차입을 위한 수속을 확립하고 채방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반드시 사료목록을 갖출 것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대상이 부분적으로 저명한 소장가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던 폐단을 고치고 일반 채방에 무게를 두어 차입된 사료의 증가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소장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조사의 결과를 유효하게 하여 수집·보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차입사료의 취급은 전용금고 및 특설 방화창고에 보관하여 출납을 엄중히 하였고, 당연한 일이지만 열람을 할 때에도 흡연을 금지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20여 년간 한 점의 사료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오손(汚損) 등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자의 신용을 얻게 되어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의 수집에 대하여 조직이 확립되자 전 조선의 각 도에 걸쳐 일반채방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상보(相補)하여 철저함을 기하고 부분적으로는 수차례의 특별채방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실행하여 일본 및 만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유루(遺漏)가 없도록 하였다. 1938년 3월에 『조선사』가 완성될 때까지 출장 연일수는 2,800일에 이르고 차입 조사한 사료는 4,950건(별표 참조)에 이르며 조사 결과는 수차례 『조선사고본』에 수록되고 주요한 것은 경비가 허락하는 한 복본을 만들어 그 수가 2,000책에 이르며 그 밖에 건판(乾板)도 4,500매를 넘는다. 또한 소장자의 호의에 의해 기증된 문서·기록 및 전적과 상인의 손을 통해 구입한 문헌류도 다수(유감이지만 현재 수량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에 이른다.

차입사료 지방별 건수(1923~1937년)

도별	건수
경기	1,427
충북	235
충남	331
전북	441
전남	690
경북	615
경남	197
황해	22
평남	4
평북	69
강원	83
함남	534
함북	20
(쓰시마)	155
(기타)	127
계	4,950

* 비고: 숫자는 건수이고, 고문서는 일괄한 것을 포함하며, 서적은 부수를 나타내며 책 수가 아님.

지방사료의 수집에서 이와 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과 경비가 투입되고 편의가 제공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채방계획의 입안을 맡아 조사의 지도에 힘을 쏟은 수사관 홍희의 풍부한 지견과 탁월한 학식과 부단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홍희는 호가 겸산(兼山)이고 전라도 출신으로 구 한국 말의 석유(碩儒) 전우(田愚, 호는 간재(艮齋))의 문하에서 배워, 그의 고족(高足)으로 불렸다. 널리 경사(經史)에 능통하고 특히 식견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다. 전우는 전라도 담양 사람으로 신응조(申應朝, 호는 구암(苟菴), 관직은 좌의정)의 인정을 받았으며 신응조의 권유로 유학 연구에 뜻을 두고 임현희(任憲晦, 호는 전재(全齋))의 문하의 제일인자가 되었다. 이태왕이 관을 주어 불렀으나 결국 취임하지 않았다. 만년에는 문도(門徒)를 사절하고 자손을 버리고 바다의 고도(孤島)로 들어갔다. 후에 부안의 계화도(界火島)로 옮겼는데, 이후 10년 동안 명성을 듣고 배우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으며 82세에 계화도에서 사망하였고 문인이 1,500에 이르렀다. 1922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 해에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성립되고 홍희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이나바 · 가시하라 두 위원과 함께 사료의 수집에 착수하여 『이조실록』의 태백산본 『광해군일기』의 조사를 시작했다. 『광해군일기』는 내용면에서나 찬수 시기면에서 동 · 서로 분당하여 논쟁이 점차로 격화하고 남 · 북의 분화가 일어나며

결정적으로 파벌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특히 태백산 사고에 전해진 것은 중초(中草)의 원본으로 사관의 첨삭·수정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당론의 기미(機微)가 지면에 나타나 있고 사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조사는 그의 조선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사학연구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나바 위원은 그의 학식에 깊이 감복하여 모든 일에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후에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자 그를 수사관으로 추천했다. 전우는 병합을 달갑지 않게 여겼으므로 그의 문하에서는 관도(官途)로 나아가는 일이 없었는데, 홍희는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감히 단발, 출사하였으므로 자연히 선배동문은 홍희와 절교하였지만 홍희는 끝까지 그의 뜻을 바꾸지 않고 종신토록 이 사업에 전념하여 그가 기여한 바는 매우 컸다. 특히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견지에서 사업에 임하였으며 사료 수집을 기획할 때는 마치 물건을 봉지에 넣듯이 적확하여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수사사업이 조선 식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많은 부분 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의 냉정한 태도에 대하여 파벌이라는 인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하였으므로 그의 입장은 매우 괴로운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동서·노소의 당론이 섞여 있던 조선 시대 중기 이후의 편수에서 그 논쟁의 핵심을 해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사부의 주임으로서 사료를 제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지도하는 일을 계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가끔 수사사업을 완성한 후 잠시 여론을 피하여 조선을 떠나고 싶다고 술회한 것은 전문(田門)의 뜻을 거역하고 관직에서 일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공정성에 대한 4색(동서·노소의 파벌) 모두의 불만이 풀리기를 기다리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홍희 저 『동유일초(東遊日艸)』는 1929년, 사료 채방을 위해 일본을 순유(巡遊)했을 때의 기행이다).

그런데 수사사업의 사료수집은 지방사료의 채방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 규장각도서 및 이왕가 장서각의 도서를 중심으로도 조사가 속행된 것은 물론이다. 수사관보 다카키쓰 다큐지가 편집주임이 되어 간행한 『갑종조선사료조사요록(甲種朝鮮史料調查要錄)』 제1편 상책은 그러한 성과의 하나이다. 두 곳의 장서는 각각 『조선총독부 고도서목록』 및 『이왕가 장서각 고도서목록』이 공간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전자에 대해서는 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도서해제』를 통해 중요 문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의 장기간에 걸친 정밀한 조사에 의해 새롭게 가치가 밝혀진 것도 적지 않다. 『고려사절요』나 『사대문궤(事大文軌)』와 같이 간본 중에도 그런 예가 많지만 등록·의궤·일기 등의 기록류와 같은 것들은 이 사업에 의해 비로소 그 성격과 가치가 해명되고 공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조선 인조 이후

3,000책을 넘는 현존『승정원일기』의 복본 작성에 착수하고 17세기 이후의 현존『사고폭쇄형지안(史庫曝晒形止案)』(각 사고의 폭쇄 등에 대해 이루어진 현상조사보고서)의 복본을 완성하여 전적조사의 기준으로 하고,『비변사등록』에 의해 17~19세기에 걸친『조선직관표(朝鮮職官表)』를 제작하는 등 보존과 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계획하지 않았다. 본래 이 장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는데, 총독부는 본 사업을 위해 자유롭게 조사·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927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후에도 특별대출이라는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씨 왕가의 장서에 대해서는 장서각 이외에 대보단(大報壇)에 비장(秘藏)되어 있던『황명실록』(명의 곡응태구장초본(谷應泰舊藏抄本))을 빌려 복본을 완성한 것도 기억해야 할 사업일 것이다. 또한 두 곳의 장서를 비롯하여 지방에서 차입한 사료에 대해서 문집류를 중심으로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록을 수집하고 차례대로『군서요목(群書要目)』을 제작하여 수백 책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이나바·가시하라·홍 3명의 위원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쓰시마섬의 구 한슈(藩主) 소우(宗)가의 기록이나 고문서류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또한 정리·보존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1923년 여름, 가시하라 위원이 쓰시마섬 안의 사료채방을 시도했을 때 이즈하라에 있는 창고에 습장(襲藏)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였는데, 때마침 이즈음 도쿄의 보리사에 보관되어 있는 가보와 같은 중요 고문서류의 처치에 대하여 구로이타 박사는 이 집안의 후견인이던 오키 엔키치(大木遠吉)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집안은 조선과 밀접한 불가분의 역사적인 연고가 있으므로 고문서류에는 조선외교문서를 비롯하여 부산무역에 관한 통상기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과 관계 있는 것을 일괄하여 조선총독부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의 편의상 계보나 기록류 등 모든 것을 총독부에서 빌리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1926년 5월에는 도쿄에서, 같은 해 7월에는 쓰시마에서 경성으로 보내져, 비로소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소우가의 사료는 이전에 보다이지(菩提寺)로 이전할 때 흘러나온 것이 게이오의 숙대학 도서관 및 난키문고(南葵文庫, 현재는 도쿄대학 도서관을 거쳐 사료편찬소 소관이다)로 들어갔는데, 주부(主部)인 고문서류 61,469통, 고기록류 3,576책, 고지도류 36매, 고화(古畫)류 18권 및 53매에 이르는 자료들이 조선사편수회 소장으로 귀속된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구 정부에서 물려받은 등록류를 비롯하여 풍부한 문현류가 남겨져 있고 주로 17세기 이후의 일선 외교·무역에 관한 사료가 여기에 정비되어 있어, 대조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소우가가 소장해오던 사료는 필자가 담당하여 정리에 착수했고, 이후에는 수사관보인 구로타가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사료의 수집과 함께 정리와 보존이 강구되었고, 또 차례로 『조선사』 본문의 사료로서 수록되었다. 채방 결과, 차입한 사료에 대해서는 정비부에서 조사하고, 1927년 7월 12일의 고문·위원회의에서 결정된 「복본류작성범례(複本類作成凡例)」를 기초로 하여 직접 조선사편수의 자료로 사용할 만한 것을 위주로 등사·영사·촬영·모사 등 각 사료의 성질에 따라 그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졌다. 복본류에 대해서는 정밀한 오서(奧書)¹⁴⁾를 붙이고, 원본의 체재·유래·소재 등의 중요사항을 비롯하여 제작시기·제작자·교합(校合) 책임자 등을 기재하고 완성된 후에는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특히 당시에 사진을 폭넓게 이용한 것은 사료의 수집을 매우 능률적으로 만들었고, 조사와 보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의 특색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출장조사에는 사진기사를 동반하여 문외불출(門外不出)인 귀중한 사료는 직접 촬영하여 차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일도 적지 않다. 1928년 1월, 필자가 충청남도 온양군 아산면에 있는 이순신의 종손가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대출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었던 이순신의 자필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모든 중요 문헌을 촬영했던 일은 그러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선조의 귀중한 유물을 존중하는 자손들도 만족하였다. 복본의 교합에는 촉탁 시부에 게이조, 사진촬영에는 서기 마에다 고조·사진사 다노 시지노스케 등의 공헌이 컸다. 복본의 제작에는 노령이고 학식 있는 많은 노인들이, 전사원, 사료 등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직책)으로서 어려운 초서체 및 문장을 해독하고 필사한 업적은 영구히 기억될 만하다. 특히 사료등사의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사원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의 진척을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였다.

지방 채방에 의해 수집된 사료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4세기 이전, 즉 고려시대까지는 매우 희소하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연대가 내려올수록 고문서나 기록의 수효도 늘어나고, 16세기 전후, 즉 중종 무렵부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예상 이상의 사료들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중종시대의 명신인 권발(權撥) 자필의 『충제일기초(沖齋日記草)』(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의 권씨 소장)와 같은 것은 가장 두드러지는 예이다. 이어서 선조에서 인조에 걸쳐 일본 및 만주로부터의 외환이나 내란 때문에 관부의 기록을 비롯한 수많은 문헌이 소실되거나 산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기의 원본이나 고문서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선조 초기 전란 이전의 것으로는 유희춘(柳希春) 자필의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전라남도 담양의 유씨 소장)나 율곡 이이 자필의 『경연일기(經筵日記)』(충청북도 제천군 권씨 소장)가 있고, 전시 중의 것으로는 이순신 자필 『난중일기초(亂中日記草)』· 수군전황보고의 원본인 『임진상초(壬辰狀草)』(충청남도 온양군 아산의 이씨 소장)와 김용(金涌) 자필의 『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경상북도 안동군 김씨 소장)· 『용

14)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의 끝에 쓰는 글.

『사일기(龍蛇日記)』의 초본(草本, 경상북도 예천군 정씨 소장), 『임진록』·『정만록(征蠻錄)』(경상북도 의성군 이씨 소장)이 있으며, 전후에는 영의정 유성룡 자필의 『징비록』·『난후잡록(亂後雜錄)』 등의 초본과 『군문등록(軍門曆錄)』(경상북도 안동군 유씨 소장)이 있다. 광해군에서 인조 초기에는 정홍명(鄭弘溟) 자필의 『한원초기(翰苑草記)』(충청북도 진천군 정씨 소장)이 있다. 그리고 인조 이후 즉 17세기 중엽부터는 관부의 일기·등록·의궤 등이 전해 내려오면서 갑작스럽게 그 수가 증가하여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즈음부터는 정치상으로 당론·파벌의 대립·항쟁이 격해지므로 공정한 사료의 수집에 성공하지 못하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중앙관부의 기록만으로는 오히려 진실을 놓칠 우려가 있다. 실록마저도 이미 편수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고, 선조 이후 수정하거나 개수한 실록이 만들어진 예가 적지 않다. 당론분파는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수많은 비전·비록이 민간에 유포되어 사색의 이채를 각각 띠고 있다. 각지에서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각 파 명문의 후손을 방문하여 사장하고 있는 사료의 조사를 위해 시간을 보낸 것은 결코 실증의 가짓수를 늘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현은 일문일파의 비장으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며 사업의 초기에 채방에 매우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에게는 문집·유고 종류가 다수 간행되어 중요한 사료가 담긴 것도 적지 않지만, 세간에 유포한 이러한 것들은 대개 원본의 모습이 손상되고 내용이 변질되어 있다. 집안에 내려오는 초고나 문서의 원본을 수집하여 비교·대조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전거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편수의 연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해도 사료의 수집은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추기(追記)). 해방 후에 임진왜란에서 오희문(吳希文)의 피난일기인 『쇄미록(瑣尾錄)』(경기도 용인군 오씨 소장)의 자필원본(國史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14로 간행되었다)이라든가 정유왜란의 포로 노인(魯認)의 일본탈출기록인 『금계일기(錦溪日記)』(전라남도 광주시 노씨 소장)와 같은 초본이 발견된 예를 보면 그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사료 채방의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그 중요성도 이처럼 명확해지자 『조선사』의 간행과 함께 사료의 공개출판의 필요성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물론 사료의 출판은 사업개시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1932년 7월 21일의 제6회 고문·위원회의에서 『조선사료총간』 및 『조선사료집진』의 간행계획이 결정되었다. 마침 『조선사』의 간행에 착수하였던 시기였으므로 구로이타 박사는 그 편수와 인쇄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이러한 기획에는 반대했지만 위원 중추원 서기관인 마쓰모토 이오리의 열성적인 주장과 필자의

간곡한 희망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에 의해 이루어진『이조실록』의 영인출판이 조선인쇄주식회사의 시설로 진행 중이었고, 거의 완성기에 있었으므로 실적을 생각하여 주로 사진판으로 간행하기로 결정하고 가능한 한 편집이나 교정의 수고를 덜기로 하였다.

『조선사료총간』은 우선『고려사절요』를 간행하고 다음해인 1933년 8월 14일의 제7회 고문·위원회의에서 이후의 계획을 확립했는데, 그 결과 간행된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목록 그대로이다. 구 규장각 도서나 지방채방사료 중에서 세간에 유포되어 있지 않은 귀중한 것을 고른 것인데 특히 임진·정유란(분로쿠(文祿)·게이초(慶長)의 역(役))에 관한 것이 많은 이유는 본문과 대조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공정한 편수 태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왜곡된 속설을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조선사료집진』은 사료사진집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것(속에는 고려 이전을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고문서를 비롯하여 일기·문집·사적의 원본·초고·간본에서부터 화상·그림 등의 사진을 수록하고,『조선사』의 각 권에 삽입한 모든 도판 377가지를 포함하여 조선의 사료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총간』 및『집진』의 편집에는 각 편부의 협력 아래 주로 필자가 담당하고, 모두 상세한 해설을 붙여 사료해제도 겸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활판으로 간행한『난중일기초』·『임진장초』는 구로다 수사관보,『미암일기초』는 신 수사관보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교정하며 노력하여 완벽을 기할 수 있었다.

조선사료총간

제1	고려사절요	구규장각도서	옵셋판	24책 3질	1932년 간행
제2	해동제국기	소가 소장	위와 같음	1책 1질	1933년 간행
제3	군문등록	경북 유씨 소장	위와 같음	1책 1질	1933년 간행
제4	당장서화첩	위와 같음	코로타입판	4책 1질	1934년 간행
제5	정원전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책 1질	위와 같음
제6	난중일기초 · 임진장초	충남 이씨 가문 소장	활판	1책(456페이지, 도판있음)	1935년 간행
제7	사대문궤	구규장각 도서	옵셋판	35책 3질	위와 같음
제8	미암일기초	전남 유씨 가문 소장	활판	5책(2238페이지, 도판 24)	1936~38년 간행
제9	난후잡록	경북 유씨 가문 소장	옵셋판	2책 1질	1936년 간행
제10	진관관병편오책잔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책 1질	위와 같음
제11	초본징비록	위와 같음	코로타입판	1책 1질	위와 같음
제12	제승방략	구 규장각 도서	옵셋판	1책 1질	위와 같음
제13	양촌집	위와 같음	위와 같음	7책 1질	1937년 간행

제14	보한제집	이나바 수사관 소장	위와 같음	7책 1질	위와 같음
제15	조선부	정북 소수서원 소장	위와 같음 부록-활판	1책 1질 부록 1책	위와 같음
제16	속무정보감	조선사편수회 소장	옵셋판	2책 1질	위와 같음
제17	소수서원등록	경북 소수서원 소장	위와 같음 활판	1책 1질	위와 같음
제18	고려사절요보간	봉좌(蓬左)문고 소장	옵셋판	5책 1질	1938년 간행
제19	종가조선진문서	종가 소장	위와 같음	1권	1937년 간행
제20	정덕 조선신사 등성행렬도	종가 소장	코로타입판	1권	1938년 간행

조선사료집진

조선사료집진	코로타입판 해설-활판	2질 6집 (150매) 해설-6책 300페이지	1935~36년 간행
조선사료집진 속	위와 같음	1질 3집 (75매) 해설-3책 150페이지	1937년 간행

(5) 사료수집의 계속

1938년 3월에 『조선사』는 완성되고, 동시에 『조선사료총간』 및 『조선사료집진』도 간행을 끝냈다. 이로써 수사사업은 당초의 계획을 거의 종료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전년 가을부터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하여 잔무처리의 형태로 계속하여 주로 고종(이태왕 31년 갑오(1894))의 개혁 이후의 사료수집을 실행한다는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

『조선사』의 속편을 만들고, 갑오개혁부터 병합(1910)까지의 편수를 완성하여 수미일관한 통사로 만드는 것은 일찍이 고문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구로이타 박사는 사안이 현대로 이어지자 학술적인 견지에서 국가사업으로서는 사료의 수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를 굳게 지키고 우선 『조선사』 완성을 위해 전념해 왔다. 그러나 사업에 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러한 요망도 절실했지만, 『조선사』 완성 후의 잔무처리에 대해서 구상을 발표하기에 앞서 병상에 눕게 되었다. 생각건대 박사는 조선사의 고본 및 수집한 사료의 처리·보존 조치를 하는 것과 『조선사』의 색인을 편찬하는 것으

로 우선 총독부의 수사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그 후의 문제는 경성제국대학도 충실하고 완성도 있는 곳이므로 오히려 그런 연구조직에게 위임하여 학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미 1937년 6월 26일, 십수 년에 걸쳐 조선사편찬위원회 편찬주임으로서 또한 조선사편수회 간사로서 수사 사무를 주재하던 이나바 수사관은 사임하여 조선을 떠났고,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필자도 또한 수사관을 사임하고 총독부 학무국으로 옮겨 편수관이 되었으며 조선사편수회에는 촉탁으로서 이름을 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은밀히 박사의 평소 뜻을 명심하여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이나바 수사관이 떠난 후 편수사무를 주재하게 된 촉탁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 기요시는 당시 위원이며 간사로서 서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추원 서기관 노세타니 간료와 함께 사업계속의 기획을 담당했다. 노세타니 서기관은 조선의 제도와 역사에 깊은 흥미를 갖고 중추원 조사과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여 조사의 성과를 간행하는 일을 맡아 하며 스스로 집필하며 편찬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새롭게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진척시켰는데, 조선사편수회의 사업에 대해서도 갑오개혁 이후의 사료수집에 착안하여 이것을 주체로 하여 잔무처리의 이름을 걸고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을 도모하면서 고문·위원회에 『조선사』의 완성을 보고함과 동시에 이 건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1938년 4월부터는 『조선사고본』의 정리 및 「총목록」·「총색인」의 편집 등 『조선사』 편수의 잔무처리를 계속하면서 새 계획에 따라 갑오개혁 이후, 병합에 이르는 16년간의 사료수집에 착수한 것이다. 갑오개혁은 ‘갑오경장’으로도 불리는데, 이태왕 31년 6월 22일(1894년 7월 24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윤5월 1일(1895년 6월 23일)에 걸친 조선 내정의 개혁으로 일·청의 개전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혁신 관료가 일본 정부의 원조를 받아 근대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기구의 혁신을 도모한 것이었다. 이것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조선의 근대화는 정체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세력의 소장(消長), 조선 정국의 분열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마침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하여 전후의 조선 정국은 일본의 독점적 지배의 확립에서 병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조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16년간이다. 『조선사』 제6편의 편수를 담당하여 이를 완성한 다보하시 촉탁은 일찍이 메이지 외교사의 연구에 뜻을 두고, 『근대일본외국관계사』를 저술하고, 18세기부터 19세기 중엽의 개항에 이르는 역사를 연구하였으며, 『근대 일·중·선 관계의 연구－톈진조약에서 일·중전쟁까지』를 간행하였다. 1933년 3월부터는 편수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조선근대사에 관한 문제들의 연구에 주력하여 이즈음 이미 학위청구논문으로서 『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하 2권, 1,100페이지에 이르는 대저작으로 중추원에

서 간행되었다)도 거의 완성에 이르렀다. 제6편의 끝은 일·청 개전을 초래한 동학당의 난과 갑오개혁의 발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내외 각지에 걸쳐 사료를 수집한 경험도 갖고 있어 이때의 사업을 주재하기에는 가장 적임이었다. 게다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사료의 수집에 임하면서 주밀하고 정력적인 연구는 해를 거듭하여 축적되고 있었다. 물론 그 지도를 받아 제6편의 편수를 담당했던 수사관보 다가와 고우미는 수사관이 되고 촉탁 소노다 요시로는 수사관보가 되어 시종 그 사무를 도왔던 것도 좋은 상황이었다.

사료수집의 한편으로 잔무의 처리로는 『조선사고본』의 정리가 있고, 소우가에서 소장해오던 고문서·기록류의 정리가 있었다. 또 사업의 연혁과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1938년 6월에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를 간행하고 같은 해 10월에 『조선사권수총목록』을 출판하고 1940년에 『조선사총색인』을 간행했다. 다시 『조선사료총간』을 속간하여 제21 『통문관지』(영인)·『조선통교대기』(활판)을 출판하였다. 이들 사업은 수사관 신·다가와, 수사관보 구로다·소노다 등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의 한편으로 각각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선사와 관련한 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여 『조선사편수회연구회찬』을 간행하기로 하고 제1집은 『근대조선사연구』로 이름을 정하고 다보하시·데라타니(신)·다가와의 논문을 수록하며, 제2집은 『조선통치사논고』로 제목을 정하여 다보하시의 논저를 1944년에 간행하고, 제3집은 다보하시의 『근대일선교섭사연구(갑오개혁에서 한국병합까지)』·구로다의 『중세일선무역의 본질』을 수록하여 1945년에 교정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이러한 형식의 편수 또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은 계속 사업이 된 이후의 눈에 띠는 특색이며, 당초 『조선사』 편수의 시대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수사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구로이타 박사는 이것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조선사』의 편수에 대해서는 강령 및 범례를 정하여 형식과 내용 모두 이에 걸맞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선사』의 완성을 목표로 정력적으로 오로지 이 사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면서 편수에 동반되는 고증이나 연구과정을 발표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견(私見)에 의해 공적인 입장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했다. 이러한 방식은 편수사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때는 사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목록의 공간(公刊)이나 사료의 출판 등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인데, 대상이 되는 시대의 특수성 등의 이유 때문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된 느낌이 있다. 물론 『조선사』의 편수에 있어서도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고, 매일 사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토론을 계속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시도하기도 하며, 월례회를 만들어 정양회(貞陽會)(편수회가 정동에 있었던 데서 유래한 명칭)라고 이름을 붙여 순번에 따라 연구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그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 성과가 편수상에 반영되고 학술잡지에 공표된 일도 많았다. 특히 1930년에 스에마쓰와 필자가 경성제국대학·총독부·중추원 등의 연구자와 기획하여 창립한 청구학회(靑丘學會)에서 연 4회 발행된 『청구학총』에는 편수관계자의 논저가 매 호 게재되었고 총독부의 기관지인 『조선』에도 종종 발표되었다. 이 일은 일반에게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조선사 연구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믿는다.

이전에 『조선사』의 출판계획에 착수했을 무렵, 1931년 가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어서 만주국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대외정책은 국제적 협조를 버리고 경화(硬化)하였으며, 이른바 국방국가의 건설로 이어졌다. 1936년에는 2·26사건이 일어나고 전시태세는 강화되었으며 만주에서는 군수산업의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노선을 따라 바뀌게 되었다. 이른바 ‘내선일체’의 통제하에 대재벌의 독점자본이 진출하고 북선(北鮮)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다음해 7월에 시작된 이른바 중일전쟁에 의해 한층 더 촉진되었다. 결국 일본·조선·만주를 통하는 물자동원계획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면적인 전시동원태세로 돌입했다. 여기에서 ‘내선일체’라는 이름 아래 ‘황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병합 이래의 동화정책이 그 극단에 도달한 것이다. 마침내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인의 종군도 요청되어 그 정책은 관철되었다. 『조선사』의 완성에서부터 이때까지 이어지는 사료의 수집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사료총간』 중에 배포처를 역사학전문의 연구자로 한정된 것이 나오거나 앞에 든 중추원의 『근대일선관계의 연구』(다보하시 저)나 편수회의 『조선통치사논고』(다보하시 저)가 비밀출판으로 다루어지고,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일 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수사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학술적 견지에서의 연구 업적도 출판사정의 악화로 순차 간행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총독부 당국자에 의해서 조선의 시국적인 지위가 중요해지고, 그 정치·문물이 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때였으므로 기본적인 연구의 발표는 연구 보국의 취지에 어울리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전시하의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면서 수사사업의 속행을 도모하고 있던 다보하시 촉탁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1945년 2월 26일에 사망하였다. 그즈음 이미 『일청전역외교사의 연구』(1951년) 『동양문고논총』(32로 간행)의 원고를 완성해 두었고 또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동아국제정치사연구』로 속간할 원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전쟁 국면은 날마다 위급하게 돌아가는 때였고, 조선사편수회는 조금씩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장 엄창섭은 회장대리(당시 총독은 아베 노부유키, 정무총감은 엔도 류사쿠)로서 사무를 통할하고 있었는데, 선후조치를 고문·위원들에게

맡기고 같은 해 3월에는 촉탁으로서 명의만 갖고 있던 필자를 간사로 추천하여 편수사무의 주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즈음 전쟁 국면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처음으로 도쿄대폭격이 단행된 직후였으므로, 신년도를 맞이함과 동시에 특히 필자에게 요청된 수사사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총독부 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통합하여 모든 것을 전쟁 수행에 집중함으로써 실시가 불가능 상태에 빠져 있던 지방사료의 채방을 우선 중지하였다. 하나는 전시라고는 해도 의미가 있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사료를 소개·이장하여 안전을 기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모든 생활사정은 궁핍하고, 방공방화 훈련은 강화되어 종종 적기가 나타나면 경보가 발해지던 때였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사업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선관계사를 비롯하여 조선국제정치사, 조선민족사상사, 조선동란사 등 중요한 과제를 채택하여 신·다가와 두 수사관 및 구로다·소노다 두 수사관보가 각각 분담하여 연구를 개시하기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각지에 수납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요청하여 사료와 함께 전원 이주하여 사무를 속행할 수 있는 후보지를 고려하기로 하고 수송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전쟁 국면의 급속한 변화와 관계자의 태도 등에 따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종결되고 말았다.

전쟁의 진전과 함께 일본이 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점령 정책은 민족 해방에서 독립의 원조를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및 대만의 통치에서 취해 온 동화주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이른바 조선인 및 대만인의 처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참정권의 부여이다. 전쟁 국면이 위급해지자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는 내각수반이 되고, 정무총감 다나카 다케오는 내각서기관장이 된 것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이 난문제의 처리를 담당했다. 지금까지 칙선의 귀족원 의원을 추천하여 우선적인 방향을 제시해 온 정책을 중의원 의원의 선출로 잊게 된 것이다. 고이소 내각은 의회에서 상당한 저항을 배제하여 제도의 개정을 결행했는데 실시는 전쟁 종료 후로 잡는 것일 뿐이었다. 조선 민심의 동요는 전쟁 국면의 위기와 함께 격화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동화정책이 몰아넣은 궁지이며 세계주의의 이민족 대책의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1945년 8월 패전일을 맞이하여 어느 정도 혼란을 초래하였지만 다행히도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 및 『조선사고본』 종류는 지장 없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해방과 함께 같은 해 9월에 조선 점령을 위해 진주한 미국 군사령관 핫지의 지시에 따라 다른 모든 관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은 수사관 신석호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필자는 9월 30일을 기하여 책임해제의 지령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에서 조선총독부가 폐청되고

조선사편수회가 해소된 것은 다음해 5월 31일의 일이다. 24년에 걸친 수사사업을 회고하니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진다.

부기

본고는 조선사편수회의 사업에 대하여 경과와 함께 그 배경을 이루었던 시대를 대조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구로이타 박사가 기획의 중심에 있었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관계하였다. 박사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특색 있고 대규모인 것 중의 하나이다. 박사는 봄·여름 휴가는 물론, 연말연시 휴일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왕래하면서 예산을 절충하고 편수의 기획을 지도하며 사업의 진행을 독려하고, 때로는 왕래하는 차 안에서 총독·총감 등과 동행하면서 상세하게 경과를 보고하고 장래의 계획을 의논하는 등 10여 년에 걸쳐 머리에서 사업에 대한 생각이 떠난 적이 없었다. 특히 그 기간은 박사의 학계에서의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중앙에서의 각종 조사나 위원회 관계는 물론이고 동산어문고(東山御文庫)의 정리가 있었고, 이어서 『국사대계』의 편집, 고문화연구소의 사업인 이와나미강좌 『일본역사』(구판)의 편집, 『가고시마현사(縣史)』·『아이치현사』의 편수, 다이고(醍醐) 삼보원(三寶院)이나 나고야 신후쿠지(真福寺)의 조사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적조사, 박물관건설계획, 이왕가현대미술관 운영 등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잠시도 자리에 앉아 있을 여유가 없던 시기에 객창감을 봇으로 담아내기까지 했던 일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조선사』의 편수는 가장 정열을 기울였던 일이다. 필자도 왜성대(倭城台) 및 천진루(天真樓)의 한 방에서 편수의 기획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혹은 서류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사업의 자체에 대하여 질책을 받으면서 혹은 집필의 어려움을 위로받거나 격려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새로운 감회가 솟아난다. 필자에게도 반생을 기울여 온 체험이며, 피가 배어날 듯한 추억이다. 동시에 책상을 나란히 하고 일에 정진한 동료의 노력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싶다는 생각에 펜을 든 것이다. 다만 수중에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억을 불러일으켜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나 『조선사』 수권, 총목록의 서문·범례 등을 의지하여 아련한 기억의 끈을 쭉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한을 넘겨 급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추고도 멋대로, 줄문을 쓰게 되어 처음 의도와는 많이 다르게 되어 버린 일은 무엇보다도 유감이다. 또한 기술할 때 선배와 친구들에게 혹은 실례를 범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너그러이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추기

본편은 구로이타 가쓰미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행된 『고문화의 보존과 연구』(1953)에 기고한 것이다. 오늘날 보자면 이 사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 다시 고치고 싶은 점도 많지만 본편 성립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기회로 미룬다. 다만 주기 등을 보정했으며 가능한 한 옛 원고 그대로 실었다.

(1964년 2월 1일)

〈출전 :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日鮮關係史の研究』下卷, 1969년, 653~706쪽〉

찾아보기

【ㄱ】

가네코 마사케쓰(金子正潔) 434, 441, 444, 448, 457, 463, 468, 488, 489
가니지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 529
가시하라 소조(柏原昌三) 434, 441, 442, 443, 444, 448, 449, 454, 455, 458, 459, 474, 488, 546, 558, 559, 561
가쓰라기 스에지(葛城未治) 434, 441, 444, 448, 457, 463, 468, 485, 487, 488
가와구치 우키치(川口卯橘) 486, 515, 554, 556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529
가전(家傳) 534
간노(關野) 481, 529
갑오개혁 439, 440, 497, 547, 552, 565, 567
갑종조선사료조사요록(甲種朝鮮史料調查要錄) 560
강희량(康熙量) 471
경연일기(經筵日記) 562
경제잡지사본(經濟雜誌社本) 534
계상종유록(溪上從遊錄) 473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536
고구려천남생묘지탁본 537
고구려호태왕비 533
고금석첩(古金石帖) 533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485, 494, 495, 496, 551
고려사 504, 532, 536, 553, 557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503, 506, 536, 557, 560, 564
고려사절요보간 565
고문화의 보존과 연구 571
고본조선사(稿本朝鮮史) 500, 555

고사기(古事記) 534, 535
고어슴유(古語拾遺) 534, 535
고우타케 마사요시(高武公美) 489
고이소 구니아키 569
관동대지진 483, 505, 549
광해군일기 449, 555, 559
구집국사대계본(舊輯國史大系本) 534
구당서(舊唐書) 536
구로다 세이조 515, 567, 569
구로이 하루노리(黒井治徳) 486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34, 434, 435, 436, 438, 441, 442, 443, 444, 445, 457, 459, 460, 461, 463, 467, 479, 480, 488, 490, 492, 494, 495, 496, 497, 499, 500, 501, 502, 503,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3, 538, 539, 540, 546, 547, 549, 550, 551, 552, 556, 561, 567, 570, 571
구오대사(舊五代史) 536
구찬서(具贊書) 486, 515, 556
국사대계(國史大系) 534, 570
국조보감(國朝寶鑑) 39, 557
군문등록(軍門謄錄) 506, 563, 564
군서요목(群書要目) 561
권발(權撥) 562
권상하(權尙夏) 474
권중의 489, 515
권중현(權重顯) 34, 457, 463, 477, 479, 488, 492, 493, 494, 499, 501, 505, 545, 550
근대 일·중·선 관계의 연구—톈진조약에서 일·중전쟁까지 566
근대일본외국관계사 566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566, 568

- 근대일선교섭사연구(갑오개혁에서 한국병합까지)
567
- 근대조선사연구 567
- 근와고(芹窩稿) 473
- 근와년보초본(芹窩年譜草本) 473
- 금계일기(錦溪日記) 563
- 금금기(今衿記) 472
- 금해금씨세보(金海金氏世譜) 456
- 긴메이(欽明) 천황 535
- 김건태(金建泰) 485
- 김경서(金景瑞) 459, 462
- 김경수(金敬洙) 487
- 김관곡(金寬谷) 470, 471
- 김규락(金圭洛) 486
- 김기홍(金起泓) 470
- 김동준(金東準) 434, 441, 444, 447, 448, 457, 462, 468, 475, 478, 480, 488, 489
- 김로규(金魯奎) 471
- 김영한(金永翰) 486
- 김용(金涌) 562
- 김용적(金容迪) 434, 441, 444, 448, 485, 488
- 김윤철(金潤喆) 487
- 김중협(金重協) 487
- 김진욱(金鎮旭) 487
- 김태두 490
- 김환(金煥) 486
- 김희(金憲) 473
- 김희동(金憲東) 487
- 514, 515, 530, 539, 555
- 난중일기(亂中日記) 503, 562
- 난중일기초(亂中日記草) 562, 564
- 난후잡록(亂後雜錄) 563, 564
- 남규희(南奎熙) 34
- 노리사치게(怒唎斯致契) 535
- 노세타니 간료(野世溪閑了) 511, 566
- 노인(魯認) 563
- 【ㄷ】**
- 다가와 고우미(田川孝三) 515, 556, 567, 569
-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569
- 다나카 한지로 515
- 다노 시지노스케(田野七之助) 562
-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515, 539, 556, 566, 567, 568
- 다카키쓰 다쿠지(高橋啄二) 478, 480, 481, 486, 489, 514, 515, 531, 550, 555, 556, 560, 568
- 단군고기 504
- 당서(唐書) 536, 557
- 당장서화첩(唐將書画帖) 506, 564
- 당회요(唐繪要) 536
-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532
- 대동기년(大東紀年) 557
- 대일본고문서 553
- 대일본사료 553
- 대일본유신사료(大日本維新史料) 553
- 덴지(天智) 천황 533
- 도씨문집(都氏文集) 536
- 도쿄대폭격 569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557
- 동국사략(東國史略) 445
-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 532
- 동국통감(東國通鑑) 445, 510, 557
- 동사강목(東史綱目) 445, 557
- 동사찬요(東史纂要) 445
- 동아국제정치사연구 568
- 【ㄴ】**
- 나가노 간(長野幹) 434, 444, 448, 450, 451, 452, 453, 454, 456, 463, 466, 468, 545
- 나수연(羅壽淵) 34
- 나이토 도라지로(内藤虎次郎) 47, 435, 480, 490, 539, 547, 550
-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529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486, 487, 489, 500,

동양문고논총 568
동유일초(東遊日艸) 560
동학당의 난 567
동한사략(東韓史略) 529

【ㅁ】

마루가메 긴사쿠(丸龜金作) 515
마쓰모토 이오리(松本伊織) 563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434, 441, 442, 443, 444, 448, 449, 458, 488, 546
마에다 고조(前田耕造) 485, 562
마운령신라진홍왕순수비 533
만엽집(萬葉集) 536
만전당집(晚全堂集) 473
명재유고(明齋遺稿) 511
모문룡(毛文龍) 469, 470
모재집(慕齋集) 508
무진사종기탁본 537
문계록(聞啓錄) 473
문덕실록(文德實錄) 536
문원영화(文苑英華) 536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 456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 562, 564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34, 36, 40, 540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545
민영기(閔泳綺) 35
민원식(閔元植) 544

【ㅂ】

박석금(朴昔金) 456
박영효(朴泳孝) 434, 444, 477, 479, 488, 492, 545, 550
박용구(朴容九) 487, 556
박제현(朴齊顯) 34
박충서(朴忠緒) 486
박희양(朴熙陽) 34

배삼의(裴三益) 471
백문보(白文寶) 510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536
백제부여용묘지탁본 537
보한재집(保閑齋集) 508, 565
복본류작성법례(複本類作成凡例) 562
본조문수(本朝文粹) 536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탁본 537
부상략기(扶桑略記) 534, 535, 536
북관지(北關志) 471
분로쿠 노에키(文祿役) 452
분로쿠(文祿) · 계이초(慶長)의 역(役) 564
분로쿠임진난(文祿壬辰亂) 506
불교통사(佛教通史) 455
불조통기(佛祖統紀) 536
비변사등록 464, 561

【ㅅ】

사고폭쇄형지안(史庫曝晒形止案) 561
사기 557
사대문궤(事大文軌) 560, 564
사료총간(史料叢刊) 506, 507, 510, 519
사사가와 다네로 488, 489
사시교지(賜謚教旨) 472
사이토 마코토 430, 434, 463, 491, 521, 546, 549, 551
삼국불법전통연기 535
삼국사기(三國史記) 39, 445, 497, 509, 531, 532, 535, 536, 537, 557
삼국사기 정덕경주참본 533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532, 557
삼국유사 445, 497, 504, 510, 532, 533, 536, 537
삼국유사 정덕경주참본 533
삼대실록(三代實錄) 536
삼봉집(三峰集) 508
삼정종람(三正綜覽) 504
삼조서가본(三條西家本) 534

- 상궁성덕법왕제설(上宮聖德法王帝說) 534, 535
- 서부희씨(西部姫氏) 535
- 석가문상광배명탁본 533
- 석일본기(釋日本紀) 534, 535
- 선각만엽집초(先覺萬葉集抄) 535
- 선린국보기 534
- 선우씨세보(鮮于氏世譜) 456
- 선조실록(宣祖實錄) 471
- 선화봉사 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43
- 설북유고(雪北遺稿) 473
- 성창영(成昌永) 487
- 세노 마구마(瀬野馬熊) 481, 486, 489, 514, 515, 540, 554, 555
- 세종실록 450
- 셋쓰(攝津) 풍토기 535
- 소노다 요시로(園田庸次郎) 515, 556, 567, 569
- 소수서원등록 565
- 소화외사(小華外史) 557
- 속무정보감 565
- 속일본기(續日本紀) 534, 536
-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534, 536
- 손영목(孫永穆) 489
- 송계집(松溪集) 472
- 송고승전(宋高僧傳) 536
- 송암집(松巖集) 470
- 송지현(宋之憲) 34
- 쇄미록(瑣尾錄) 563
- 슈도 요시유키(周藤古之) 515
- 스기모토 쇼스케(杉本正介) 540
- 스사노 오노미고토(素菱鳴尊) 535
-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486, 489, 515, 530, 539, 556, 568
- 스이닌(垂仁) 천황 535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464, 503, 508, 561
-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448, 449, 457, 459, 461, 462, 468, 478, 479, 488, 494, 496, 499, 501, 505, 511, 513, 550
-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529
- 시라토니 쿠라키치(白鳥庫吉) 529
-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 463, 465, 466, 468, 474, 475, 479, 488, 489, 490, 549, 550
- 시부에 게이조(瀧江桂藏) 487, 514, 515, 556, 562
- 시오다 후키조 514, 515, 554
- 신고려사(新高麗史) 536
- 신석호(申奭鎬) 486, 490, 515, 554, 569
- 신승전(神僧傳) 536
- 신웅조(申應朝) 559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32
-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534, 535
-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536
- 심상규(沈相奎) 487
- 심양강탄구지도(瀋陽降誕舊址圖) 471
- 심양일기(瀋陽日記) 472
- 쓰다 사유키치(津田左右吉) 529
- 쓰루미 류기치(鶴見立吉) 489, 514, 515, 554

【◦】

- 아라히 하쿠세키(新井白石) 529
- 아리요시 추이치(有吉忠一) 429, 434, 435, 436, 437, 438, 440, 441, 444, 445, 446, 448, 452, 457, 458, 460, 461, 462, 505, 545, 549
- 아마노누보코(天之日矛) 535
- 아베 노부유키 568
-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533, 537
- 아키우라 히데오(秋浦秀雄) 486, 531
- 안우기(安于器) 474
-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511, 550
- 야마자키 마키오 469, 478, 480, 488, 489
- 양촌집 564
- 어옹선(魚龍善) 486
- 어윤적(魚允迪) 34, 434, 438, 440, 441, 442, 443, 443, 444, 445, 446, 448, 452, 453, 456, 457, 461, 463, 466, 468, 480, 488, 492, 494, 499, 501, 505, 545
- 언역원각경(諺譯圓覺經) 455
- 엄창섭(嚴昌燮) 485, 568

- 엔도 류사쿠 568
 연려실기술 557
 열조통기(列朝通紀) 557
 오경원 557
 오기와라 히데오 515
 오노 도쿠조 489
 오노 로쿠이치로 551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 34, 430, 434, 441, 444,
 449, 488, 540
 오다 쇼고(小田省吾) 448, 449, 478, 479, 488, 540,
 550
 오대사(五代史) 536
 오대회요(五代繪要) 536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468, 469, 488, 489
 오재풍(吳在豐) 34
 오카 엔키치(大木遠吉) 561
 오타니 쇼신(大谷勝眞) 501, 550
 오희문(吳希文) 563
 오희선(吳禧善) 487
 요사(遼史) 504, 536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529
 용당지(龍堂志) 471
 용사일기(龍蛇日記) 562
 우가키 가즈시게 499, 551
 우시마 499, 501, 505, 511
 우암선생년보(尤庵先生年譜) 511
 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 562
 원승환(袁崇煥) 470
 원정한(元鼎漢) 487
 원형석서(元亨釋書) 534
 원화첩(元和帖) 533
 원홍사가람연기(元興寺伽藍緣起) 535
 원홍사연기(元興寺緣起) 534, 535
 유기자재장(流記資財帳) 534, 535
 유길수(柳吉秀) 487
 유맹(劉猛) 448, 453, 457, 460, 461, 465, 466, 467,
 474, 475, 478, 480, 488, 489, 492, 494, 545
 유방진총서본(遊方傳叢書本) 532
 유승우(柳承佑) 469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489, 551
 유정수(柳正秀) 34, 36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 536
 유홍세(柳興世) 34
 유희춘(柳希春) 562
 육국사(六國史) 536
 육종윤(陸鍾允) 489
 윤문학사유고(尹文學士遺稿) 554
 윤영구(尹寧求) 434, 448, 457, 463, 468, 478, 480,
 488, 492, 499, 501, 505, 513, 550
 윤용균(尹瑢均) 486, 515, 554, 556
 이건춘(李建春) 34
 이근상(李根湘) 35
 이근택(李根澤) 35
 이궁의(李肯翊) 557
 이기용(李淇鎔) 486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434, 441, 442, 443,
 444, 447, 448, 449, 450, 451, 455, 457, 459, 462,
 463, 464, 467, 468, 469, 474, 475, 478, 479, 480,
 481, 486, 487, 488, 489, 492, 496, 500, 501, 505,
 508, 510, 511, 513, 514, 515, 521, 530, 546, 550,
 553, 555, 556, 558, 559, 561
 이누카이 사치코(犬飼幸子) 485
 이능화(李能和) 434, 441, 442, 444, 445, 446, 448,
 450, 452, 453, 457, 463, 468, 478, 480, 488, 489,
 492, 494, 499, 501, 505, 510, 511, 513, 515, 539,
 545, 550, 556
 이도익(李度翼) 34
 이동(李東) 474
 이동섭(李東燮) 486
 이동성리설원고(李東性理說原稿) 474
 이동진(李東鎮) 489
 이마니시 류(今西龍) 34, 36, 40, 41, 442, 443, 446,
 448, 478, 479, 480, 486, 487, 488, 492, 494, 497,
 498, 499, 500, 502, 514, 515, 529, 530, 532, 533,
 540, 546, 550, 554, 555, 556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485, 494, 496
 이마무라 도모(今村駒) 487
 이마이다 세이도쿠(今井田清德) 499, 500, 501, 505,

- 507, 510, 511, 551
 이만규(李晚奎) 34
 이몽학(李夢鶴) 472
 이문진(李文眞) 445
 이병도(李丙燾) 489, 554
 이병소(李秉韶) 434, 441, 444, 448, 468, 478, 480, 488, 492, 499, 505, 511, 550
 이상영(李商永) 449, 488
 이순규(李淳珪) 487
 이승만 544
 이승범(李昇範) 487
 이시하라 토시오 515
 이와타니 다케이치 489
 이완용(李完用) 34, 434, 477, 479, 488, 489, 545, 550
 이왕가 장서각 고도서목록 560
 이왕직(李王職) 449, 550
 이용상(李用庠) 486
 이용직(李容植) 34
 이윤용 507, 511, 513, 550
 이이 562
 2·26사건 568
 이재곤(李載崑) 35
 이재부(李載復) 471
 이재형(李載亨) 470
 이조실록 503, 555, 559, 564
 이종명(李種明) 486
 이즈모(出雲)풍토기 534
 이진규(李真珪) 486
 이진호(李軫鎬) 468, 478, 488, 489, 492
 이케가미(池上四郎) 시로 489, 492, 493, 551
 이케다 도미키조(潮田富貴藏) 489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529
 이쿠다 세이사부로(生田清三郎) 492, 478, 479, 489, 490, 492
 이태왕 565, 566
 이토 도가이(伊藤東涯) 529
 이하영(李夏榮) 34
 일본기략(日本紀略) 536
 일본서기 531, 533, 534, 535, 536
 일본역사 570
 일본일사(日本逸史) 536
 일본후기(日本後紀) 534, 536
 일성록(日省錄) 503, 508
 일청전 역외교사의 연구 568
 임선준(任善準) 35
 임윤(琳潤) 537
 임직순(任稷淳) 486
 임진록 563
 임진상초(壬辰狀草) 562, 564
 임청(林青) 486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534, 536

【x】

- 자치통감(資治痛鑑) 536
 장석주(張錫周) 35
 장지택(張之澤) 487
 정강서유사(鄭江西遺事) 470
 정계비(定界碑) 471
 정교원 489, 505, 511
 정덕 조선신사 등성행렬도 565
 정만록(征蠻錄) 563
 정만조(鄭萬朝) 434, 441, 444, 448, 478, 488, 492, 494, 499, 545
 정봉수(鄭鳳壽) 470
 정성원(鄭成源) 487
 정양회(貞陽會) 567
 정용무(鄭容默) 470
 정원전교 564
 정유왜란 563
 정종실록 450
 정퇴서원만전봉안문(靜退書院晚全奉安文) 473
 정홍명(鄭弘溟) 563
 제승방략 564
 조경(趙絅) 473
 조규식(趙奎植) 486

- 조당집(祖堂集) 536
 조병건(趙秉健) 34
 조보(朝報) 469
 조선고적도보 539
 조선도서해제 560
 조선부 565
 조선불교통사 545
 조선사 502, 503, 507, 508, 509, 510, 513, 517, 518, 519, 530, 531, 537, 538, 539, 552, 554, 555, 556, 557, 558,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70
 조선사강 555
 조선사고(朝鮮史稿) 500
 조선사고본 539, 555, 566, 567, 569
 조선사권수총목록 567
 조선사료사진집(朝鮮史料寫眞集) 503, 517, 518, 519, 563, 564, 565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503, 505, 517, 518, 519, 539, 563, 564, 565, 567, 568
 조선사초고(朝鮮史草稿) 502
 조선사총색인 567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567, 570
 조선사편수회연구회 567
 조선사편찬위원회 38
 조선인명사서 540
 조선직관표(朝鮮職官表) 561
 조선총독부 고도서목록 560
 조선통교대기 567
 조선통치사논고 567, 568
 조승호(趙承祐) 486
 조중관(趙重觀) 487
 조중응(趙重應) 34
 조한직(趙漢稷) 486, 515
 종가조선진문서 565
 주지빈(朱之蕃) 473
 중보문현비고 557
 증직교지(贈職敎旨) 472
 지쿠젠풍토기 535
 진관판병편오책잔권 564
 진홍왕 순수비 533
 정비록 563
- 【★】
-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536
 창림사무구정탑원기 537
 책부원귀(冊府元龜) 536
 청구학총 568
 청구학회 568
 청주한씨세보(淸州韓氏世譜) 456
 초본징비록 564
 초황령비 533
 최남선(崔南善) 487, 495, 497, 498, 501, 504, 505, 508, 509, 513, 550
 충제일기초(冲齋日記草) 562
- 【☞】
- 태원태씨세보(太原太氏世譜) 456
 태조실록 449, 450
 통문관지 567
- 【☞】
- 하기야마 히데오 540, 554, 556
 하리마 겐시로(張間源四郎) 485, 496, 499
 하리마(播磨)풍토기 534, 535
 하야미 히로시 513, 550
 하야시 다이호(林泰輔) 529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529
 한국사료총서 563
 한국통사(韓國通史) 32, 37
 한동철(韓東喆) 486
 한세량(韓世良) 473
 한원진(韓元震) 474
 한원초기(翰苑草記) 563
 한창수(韓昌洙) 35
 한치윤 557

핫도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480, 490, 494, 550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532
해동역사(海東釋史) 557
해동제국기 506, 564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 456
현계론(顯戒論) 535
현양섭(玄陽燮) 478, 480, 485
현채(玄采) 434, 441, 444, 448
홍가신(洪可臣) 472, 473
홍가신교서(洪可臣敎書) 472
홍가신수필(洪可臣手筆) 473
홍가신수필서첩(洪可臣手筆書尺) 473
홍가신자만시(洪可臣自挽詩) 473
홍가신행상비문(洪可臣行狀碑文) 472
홍경손(洪庚孫) 486
홍경신(洪慶臣) 472
홍승윤(洪承綸) 487
홍우형(洪宇迴) 473
홍우형호적(洪宇迴戶籍) 473
홍운표(洪運杓) 34, 486
홍은식(洪殷植) 487
홍희(洪憲) 434, 441, 443, 444, 448, 450, 451, 452,
456, 457, 459, 468, 472, 474, 478, 479, 480, 481,
487, 488, 489, 500, 512, 514, 515, 539, 550, 554,
558, 559, 559, 560, 555, 561
화엄회권(華嚴繪卷) 536
황명실록 561
황명주(黃命周) 485, 487
황병수(黃丙秀) 486
황초령신라진홍왕순수비 533
회풍조(懷風藻) 536
후지이 세이이치 515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478, 479, 480, 489, 550
후카가와 텐지로(深川傳次郎) 448, 449, 457, 463,
468, 488
히젠(肥前)풍토기 534